

현안분석 2005-

법령용어 ③

#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administrative related law

2005. 6.

# 행정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uggestion of ques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administrative related law

연구자 : 전학선 (광운대 법학과 교수)  
Jeon, Hak-Seon

김춘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  
Kim, Choon-Hwan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Kim, Hae-Ryoung

설계경 (한국외대 법학과 대우교수)  
Seol, Kye-Kyoung

2005. 6.

## 국 문 요 약

행정관련법령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으로서 일반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어와 문장이 어렵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많은 관계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행정관련법령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그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분야는 정치·지방자치·환경·경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분야에 있어서 어렵고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문장의 순화와 정비 및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대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순한 논문식 개설을 통한 순화정비방안의 제시에 그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각 법령의 조문에 대한 순화 정비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의 제·개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에 관한 관련전문가의 의견제시가 빈약한 상태에서 나온 논문이라는 점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전공별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제시된 순화정비의견에 대해서도 각 집필자의 의견을 상호 비교·검토해봄으로써 행정관련법령의 순화정비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키워드 : 법령용어, 행정, 정당, 지방자치, 경찰, 환경,

## Abstract

Administrative related law need to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because of incomprehensibility to cause expression chinese and japanese. Therefore, this report studies on a question and a scheme improvement of terminology in administrative related law classify a field.

This field classify politics · a self-governing system · environment · police,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bout terminology and sentence in administrative related law. In particular, this report indicate suggestion of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a provisions in administrative related law. This suggestion make the good use of research material for establish and revision in law.

As well, This suggestion hope to study a synthesis under conditions of insufficiency opinion about administrative related law. This suggestion hope to make an opportunity of comparison and examination about opinion of another reciprocity.

※Keywords : administrative related law, a self-governing system,  
environment, police, terminology,

## 목 차

국 문 요약 .....	3
Abstract .....	5
■ 정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
전 학 선 (광운대 법학과 교수)	
【부록】 정당법 순화대비표	
■ 지방자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77
김 춘 환 (조선대 법학과 교수)	
【부록】 지방자치법 순화대비표	
【부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순화대비표	
■ 환경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01
김 해 룡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부록】 환경정책기본법 순화대비표	
【부록】 대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 수질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부록】 자연환경보전법 순화대비표	
■ 경찰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91
설 계 경 (한국외대 법학과 대우교수)	
【부록】 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순화대비표	
【부록】 청원경찰법 순화대비표	
【부록】 경비업법 순화대비표	

정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 학 선  
(광운대 법대 교수)

목 차

I. 서 론 .....	11
II. 정당법개관 .....	14
III. 법령순화방안 .....	21
1. 한자의 순화 .....	21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	22
3. 문장의 순화 .....	23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	23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	23
(3) 조사의 순화 .....	23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	24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	24
IV. 정당법 순화안 .....	25
V. 결 론 .....	57
<b>【부록】 정당법 순화대비표 .....</b>	<b>58</b>

##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수 없으므로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속에서 충돌 혹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규범이다. 따라서 규범은 인간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규범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인간사회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고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행동규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 용어라는 것도 전문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용어와 표현들처럼 쉽게만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쉽게 서술될 필요는 있다.

법은 결국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성문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言語를 떠나서는 실정법적인 각종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추출되는 것은 전부 言語라는 방적기 위에서 행해진다. 言語는 법학자 유일의 도구이며, 법률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 학문의 하나로서, 모든 실정적 제정법은 언어에 의한 구속을 받으며, 법개념이나 법관념이 존재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이며, 또한 언어 속에 있다. 즉 법은 말해지는 것이며, 이는 판결 즉 법의 선언 또는 평결이나 재판을 통하여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법도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자신을 표현한다. 법은 사회와 더불어 역사가 오래되며 사회는 언어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인간사회가 인간의 사회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체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法이 있는」 곳의 전제가 되는 「社會」는 그 자체 나아가 「언어」를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그 「사회」는 「언어사회」로서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와 법의 결부는 문학작품보다 더욱 밀접하다. 그 이유는 언어는 보통으로는 사념을 표현하는 것이나, 법은 각종 개념을 다루기 때문이다. 사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나 법개념은 엄밀한 언어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법언어는 규범적 기호이며 이는 서술적 기호와는 달리 언제나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당한 질서상태와 관련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언어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는 언어와 법의 사이에는 대단히 엄밀한 결부가 있으며, 일방이 타방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실정법(법률)은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표현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법은 언어와 의사소통의 사회적인 일대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성문화 된 법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잘못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는 법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법의 규율대상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단어사용과 정확한 문장구조, 명확한 표현 등이 필요하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표현은 간략·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명확하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법률의 내용과 용어, 그 표현방법의 면에서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요인으로서는 우선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법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법제를 수용한 것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통한 타율적인 법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법수용은 아직도 우리의 법문화, 법학교육, 실정법체계의 내용과 형식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의 정립은 그 국가의 언어, 풍습, 가치관과 같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위에서 이루어 질때 그 법률은 국민생활에 널리 적용될 수 있으며, 법규범이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언어감각과는 전혀

1)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11-12면.



다른 일본의 법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과 우리말은 여러 가지 풍습이나 전통, 가치관 등에 의하여 언어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술상의 편리함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법률개념과 용어를 남발하여 국적불명의 법률을 양산한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언어로 형성된 우리 법제가 우리의 언어감각을 둔하게 하고 결국 일반국민들이 법을 대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법령 중에 난해한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개념인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보통명사에까지 난해한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은 단지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얼마동안은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였고, 1961년 10월 1일에는 각령 제137호로 정부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문서는 한글을 전용하되 법령은 여전히 한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1969년 5월 2일에 정부공문서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을 제외한 법령도 한글을 전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법령이 한글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률에 관해서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헌법·민법·형법·상법 등 국가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에서조차 난해한 한자어가 표기되어 국민의 법생활을 둔감하게 하고 있다. 일상언어와 법언어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법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전상의 난해한 법언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령문의 문장구조와 문체에 있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문어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sup>2)</sup>

2)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3-15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법에서 잘못 사용된 단어라든가 혹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일본식 표현 등을 지적하여 순화하고자 한다.

## II. 정당법개관

오늘날 현대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주권으로 대변되는데, 국민주권원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권력자를 국민으로 보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의사 형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개개인은 정치적 의사가 각자가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의사를 개인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정치적 의사를 같이하는 국민들의 모임인 정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을 띄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sup>3)</sup>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에 대한 규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제2공화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13조 제2항에서 정당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다. 그 이후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는 헌법에서 정당에 대하여 많은 규정을 두었으며 정당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띄어 정당추천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 그 후 제4공화국에서는 제3공화국에 비하여 정당국가화 경향을 많이 약화시켰으나, 헌법 제7조에서 정당보호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제5공화국에서는 정당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규정을 하였고, 그 이후 현행 헌법에서는 제8조에서 정당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은 제3공화국인 1962년 12월 31일 법률 제1246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13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마지막으로는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되었다. 196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당법은 54개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사이 많은 조항들이 개정되었는데, 삭제된 조문도 있고 추가된 조문도 있으며, 표현이 바뀐 조문들도 있다.

3) 현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15-2(하), 33면.

그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법 [제정 1962.12.31 법률 1246호]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①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함.
- ②정당의 창당준비에는 3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함.
- ③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50인으로 함.
- ④정당의 대의기관, 집행기관 및 의원총회(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가져야 함.
- ⑤기타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정당의 해산, 등록 및 그 말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정당법 [일부개정 1969.1.23 법률 2089호]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요건과 성립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임.

- ①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의 2분의 1로 함.
- ②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100인이상으로 함.
- ③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를 금지함.
- ④지구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지구당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함.
- ⑤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당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⑥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정당법에 통합함.

3. 정당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2403호]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조직요건 즉 법정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요건 및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의 완화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당관리를 위하여 당원의 입당절차와 정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개정헌법이 정당에 의한 공직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당적의 이탈·변경을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사유로 한 규정을 삭제하며, 정당해산소송을 헌법위원회의 관할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①정당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당지부제를 폐지함.
- ②국회의원인 당원의 당원자격 및 정당해산소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③입당원서의 서명·날인제를 신설함.
- ④벌금액을 현실화함.

4. 정당법 [일부개정 1973.6.14 법률 2618호]

정당이 기부 및 찬조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안에 금융기관 또는 금융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5. 정당법 [일부개정 1980.11.25 법률 3263호]

정당의 창당이나 그 존속요건인 창당발기인수와 법정지구당원수 및 법정지구당수등을 감축, 완화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의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하여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개방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원화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고루 반영할 수 있게 하며, 당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정당관여행위를 규제하여 새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민주정치풍토조성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①정당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당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②정당의 창당준비에 필요한 발기인수 “30인”을 “20인”으로 완화함.
- ③정당의 창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대학교수등 많은 지식인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함.
- ④정당의 법정지구당수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3분의 1”이상이던 것을 “4분의 1”로 감소함.
- ⑤정당지구당의 법정당원수를 “50인”이상에서 “30인”이상으로 인하 조정하여 정당의 창당과 존속을 용이하게 함.
- ⑥정당이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외에도 국회의원총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⑦해산되거나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른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치 못하도록 함.

6. 정당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4017호]

- ①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의 심판등으로 함.
- ②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의 임명자격은 15년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40세이상인 자로 함.

③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④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내용은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7. 정당법 [일부개정 1989.3.25 법률 4087호]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또는 간소화하며, 정당활동의 자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에 도모하려는 것임.

①정당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연락소를 읍·면·동까지 둘 수 있도록 함.

②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지구당수를 지역선거구총수의 4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하향조정함.

8. 정당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4609호]

정당설립요건 및 정당가입자격·절차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자생력있는 정당운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당이 국민속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선거제도의 변경등으로 나타난 법체계 및 법운동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일공고일 이후에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합당의 효력이 유예되는 경우를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하여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

②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함.

③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창당절차를 간소화함.

④정당은 당의 자주·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도록 하고, 당비납부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원의 제명·권리행사의 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여 당비납부제도의 정착을 유도함.

⑤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뿐만 아니라 그 상급당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지구당 또는 그 상급당부에 접수된 때 발생하도록 하여 당원의 탈당권을 보장함.

- ⑥ 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수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5분의 1 이상(48개)에서 10분의 1 이상(24개)으로 완화하여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
- ⑦ 정당의 모든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도록 함.
- ⑧ 법정지구당수와 법정당원수등 요건충결로 인한 정당의 등록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로 확대함으로써 정당의 존립을 보장함.
- ⑨ “창당방해등의 죄”를 신설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의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9. 정당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5260호]

경찰청장이 재직중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거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

10. 정당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5263호]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11. 정당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5454호]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12. 정당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6269호]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중앙당 150인 이내, 당지부 5인이내로 제한하고, 당비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자의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며,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정당은 국회의원 및 시·도 의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의 30퍼센트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함.

13. 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6661호]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시 당원 등의 매수행위를 금지하고, 당비의 대리납부를 금지하는 한편, 정당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당연락소를 폐지하고, 정당의 정책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정당의 경우 종전에는 구·시·군 및 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시·군에만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단서).

나. 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되도록 함(법 제22조의2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지구당과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구당에는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구·시·군의 당연락소에는 1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 라.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31조제5항 신설).
- 마.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6항 신설).
- 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1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 사. 정당의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 및 추진결과와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7조).

#### 14. 정당법 [일부개정 2004.3.12 법률 7190호]

-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가. 종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두던 법정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도록 함(법 제3조).
  - 나. 현행 서면에 의한 입당·탈당 방법 외에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입당·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9조의2).
  - 다. 정당에 들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중앙당의 경우 종전 150인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도당의 경우 최대 5인으로 제한하도록 함(법 제30조의2제1항).
  - 라.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마. 정당은 종전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



- 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중 투·개표사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의4 및 제31조의6 신설).
- 사.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에서 소요·소란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 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6 신설).

### III. 법령순화방안

#### 1. 한자의 순화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을 통하여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이를 섭취하여 왔다. 그리고 학술용어, 전문용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한자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법률적인 언어의 창조도 말할 것도 없이 한학에 소양 있는 자가 한자라는 표의문자를 사용하고 한자에 의하여 원어의 의미내용을 대체로 표현한 것이나 그곳에는 단기간에 적어도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해되어 정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용어에는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하여 한자의 사용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혹은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한글이나 우리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과 법규범 사이에 표리관계가 형성되어 법률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생활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형성하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한자어로 된 것을 한글로 바꾸는 경우에 오히려 뜻이 모호해지거나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혹은 그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아울러 우리나라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한자를 공용하는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아래에서 법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서구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발 앞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와 법기술이 검토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직수입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어로서 만들어진 번역식 법률용어가 거의 그대로 우리의 법학과 법실무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용어의 수용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訓讀이 있는 일본어에서와 音讀밖에 없는 한국어에서는 국민일반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다. 언어적으로도 법이 국민생활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지적이 일본에도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법생활로부터 법의 유리가 한층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조어자의 원어이해의 정확도, 일단 만든 번역어의 수용도, 나아가 그 정착도라는 면에서 대체로 현재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정착되어 우리의 언어감정과 일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미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수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용어의 과도한 외국화』와 『일반국민의 법으로부터의 소외』가 우리의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예를 들어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를 반드시 ‘の’로 연결시키며, 3번까지의 ‘の’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의’를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가 2회

4)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01. 4, 11-12면.

이상 반복되어도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면 수식관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 3. 문장의 순화<sup>5)</sup>

#### (1) 주어가 생략된 경우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정당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장성분,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법조문에서의 주어는 그 조문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조문에서는 가급적 주어를 갖출 필요가 있다.

####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법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3) 조사의 순화

법률의 조문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쓴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에도 불구하고’를 ‘~에 불구하고’ 라고 쓰거나, 여격 조사 ‘~에게’를 ‘~에’로 쓴 경우, 주격 조사 ‘~이/가’를 관형격 조사 ‘~의’로 쓴 경우 등이 특히 빈번하다.

5)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97면 이하 참조.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정당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법조문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의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류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의+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주술호응은 의미파악은 가능하지만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않게 된다.

정당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가 빈번하다. 부정확한 주격조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 (4) 명사구 문장의 순화

정당법에서도 체언형의 문체로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법률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문장을 동사구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민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사구 표현은 ‘~음을’, ‘~르 것을’, ‘~함에는’ 등이 있다.

#### (5) 문어체 문장의 순화

정당법 조문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문어체 문장이 눈에 많이 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정당법의 입법 당시의 언어습관과 이에 따른 입법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어체의 법조문은 일반 국민들이 법규범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판결문과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정당법의 문체를 모범으로 하여 문어체 문장을 답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언어환경과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어체로 된 법조문은 가급적 평이하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정당법 순화안

다음은 정당법을 조문별로 순화안을 제시하였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화안]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함’이란 표현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조문이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줌으로써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여함’이란 표현은 ‘기여하는 것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순화안] 이 법에서 정당은(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함은’ 또는 ‘~함을’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이라 함은’의 경우는 그냥 ‘정당은’으로 바꾸든가 혹은 ‘정당이라는 것은’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의 경우도 ‘정치적 의사에 참여하는 것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순화안] 정당은 수도에 위치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위치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소재(所在)’는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치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사용에 더 적절할 것이다.

‘구성한다’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당이 주어이므로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동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조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위해서는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등록에는’이란 표현과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등록에는’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을 위해서는’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제 4 조의2 (합당)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순화안]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이어 받는다.

‘승계(承繼)’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를 받아 계속하고 그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해 그 사람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승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이어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도 될 것이다.

제 6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순화안]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회와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者’는 의존명사로서 사람을 알잡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그 어감도 좋지 않고 의미에서도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사람’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단 복합명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 7 조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순화안]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발기인들이므로 ‘발기인으로 구성하는’이 아니라 ‘발기인으로 구성되는’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 8 조 (신고)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순화안]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개시(開始)’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시’를 ‘시작’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9 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없어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멸(消滅)’은 국어사전적으로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주로 법률효과, 법적 자격, 법적 권리, 시효 등이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로 쓰인다. 단순히 사실적 의미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소멸된’이란 표현을 우리말의 ‘없어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한 ‘지체(遲滯)’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체없이’는 ‘바로’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도 과거에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바로’로 순화하였다.<sup>6)</sup>

제10조의2 (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의 경우 누가 공개하여야 하는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공개하다 목적어는 정당의 창당집회이므로 동사가 피동형으로 바뀌어서 ‘공개되어야 한다’로 순화되어야 한다.

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11조 (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합당(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창당준비를 마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안에 보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합당(흡수합당)으로 남아있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그 회의록 사본을 덧붙여서 합당된 까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완료(完了)’란 완전히 끝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냄’ 혹은 ‘마침’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완료한 때에는’은 ‘마친 때에는’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내(以內)’는 어떤 기준을 포함해서 그보다 수량이 적은 범위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내에’라는 표현은 ‘~안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제4항에서는 ‘기간내에’와 ‘기간안에’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기간내에’는 ‘기간안에’로 바꾸는 것이 좋다.

‘존속(存續)’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의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존속하는’은 ‘남아있는’으로 바꿀 수 있다.

‘첨부(添附)’는 어떤 대상에 대상을 더하여 붙이는 것을 의미하고 사유(事由)는 일의 까닭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우리말로 순화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는 ‘덧붙여서’로, ‘사유를’은 ‘까닭을’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6. 당원의 수
7. 시·도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순화안]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시·도당의 있는 곳과 명칭
3. 사무소의 있는 곳
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5.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6. 당원의 수
7. 시·도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소재지(所在地)’란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있는 곳’으로 바꿀 수가 있다.

제13조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4. 당원의 수

[순화안]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있는 곳
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4. 당원의 수

‘소재지(所在地)’란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있는 곳’으로 바꿀 수가 있다.

제14조 (변경등록)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의 반복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 어법에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은 ‘당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15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내지(乃至)’는 ‘~부터 ~까지’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또는’의 의미도 있으므로 의미를 분명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부터 ~까지’로 표현하

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제12조 내지 제14조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

‘지체없이’는 ‘바로’로 변경(위에서 설명하였음)

‘교부(交付)’는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것, 즉 물건의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이 용어는 허가증,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주어야 한다’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순화안]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구비(具備)하다’는 필요한 물건이나 내용을 빠짐없이 갖추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구비하는’과 ‘구비하지’는 각각 ‘갖추는’과 ‘갖추지’로 바꿀 수가 있다.

‘상당(相當)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 적당한 혹은 적절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상당한’을 ‘적당한’이나 ‘적절한’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제20조 (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순화안]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者는’은 ‘~사람은’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함이’ 등과 같이 명사구가 많이 쓰이면 법률문장은 딱딱해진다. 따라서 동사구로 바꾸어주면 더욱 부드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는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인정하다’는 타동사이고 위 문장에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동사는 ‘명하여야 한다’이다. 따라서 ‘인정하는’은 자동사로서 피동형인 ‘인정되는’으로 고쳐야 한다.

제22조 (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순화안]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비치(備置)하다’는 마련하여 갖추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비치하다’는 ‘갖추어 놓다’로 바꾸어도 무방하므로 ‘비치하여야 한다’는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바꾸어도 좋다.

‘지득(知得)한 사실’은 알게된 사실을 의미하므로 ‘알게된 사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제22조의2 (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순화안]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 속한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당비를 부담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은 ‘~의’가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 속한 다른 당원’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타인(他人)’은 다른 사람을 말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者’의 경우는 ‘사람’으로 바꾼다.(위에서 설명)

제23조 (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에 적어넣은 것을 지워없애고 탈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에 적어넣은 것을 지워없애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기재(記載)하다’는 문서따위에 적어 넣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 넣다로 바꿀 수가 있다.

‘당원명부의 기재’는 당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의미하므로 ‘당원명단에 적어넣은 것을’로 바꾸어야 한다.

‘말소(抹消)’는 지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므로 ‘말소하고’와 ‘말소하게 하고’는 ‘지워없애고’와 ‘지워없애게 하고’로 바꿀 수 있다.

‘교부(交付)하여야 한다’는 ‘내주어야 한다’로 변경(위에서 설명)

제24조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순화안]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치하여야 한다’는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변경(위에서 설명).

제24조의2 (당원명부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 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순화안]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도장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도장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장(印章)’은 도장을 의미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도장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인장’을 ‘도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9조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두어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서 ‘가지다’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정당이 의원총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의원총회라는 기구를 설치하라는 의미므로 든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제2항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를 든다고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이다.(제2항은 2004. 3. 12에 신설되었고 제1항은 1962. 12. 31. 정당법 제정시부터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문이다) ‘가져야 한다’는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기타의 사항’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당의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의원총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구체적 사항을 알 수 없다. 정당에게 반드시 당헌에서 규정하라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에 있어서 ‘等’ ‘기타’와 같은 표현은 법치국가원리를 고려하면 되도록 자제하여야 하는 표현일 것이다.

제30조의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 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순화안]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에서 ‘초과한’은 ‘유급사무직원수’를 꾸며주는 수식어다. 그렇다면 능동형이 아닌 피동형의 ‘초과된’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순화안] ①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바로 앞에서 ‘정당의’란 표현으로 ‘~의’가 반복되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의’를 생략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라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31조의2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순화안]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그렇지 않다(혹은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은 단서규정에서 본문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것은 本文중의 어떠한 한 部分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否定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부분과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와 ‘그러지 아니한다(그러지 않는다)’를 제대로 구분하여 쓰지 않는 것은 법률문장에 매우 흔한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국어 문법을 어기는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행문장의 동사를 받는다(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가 아니라 ‘그러지’를 써야 하고, 선행 문장의 형용사를 받는다(지시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동사 자체가 당위성, 가능성(--어야 한다, --을 수 있다)을 나타내는 선행 문맥 상황 전체를 지시할 때에는 비록 앞 문장에 동사가 쓰였더라도 ‘그러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일본 쇼오와(昭和) 시대의 오래된 일본의 근대 문어체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 표현이라는 것이다.<sup>8)</sup>

따라서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로 고치든가 혹은 위 문장을 파악하여 ‘예외로 한다’로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7) 김희진, 법률용어와 법률 문장의 바람직한 순화 방안,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국가기관 합동회의, 국회법제실, 2004. 4. 7, 109면.

8)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2, 248면.

④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은 ‘위반되는’과 ‘소요되는’에서 ‘~되는’이 반복 사용되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따라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제31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순화안] ①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표현에서 ‘부담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비용’이다. 따라서 ‘비용은’ 보다는 ‘비용을’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의 경우에도 ‘사항은’을 ‘사항을’로 바꾸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31조의5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31조의5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의할 경우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한 개의 이상의 다른 조사 뒤에 ‘~의’가 쓰이는 형은 일본어투이다. 이러한 예로는 ‘~에 있어서의(～においての)’, ‘~로서의(～ちしての)’, ‘~로부터의(～からの)’, ‘~에의(～への)’ 등이 있다. 이 경우 ‘~에 있어서의(～においての)’는 ‘~의(할) 경우’ 또는 ‘~에서’로, ‘~로서의(～ちしての)’는 ‘~로서’, ‘~로부터의(～からの)’는 ‘~로부터’, ‘~에의(～への)’는 ‘~에’로 고쳐 쓸 수 있다. 따라서 ‘당내경선에 있어서의’는 ‘당내경선에 의할 경우’로 바꿔 쓸 수 있다.

제31조의6 (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내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순화안]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부터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까지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준용된다.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서 ‘현행범의 신고’라고 하면 현행범이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행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내지’는 ‘~부터 ~까지’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으로 바꾸고,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6에서’는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로 바꾼다.

‘준용하다’라는 법률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준용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타동사인 ‘준용하다’를 사용하여 능동문으로 서술해야 하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사인 ‘준용되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서 주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

항의 규정은'이 주어이다. 그러나 '준용한다' 앞에 '이를'을 반복하여 마치 '이를'이 목적어인 것처럼 하였으나, '이를'은 주어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사인 '준용된다'로 서술해야 한다.

제32조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순화안]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명함에는'은 명사구 문장이므로 '제명하는 경우에는'으로 바꾸는 것이 부드러운 표현이다.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화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렇지 않다(혹은 예외로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혹은 '예외로 한다'로 고칠 수 있다.

제37조 (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에 흡결이 생긴 때에는 흡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상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에 흡이 생긴 때에는 흡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활동개황(活動概況)’에서 개황은 대개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써 ‘상황’으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위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위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는 ‘바로’로 바꾸어 사용한다.

제39조 (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바로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체없이’는 ‘바로’로 바꾸어 사용한다.

제40조 (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순화안]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의’의 반복은 문장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복사용을 피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산결정의 통지’를 ‘해산결정통지’로 하여도 무방하다.

제4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화안]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된다.

②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바로 주격조사이다. 그러나, 실제 법조문에서는 주격조사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예가 많다.

법조문에서 주어의 위치에 관형격 조사인 ‘의’를 사용하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의’는 주격조사로 고쳐져야 한다. ‘당헌의 정하는 바’의 경우에 ‘정하다’의 주어가 당헌이므로 ‘당헌이’고 바뀌어야 한다.

‘~잔여재산은 ~처분한다’의 경우에도 ‘처분한다’의 주어가 잔여재산이므로 ‘처분한다’라는 타동사를 자동사인 ‘처분된다’로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은 ~귀속한다’의 경우 ‘귀속하다’도 자동사이거나, 보통의 경우 귀속되다가 자동형으로 더 많이 사용되므로 어감을 위하여 ‘귀속된다’로 고쳐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도 ‘정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필요한 사항’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순화안]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가지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사한 것으로’를 ‘유사한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가지는’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43조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신설 1993.12.27>

④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순화안]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못한다’와 ‘사용할 수 없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칭은’을 ‘명칭을’로 바꾸어야 한다.

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순화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엄수하다’는 어김없이 꼭 지키다라는 의미이므로 ‘엄수하여야 한다’는 ‘지켜야 한다’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제45조의2 (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31조 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도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는 ‘사람’으로 변경한다.

‘인장’은 ‘도장’으로 바꾼다.(앞에서 설명하였음)

제45조의3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순화안]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사람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사람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제45조의4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는 ‘사람’으로 바꾼다.

제45조의5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45조의4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순화안]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혹은 이익은 몰수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에서 ‘몰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목적어이다. 따라서 ‘이익’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을 붙여서 사용하고 불필요한 ‘이를’을 생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혹은 피동형으로 ‘이익은 몰수된다’로도 가능하다.

제45조의6 (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사람(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사람(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제46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6조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제47조 (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제49조 (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순화안]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제50조 (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사람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해태(懈怠)는 일반적으로 ‘게으름, 게을리 함’을 의미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태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단어로서 ‘태만’ 또는 ‘게을리 하다’라고 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태를 ‘게을리하다’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태의 의미에는 단순히 ‘하지 않는 부작위’가 아니라 법적인 비난성 또는 비난가능성을 내포하는 법률개념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sup>9)</sup> 이에 대해 해태란 단어에 대해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비난가능성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태의 어학적 의미에 비난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도 있다.<sup>10)</sup> ‘해태’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게을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9) 이진기, 우리말과 법률, 인권과 정의 제317호, 2003. 1, 141면.  
10) 류창호,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56면.

제52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한다.

②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순화안] 제52조 (공무상 알게된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지득한 사실’은 알게된 사실을 의미하므로 ‘알게된 사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  
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 ①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해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①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  
청을 게을리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  
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해태’는 ‘게을리’로 바꾼다.

제54조 (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화안]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갖추어놓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도장등을 넘겨주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규정에 위반하여’에서 위반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인 ‘규정’에는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서 ‘규정을’로 하여야 한다.

‘비치(備置)하다’는 마련하여 갖추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비치하다’는 ‘갖추어 놓다’로 바꾸어도 무방하므로 ‘비치하여야 한다’는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바꾸어도 좋다.

‘인장’은 ‘도장’으로 바꾼다.

‘인계(引繼)’하다는 ‘넘겨주다’의 의미이므로 ‘인계하지’는 ‘넘겨주지’로 바꿀 수 있다.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순화안]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사람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제5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순화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者)’를 ‘사람’으로 바꾼다.

‘지체없이’를 ‘바로’로 바꾼다.

## V. 결 론

이미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령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쉬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법령이 한국어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의 사용과 정확한 문법, 정확하고 명백한 표현이 요구된다. 그러나 법령이라는 것도 하나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법령이라든가 판례 등에서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한글이나 순 우리말로 하였을 때 의미파악이 어렵다든가 혹은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순 우리말이나 한글로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양법을 계수하여 번역식의 어투가 곳곳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일본식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띄어쓰기의 경우도 우리나라 문법에 맞게 정확한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의 경우에는 판례라든가 혹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법령은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어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할 것이다.

**【부록】 정당법 순화대비표**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u>기여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u>기여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u>정당이라 함</u>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u>참여함</u>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u>정당은(정당이라는 것은)</u>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u>참여하는 것을</u>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p>
<p><b>제 3 조</b> (구성) 정당은 수도에 <u>소재하는</u>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u>소재하는</u>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u>구성한다</u>.</p>	<p><b>제 3 조</b> (구성) 정당은 수도에 <u>위치하는</u>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u>위치하는</u>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u>구성된다</u>.</p>
<p><b>제 4 조</b>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u>등록에는</u>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p>	<p><b>제 4 조</b>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u>등록을 위해서는</u>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p>
<p><b>제 4 조의2</b>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b>제 4 조의2</b>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될 때에는 선거일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u>승계한다</u>.</p> <p><b>제 6 조</b>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u>자</u>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u>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li> <li>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li> <li>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u>가진 자</u></li> </ol> <p><b>제 7 조</b>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u>구성하는</u>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u>이어받는다</u>.</p> <p><b>제 6 조</b>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u>사람은</u>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사람은</u>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li> <li>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li> <li>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u>가진 사람</u></li> </ol> <p><b>제 7 조</b>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u>구성되는</u>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제 8 조</b> (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기의 취지</li> <li>2. 정당의 명칭(가칭)</li> <li>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li> <li>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li> <li>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li> </ol> <p>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 9 조</b>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p> <p>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p> <p>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2</b> (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p> <p>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p> <p><b>제11조</b> (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b>제 8 조</b> (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기의 취지</li> <li>2. 정당의 명칭(가칭)</li> <li>3.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li> <li>4. 회계책임자의 성명, 주소</li> <li>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항</li> </ol> <p>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 9 조</b>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p> <p>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p> <p>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p> <p>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없어진 것으로 본다.</p> <p>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없어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2</b> (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되어야 한다.</p> <p>②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p> <p><b>제11조</b> (등록신청) ①창당준비를 마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u>이내</u>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u>이내</u>에 보완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u>기간내</u>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합당(흡수합당)으로 <u>존속하는</u>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u>이내</u>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12조</b>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li> <li>2. 시·도당의 <u>소재지</u>와 명칭</li> <li>3. 사무소의 <u>소재지</u></li> <li>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li> <li>5.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li>6. 당원의 수</li> <li>7. 시·도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ol> <p>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도당등록 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p>	<p>②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u>안에</u>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u>안에</u> 보완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 그 <u>기간안에</u>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합당(흡수합당)으로 <u>남아있는</u>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u>안에</u> 그 회의록 사본을 <u>덧붙여서</u> 합당된 <u>까닭</u>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12조</b>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li> <li>2. 시·도당의 <u>있는 곳</u>과 명칭</li> <li>3. 사무소의 <u>있는 곳</u></li> <li>4.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li> <li>5.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li>6. 당원의 수</li> <li>7. 시·도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ol> <p>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시·도당수 이상의 수의 시·도당등록 사본과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13조</b>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명칭</li> <li>2. 사무소의 <u>소재지</u></li> <li>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li>4. 당원의 수</li> </ol> <p>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14조</b> (변경등록)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의 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5조</b>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u>지체없이</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6조</b>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u>구비하는</u>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u>구비하지</u> 못한 때에는 <u>상당한 기간을</u>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p> <p><b>제20조</b> (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u>자</u>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p>	<p>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13조</b>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의 명칭</li> <li>2. 사무소의 <u>있는 곳</u></li> <li>3.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li> <li>4. 당원의 수</li> </ol> <p>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14조</b> (변경등록)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일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5조</b>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등록을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u>내주어야</u> 한다.</p> <p>②제1항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u>바로</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6조</b> (등록신청의 수리등)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u>갖추는</u>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형식적 요건을 <u>갖추지</u> 못한 때에는 <u>적당한 기간을</u>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p> <p><b>제20조</b> (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u>사람</u>은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p> <p>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p> <p><b>제22조</b> (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 <p>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u>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u></p> <p><b>제22조의2</b> (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p>	<p>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의 대표자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p> <p>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p> <p><b>제22조</b> (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p> <p>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u>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u></p> <p><b>제22조의2</b> (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p> <p>③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p> <p><b>제23조</b> (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p> <p>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24조</b>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b>제24조의2</b> (당원명부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p>	<p>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 속한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당비를 부담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p> <p>③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p> <p><b>제23조</b> (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p> <p>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안에 당원명부에 적어넣은 것을 지워없애고 탈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에 적어넣은 것을 지워없애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p><b>제24조</b>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p> <p><b>제24조의2</b> (당원명부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u>인장</u>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u>인장</u>등을 인계하여야 한다.</p> <p><b>제29조</b>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u>가져야 한다</u>.</p> <p>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u>기타의 사항</u>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p> <p><b>제30조의2</b>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u>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u>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p> <p><b>제31조</b>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정당의 <u>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u>은 민주적이어야 한다.</p> <p>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p>	<p>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이하 “관련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u>도장</u>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u>도장</u>등을 인계하여야 한다.</p> <p><b>제29조</b>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u>두어야 한다</u>.</p> <p>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 권한 <u>기타의 사항</u>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p> <p><b>제30조의2</b>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시·도당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u>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u>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p> <p><b>제31조</b>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정당의 <u>공직선거후보자추천</u>은 민주적이어야 한다.</p> <p>②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p><b>제31조의2</b>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p> <p><b>제31조의2</b> (당원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등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b>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li> <li>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li> <li>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li> </ol> <p>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p>	<p>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은 <u>그렇지 않다(혹은 예외로 한다).</u></p> <p>②누구든지 후보자등이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등은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31조의3 (당내경선운동)</b>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li> <li>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당내경선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li> <li>3.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li> </ol> <p>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내경선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본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④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1조의4</b>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u>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u>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u>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p> <p><b>제31조의5</b>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p> <p><b>제31조의6</b> (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u>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u>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제1항제2호의 경선훈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1조의4</b>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중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사무 등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u>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u>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u>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u></p> <p><b>제31조의5</b>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의한 경우 이의제기) 정당이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p> <p><b>제31조의6</b> (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①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u>현행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u> 관련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 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내지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32조</b>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b>제36조</b>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37조</b> (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8조</b>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p> <p>1.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p>	<p>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5조의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부터 제45조의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까지 규정하는 범죄의 조사에 준용된다.</p> <p><b>제32조</b>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헌에 정하는 절차외에 그 소속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b>제36조</b>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기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는 그렇지 않다(혹은 예외로 한다).</p> <p><b>제37조</b> (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상황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에 흠이 생긴 때에는 흠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8조</b>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p> <p>1. 제25조 및 제27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일전 3월안에 생긴</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흡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p> <p>2.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p> <p>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u>지체없이</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39조</b> (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u>지체없이</u>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40조</b> (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u>해산결정의 통지</u>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u>지체없이</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41조</b>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u>당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u>한다.</p> <p>②삭제</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p> <p>④제3항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흡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p> <p>2. 최근 4년간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p> <p>3.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u>바로</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39조</b> (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u>바로</u>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40조</b> (해산과 등록취소등) 제39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u>해산결정 통지</u>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u>지체없이</u>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41조</b>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①정당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u>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u>된다.</p> <p>②삭제</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p> <p>④제3항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u>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제42조</b>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p>	<p><b>제42조</b>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p>
<p><b>제43조</b>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b>제43조</b>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b>제45조</b>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p>
<p><b>제45조의2</b> (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5조의2</b> (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31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 참관인, 선거사무의 수행·지원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위촉한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도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 또는 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45조의3</b>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자</u>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u>자</u></li> <li>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u>자</u></li> <li>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u>자</u>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u>자</u></li> </ol> <p>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협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u>자</u>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li> <li>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한 <u>자</u>는 7년 이하의 징역</li> <li>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u>자</u>는 2년 이하의 징역</li> </ol>	<p><b>제45도의3</b>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①당내경선 및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내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사람</u>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u>사람</u>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u>사람</u></li> <li>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u>사람</u></li> <li>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u>사람</u>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u>사람</u></li> </ol> <p>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협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u>사람</u>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li> <li>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한 <u>사람</u>은 7년 이하의 징역</li> <li>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u>사람</u>은 2년 이하의 징역</li> </ol>
<p><b>제45조의4</b>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u>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u>자</u></li> <li>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li> </ol>	<p><b>제45조의4</b>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사람</u>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u>사람</u></li> <li>2.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내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li> </ol>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p> <p>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p> <p>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5조의5</b>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b>제45조의6</b> (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p>	<p>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p> <p>3.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p> <p>②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 또는 제31조의2(당원 등 매수금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5조의5</b> (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45조의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혹은 이익은 몰수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b>제45조의6</b> (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사람(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u>자</u>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u>자</u>(<u>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6조</b>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6조 단서의 <u>규정에</u>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u>자</u>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7조</b> (입당강요죄등) 제19조제1항의 <u>규정에</u>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u>자</u>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8조</b>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u>규정에</u>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u>자</u>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9조</b> (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u>자</u>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50조</b> (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u>자</u>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u>자</u>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2조</b> (공무상 <u>지득한</u>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u>지득한</u> 사실을 누설한 <u>자</u>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u>사람과</u>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u>사람</u>(<u>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u>)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6조</b>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6조 단서의 <u>규정을</u>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u>사람</u>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7조</b> (입당가용죄등) 제19조제1항의 <u>규정을</u> 위반하여 타인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탈당하게 한 <u>사람</u>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8조</b>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19조제2항의 <u>규정을</u>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u>사람</u>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49조</b> (당원명부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u>사람</u>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50조</b> (보고불이행등의 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u>사람</u>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u>게을리하거나</u>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u>사람</u>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2조</b> (공무상 <u>알게된</u> 사실누설죄등) ①제22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u>알게된</u> 사실을 누설한 <u>사람</u>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제45조의 <u>규정에</u> 위반한 <u>자는</u>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b>제53조</b> (허위등록신청죄등) ①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u>자는</u>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u>규정에</u>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u>해태한</u> <u>자는</u>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u>규정에</u> 위반한 <u>자는</u>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4조</b> (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u>규정에</u>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u>비치하지</u> 아니한 <u>자는</u>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23조제3항의 <u>규정에</u> 위반한 <u>자는</u>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제24조의2의 <u>규정에</u>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인장등을 <u>인계하지</u> 아니한 <u>자</u>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5조</b> (창당방해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u>자는</u>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u>자도</u>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p> <p><b>제56조</b>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자</u>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u>자</u></p>	<p>②제45조의 <u>규정을</u> 위반한 <u>사람은</u>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 <p><b>제53조</b> (허위등록신청죄등) ①허위로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을 한 <u>사람은</u>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허위로 제14조의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동조의 <u>규정을</u>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u>게을리한</u> <u>사람은</u>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u>규정을</u> 위반한 <u>사람은</u>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4조</b> (제의무해태죄) ①제22조제1항 및 제24조의 <u>규정을</u>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u>갖추어놓지</u> 아니한 <u>사람은</u>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23조제3항의 <u>규정을</u> 위반한 <u>사람은</u>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제24조의2의 <u>규정을</u> 위반하여 관련서류와 도장등을 <u>넘겨주지</u> 아니한 <u>사람은</u>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55조</b> (창당방해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u>사람은</u>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u>사람도</u>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p> <p><b>제56조</b>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u>사람은</u>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u>사람</u></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u>자</u>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u>자</u>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u>지체없이</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	<p>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1조의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u>사람</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u>사람</u>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u>사람</u>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u>바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p>



지방자치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춘 환  
(조선대 법대 교수)

목 차

I. 서 론 .....	79
II. 법령순화기준 .....	80
1. 박갑수교수의 기준 .....	80
2. 이 밖의 법령순화기준 .....	81
(1) 용어의 순화원칙 .....	81
(2) 문장의 순화원칙 .....	83
III. 결 론 .....	86
【부록】 지방자치법 순화대비표 .....	88
【부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순화대비표 .....	154
참고문헌 .....	199

## I. 서론

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법령의 내용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할 때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 어려운 단어나 문장구조, 불명확한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명확한 단어의 사용, 정확한 문장구조의 사용,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법령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일본식 표현, 난해한 한자어의 사용, 비문법적인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령의 대부분이 일본 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정·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신세대에게는 그러한 법령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풍습, 전통, 가치관 등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술상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일본의 법령을 우리나라가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일반국민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일반국민이 법령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법령에서 이하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의 사용은 한자를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한글전용세대에게는 법령의 이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적인 법 개념의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령에서조차 알 수 없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법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동기를 주게 될 것이다.

셋째, 법령문장이 한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조차도 법령문장을 지나치게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 한자어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사용을 고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순화하기로 한다.

## II. 법령순화기준

법령을 어떻게 순화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된 순화기준이 없다. 따라서 법령순화작업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민사소송법 한글화 추진 작업을 위한 민사소송법 한글화 및 순화작업의 기준(1997.8.11)이 있다. 이 기준은 박갑수 교수 보고서에 근거한 것인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박갑수교수의 기준

- ①용어순화의 원칙(한자의 한글화)
  -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
  - 구시대적 한문투 용어의 순화
  - 준말이라는 할 어려운 용어의 순화
  - 일상용어이나 좀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의 순화
  - 일본식 용어, 특히 혼독어의 순화
  - 권의주의적 용어의 순화
- ②문장의 순화원칙(문장구조의 개선)
  - 한문투의 문어체
  - 일본어식 표현의 순화
  - 비문법적 문장의 순화
  - 명사구의 오남용 순화

- 난해하거나 의무가 모호한 문장의 순화
- 의미과약이 곤란한 문장의 생략된 자료의 보충

## 2. 이 밖의 법령순화기준

이 밖의 연구결과에 의한 법령순화기준으로는 ①외래어의 사용자제, ②복잡한 문장의 순화, ③피동문장의 순화, ④주어가 생략된 문장의 순화, ⑤조사의 순화, ⑥법령문장 띄어쓰기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순화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법령의 순화기준과 그 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1) 용어의 순화원칙

#### 1)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일반국민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게 한다.

예컨대,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는 촌락-자연부락(동법 제4조 제4항), 명칭-이름(동법 제4조 제3항), 개수-보수(동법 제9조 제2항, 4, 라), 궤도-철도(동법 제9조 제2항, 4, 타), 그러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동법 제40조), 단지-그러나(동법 제59조), 지체없이-즉시(동법 제68조 제2항), 개시-시작(동법 제118조 제1항), 역무-공무(동법 제151조 제2항), 겸직하다-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해태하다-게을리하다 등으로 순화한다.

#### 2) 구시대적 한문투 용어의 순화

구시대적 한문투 용어는 알기 쉬운 현대어로 바꾼다.

예컨대, 각별로-따로 따로, 고하다-알리다, 공동-다 함께, 당해-해당, 도과하다-넘기다, 불성립-성립하지 아니함, 불출석-출석하지 아니함, 수인-여러 사람, 원격지-멀리 떨어진 곳, 위반하다-어긋나다, 고지하다-알리다, 보정하다-바로잡다, 해지-효력소멸, 각호의 1-각호(동법 제99조 제2항) 등으로 순화한다.

### 3) 준말 및 복합어의 순화

법령의 용어의 준말 또는 복합어는 오히려 용어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말 또는 복합어는 법령용어를 원래대로 바꾸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다.

예컨대, 폐치·분합·설치·폐지·분리·통합(동법 제5조 제1항), 도농 복합형태의 시·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동법 제7조 제2항), 보한다-담당하게 한다(동법 제83조 제3항), 출납폐쇄 후-출납이 폐쇄된 후(동법 제125조), 관할구역-관리하는 구역(동법 제40조 제3항 제2호), 수급조절-수요와 공급의 조절(동법 제11조 3), 소송계속중-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구하다-청구하다, 성부-성립여부, 수권-권한부여, 요하다-필요하다, 제소-소송제기, 직-직책, 특칙-특별규정, 행하다-수행하다, 허부-허가여부, 비밀준수의무-비밀을 지킬 의무 등으로 순화한다.

### 4) 일상용어나 좀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의 순화

법령용어 중에는 일반국민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지만 좀더 순화할 필요가 있는 더 쉬운 용어로 바꾼다.

예컨대, 단지-그러나(동법 제69조),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효력을 상실하다-효력을 잃는다(동법 제100조 제3항). 지체없이-즉시(동법 제100조 제2항). 변경하다-바꾸다(동법 제70조 제2호), 최초로-처음으로(동법 제39조 제1항) 등으로 순화한다.

### 5) 일본식 용어의 순화

일본식 용어는 일반국민이나 신세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예컨대, 하자-흠, 흠결-흠 또는 부족, 지체-늦어짐, 취득하다-얻다 또는 갖다, 적법-법에 맞음, 인용-받아들임, 이해관계인-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보-미루어 둠, 수권- 권한부여, 부적법-법에 맞지 않음, 가압류-임시압류, 가집행-임시집행, 가처분-임시처분, 취하-철회 또는 취소, 송부하다-보내다, 인도하다-넘기다, ~대하여 - ~에게 등으로 순화한다.

## 6) 권위주의적 용어의 순화

법령에서 사용되는 권위주의적 용어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

예컨대, 자-사람(동법 제65조 제1항), 인-사람(동법 제77조), 방청인-방청하는 사람(동법 제76조 제4항), 이해관계인-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순화한다.

### (2) 문장의 순화원칙

#### 1) 생략되거나 도치된 문장의 순화

문장성분이 생략되거나 도치되어 법령의 내용과약이 어려운 경우, 문장성분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즉 법령문장에서 주어와 생략되거나 문장자체가 도치되어 의미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문장을 도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 문장은-“지방의회는 (동법 제36조 제5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도치된 문장으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이 있다. 이 문장은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한다”(동법 제1조)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문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의 합리화 및 그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로 바꿀 수 있다.

## 2) 피동문장의 순화

피동문장은 능동문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명백히 한다.

예컨대, 소송이 제기되다-소송을 제기하다(동법 제34조의2 제2항). 추정되다-추정하다, 준용되다-준용한다, 완성되다-완성하다로 바꾸어 문장을 순화한다.

## 3)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순화

한문투 문체나 일본어투 문체, 문어체 문장은 현대의 언어감각에 맞게 순화한다.

### ① 한자어의 순화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예컨대, 기산하다-계산하다, 산입-넣다. 산정-계산, 수권-권한부여 혹은 권한 받음, 직근-바로 위, 추완하다-보완하다, 특칙-특별규정, 해태하다-게을리 하다, 흠결-흠, 교부하다-내어주다, 기명날인하다-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다, 승계하다-이어받다, 유보하다-미루어두다, 이송-옮겨 보내기, 통지하다-알리다 등으로 순화한다.

그러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었을 때, 한자어를 대처할 적절한 우리말이 없거나, 바꾼 내용이 오히려 어색하게 되는 경우, 바꾼 내용이 오히려 모호해지는 경우, 바꾼 문장의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현재대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바뀌게 되는 내용이 오히려 국민의 법령인식에 혼란을 주게 되므로 현행대로 사용한다.

예컨대, 출장(동법 제101조의2 제3항), 후보자(동법 제101조의2 제2항)추천(지방자치법 제103조 제5항), 분담금(동법 제129조), 징수(동법 제128조 제2항), 결산(동법 제125조 제1항), 고시(동법 제125조 제2항), 분쟁(동법 제140조 제1항), 서면(동법 제140조 제4항) 등은 우리말로 바꿀만한 적당한 용어가 없으며, 현재대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의 법령내용의 인식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대로 사용한다.

### ②일본식 용어의 순화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로 바꾼다. 우리나라의 법령이 일본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많으므로 일본식 용어가 법령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과 달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로 바꾼다.

예컨대, 의하여-따라(동법 제16조 제2항), ~한 때 - ~한 경우, 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따라야 한다(동법 제15조의5 제2항),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동법 제15조의2 제5항) 등으로 순화한다.

### ③부자연스러운 용어의 순화

일상용어 중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컨대, 당해 기관-해당 기관, 응하다-따르다, 개시-시작되다, 과반수-반수 이상, 기재하다-적다, 내에서-안에서, 대행하다-대신하다, 동일-같은, 변경하다-바꾸다, 부기하다-덧붙여 적다, 부담하다-지다, 부여-내어 주다 또는 주다, 사망하다-죽다, 산정하다-계산하다, 상실하다-잃다, 상호-서로, 연월일-날짜, 열람-보여주다 또는 보다, 위배하다-어긋나다, 유예하다-미루어 두다, 의하다-따르다, 의존하다-매이다, 쟁의-다툼, 침부하다-붙이다, 초과하다-넘기다, 기재하다-적어 넣다, 소멸하다-없어 지다, 제거-없앴, 흠결-흠, 부족, 모자람, 해태하다-게을리 하다 등으로 순화한다.



#### 4) 명사구의 오남용 순화

법령이 명사구를 오·남용하여 어색하게 된 문장은 부사 등으로 바꾼다. 예컨대, 보정할 것을-보정하도록, 정하는 바에 따라-규정에 따라 등으로 순화한다.

#### 5) 조사의 순화

문장 중에서 조사를 생략되거나 잘 못 사용되어 문장이 어색한 경우에는 조사를 어법에 맞게 고친다.

예컨대, 조례 또는 규칙-조례와 규칙, 소송제기된 후-소송이 제기된 후 (동법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 등 순화한다.

#### 6) 법령문장 띄어쓰기

법령문장 띄어쓰기의 기준은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1.19)과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1988.1.19)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문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Ⅲ. 결 론

법령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쉽고 명확하며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문은 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한자어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한글세대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령순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렵고 복잡한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 스스로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일본어와 한자어 표현의 사용의 자제와 길고 복잡한 한글문장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순화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순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순화기준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처, 대법원 등 관련 국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지방자치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綱</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總則</p>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均衡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89·12·30]</p> <p><b>第2條</b>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種으로 한다. &lt;개정 1994.12.20, 2005.1.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li> <li>2. 市와 郡 및 區</li> </ol> <p>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域市の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4.12.20&gt;</p> <p>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p> <p>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3條</b>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域市 또는 道の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b>제1조</b>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다.</p> <p><b>제2조</b>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광역시·도</li> <li>2. 시·군·구</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③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p> <p>④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조</b>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는 정부의 바로 밑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特別市와 廣域市の 管轄區域안에 둔다. &lt;改正 1994·12·20&gt;</p> <p>③特別市 또는 廣域市가 아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 郡에는 邑·面을 두며, 市와 區(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洞을, 邑·面에는 里를 둔다.&lt;改正 1994·12·20&gt;</p> <p>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두되,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面·洞을 둘 수 있다. &lt;新設 1994·3·16, 1994·12·20&gt;</p> <p>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p> <p><b>第4條</b>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p> <p>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定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第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99.8.31, 2004.1.29&gt;</p> <p>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례로 定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定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8.31, 2005.3.24&gt;</p>	<p>특별시와 광역시의 <u>관할구역 안에</u> 둔다.</p> <p>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p> <p>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u>그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해당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u></p> <p>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p> <p><b>제4조</b> (지방자치단체의 <u>이름과 구역</u>)</p> <p>①지방자치단체의 <u>이름과 구역은 이전에 따르고 이를 바꾸거나</u>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폐지·분리·통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u>관할구역의 경계를 바꾸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u>설치·폐지·분리·통합하거나 그 이름 또는 구역을 바꿀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u>이름과 구역은 이전에 따르고, 이를 설치·폐지·분리·통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이름과 구역을 바꾸는 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④리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중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p> <p>⑤洞·리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리를 2개 이상의 洞·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리를 하나의 洞·리로 운영하는등 行政運營上 洞·리(이하 “行政洞·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⑥第5項의 行政洞·리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p> <p><b>第 5 條</b> (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管轄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産을 承繼한다.</p> <p>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産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가 그 事務와 財産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lt;改正 1994·12·20, 1999.8.31&gt;</p> <p><b>第 6 條</b> (事務所의 所在地)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面·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中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 &lt;개정 1994·12·20, 1999.8.31, 2005.3.24&gt;</p>	<p>④리의 구역은 <u>자연부락</u>을 기준으로 하되, 그 <u>이름</u>과 구역은 <u>이전에 따르고</u> 이를 <u>바꾸거나</u> 설치·폐지·분리·통합할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u>따라</u>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u>함</u>)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u>규정에 따라</u>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p> <p><b>제 5 조</b> (구역변경, 설치·폐지·분리·통합할 경우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u>구역을 바꾸거나</u> <u>설치·폐지·분리·통합이 있는</u> 경우에는 새로 그 지역을 <u>관리·운영하게</u>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u>이</u>어 받는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u>따</u>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u>어려운</u>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u>이</u>어받을 지방자치단체를 <u>정</u>한다.</p> <p><b>제 6 조</b>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와 <u>자치구가 아닌</u> 구·읍·면·동의 <u>사무소의 장소는 이전에 따르고,</u> 이를 <u>바꾸거나</u> 새로 두는 경우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4.12.20&gt;</p> <p><b>第7條</b> (市·邑의 設置基準등)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lt;改正 1995.8.4, 2003.7.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li> <li>2. 人口 5萬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li> <li>3. 人口 2萬 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 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 이상인 郡.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i> <li>4. 國家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li> </ol> <p>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 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li> <li>2.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li> </ol> <p>④삭 제&lt;1999.8.31&gt;</p> <p>⑤市·邑의 設置에 관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p> <p><b>第8條</b>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p>	<p>②제1항의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회의 재적의원 <u>반수 이상</u>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b>제7조</b> (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li> <li>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li> <li>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i> <li>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u>따라</u>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u>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u>의 시의 일부인 지역</li> </ol> <p>③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u>그러나</u>,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군사무소가 있는 곳의 면</u></li> <li>2. 읍이 없는 <u>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u>의 시에 있어서 그 <u>면 가운데</u> 1개면</li> </ol> <p>④삭 제</p> <p>⑤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p> <p><b>제8조</b>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運營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③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p> <p><b>第9條</b>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5.12.29, 1999.2.8&gt;</p> <p>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 등에 관한 事務</p> <p>가.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位置 및 區域의 調整</p> <p>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p> <p>다. 傘下行政機關의 組織管理</p> <p>라. 傘下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監督</p> <p>마.  소속公務員의 人事·厚生福祉 및 教育</p> <p>바.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p> <p>사. 豫算의 編成·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p> <p>아. 行政裝備管理,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p> <p>자. 公有財産管理</p> <p>차.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p> <p>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查 및 統計의 작성</p>	<p>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u>조직·운영의 합리화</u> 및 그 <u>규모의 적정화</u>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b>제9조</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의 <u>규정에 따라</u>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나,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p> <p>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u>이름·위치 및 구역의 조정</u></p> <p>나. <u>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u> 및 그 운영·관리</p> <p>다. <u>지방자치단체의</u> 행정기관의 조직관리</p> <p>라. <u>지방자치단체의</u>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p> <p>마. <u>지방자치단체의</u>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p> <p>바. 지방세와 <u>지방세의 수입</u>의 부과 및 징수</p> <p>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p> <p>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p> <p>자. <u>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u></p> <p>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p> <p>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u>여러 가지</u> 조사 및 통계의 작성</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p> <p>가.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p> <p>나.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운영 및 管理</p> <p>다.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p> <p>라. 老人·兒童·心身障者·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p> <p>마. 保健診療機關의 設置·운영</p> <p>바.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p> <p>사.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운영·管理</p> <p>아.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p> <p>자. 清掃, 汚物의 收去 및 처리</p> <p>차.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운영</p> <p>3. 農林·商工業등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p> <p>가. 小溜池·沕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p> <p>나. 農林·畜·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支援</p> <p>다. 農業資材의 管理</p> <p>라. 複合營農의  운영·指導</p> <p>마. 農外所得事業의  육성·指導</p> <p>바. 農家副業의 獎勵</p> <p>사. 公有林管理</p> <p>아. 小規模畜産開發 및 酪農振興事業</p> <p>자. 家畜傳染病 豫防</p> <p>차. 地域産業의  육성·지원</p> <p>카.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獎勵</p> <p>타. 中小企業의  육성</p> <p>파.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육성·지원</p> <p>하. 優秀土産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곤란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제거</p> <p>사.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p> <p>아. <u>공중접객영업소</u>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소유지·보통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p> <p>다. 농업자재의 관리</p> <p>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p> <p>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p>바. 농가부업의 장려</p> <p>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u>산림의 관리</u></p> <p>아. <u>규모가 적은</u> 축산개발 및 <u>축산업진흥사업</u></p> <p>자. 가축전염병 예방</p> <p>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p>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p> <p>타. 중소기업의 육성</p> <p>파. <u>특수한 지역산업</u>의 개발과 육성·지원</p> <p>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u>관광민예품 개발</u></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管理에 관한 事務</p> <p>가. 地域開發事業</p> <p>나. 地方 土木·建設事業의 施行</p> <p>다. 都市計劃事業의 施行</p> <p>라. 地方道, 市郡道の 新設·改修 및 유지</p> <p>마. 住居生活環境改善의 獎勵 및 지원</p> <p>바.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p> <p>사. 自然保護活動</p> <p>아. 地方1級河川, 地方2級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p> <p>자. 上水道·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p> <p>차.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p> <p>카. 道立·郡立 및 都市公園, 綠地 등 觀光·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p> <p>타. 地方軌道事業의 경영</p> <p>파. 駐車場·交通標識 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p> <p>하. 災害對策의 수립 및 執行</p> <p>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p> <p>5. 教育·體育·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p> <p>가. 幼兒園·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 學校의 設置·운영·指導</p> <p>나. 圖書館·運動場·廣場·體育館·博物館·公演場·美術館·音樂堂 등 公共教育·體育·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p> <p>다. 地方文化財의 지정·보존 및 管理</p> <p>라. 地方文化·藝術의 振興</p> <p>마. 地方文化·藝術團體의 육성</p> <p>6.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p> <p>가.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監督</p> <p>나. 火災豫防 및 消防</p>	<p>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개발사업</p> <p>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p>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p> <p>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관리 및 유지</p> <p>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p> <p>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p> <p>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u>적은 하천의 관리</u></p>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타. 지방철도사업의 경영</p>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p>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p> <p>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p> <p>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p>나. 화재예방 및 소방</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b>第10條</b>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p> <p>1. 市·道</p> <p>가. 行政處理結果가 2個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p> <p>나. 市·道單位로 동일한 基準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性質의 事務</p> <p>다. 地域의 特性을 살리면서 市·道單位로 統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事務</p> <p>라. 國家와 市·郡 및 自治區間의 連絡·調整등의 事務</p> <p>마. 市·郡 및 自治區가 獨自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事務</p> <p>바. 2個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가 共同으로 設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規模의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事務</p> <p>2. 市·郡 및 自治區</p> <p>第1號에서 市·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 다만, 人口 50萬 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郡 및 自治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p>	<p><b>제10조</b>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나,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p> <p>1. 시·도</p> <p>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p> <p>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p> <p>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p> <p>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p> <p>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사무</p> <p>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p> <p>2. 시·군 및 자치구</p> <p>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u>겹치지</u>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u>겹치는</u>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11條</b> (國家事務의 처리제한) 地方自治團體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國家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9.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外交, 國防, 司法, 國稅등 國家의 存立에  필요한 事務</li> <li>2. 物價政策, 金融政策, 輸出入政策등 全國的으로 統一的  처리를  요하는 事務</li> <li>3. 農林·畜·水産物 및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出入등 全國的 規模의 事務</li> <li>4. 國家綜合經濟開發計劃, 國家河川, 國有林, 國土綜合開發計劃, 指定港灣, 高速國道·一般國道, 國立公園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li> <li>5. 勤勞基準, 測量單位등 全國的으로 基準의 統一 및 調整을  요하는 事務</li> <li>6. 郵便, 鐵道등 全國的 規模 또는 이와 비슷한 規模의 事務</li> <li>7.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檢査·試驗·研究, 航空管理, 氣象行政, 原子力開發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事務</li> </ol>	<p><b>제11조</b>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u>그러나</u>,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lt;개정 1999.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교, 국방, 사법, <u>국세</u>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li> <li>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li> <li>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li> <li>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li> <li>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li> <li>6. 우편, <u>철도</u>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li> <li>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li> </ol>
<p>第2章 住民</p>	<p>제2장 주민</p>
<p><b>第12條</b> (住民의 資格)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이 된다.</p>	<p><b>제12조</b>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u>구역 안에</u> 주소를 가진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p>
<p><b>第13條</b> (住民의 權利) ①住民은 法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利用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均등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國民인 住民은 法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p>	<p><b>제13조</b> (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u>법령의 규정에 따라</u>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u>법령의 규정에 따라</u>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選舉(이하 “地方選舉”라 한다)에 참여할 權利를 가진다.</p> <p><b>第13條의2</b> (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불일 수 있다. &lt;개정 2004.1.29&gt; ②住民投票의 대상·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3.16]</p> <p><b>第13條의3</b>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 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の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5.1.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li> <li>2.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の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li> <li>3.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li> </ol> <p>②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접수</p>	<p>(이하 “지방선거”라 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b>제13조의2</b> (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불일 수 있다.</p> <p>②주민투표의 대상·제안하는 사람·제안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b>제13조의3</b>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전체 주민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li> <li>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li> <li>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적어 넣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접수</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한 날부터 7일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住民 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p> <p>⑨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1999.8.31]</p>	<p>한 날부터 7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u>두어</u>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u>안에</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u>이유가 있다고</u>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u>바르게 고치고</u>, 이를 이의신청을 한 <u>사람과</u>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청구한 사람의 대표자에게 <u>알려야</u> 하며, 그 이의신청이 <u>이유가 없다고</u>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u>알려야</u> 한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같은 항의 규정에 <u>따라</u>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u>따른</u>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u>그렇지 않은</u>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u>청구한 사람</u>을 대표자에게 <u>알려야</u> 한다.</p> <p>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u>따라</u> 청구를 <u>받은</u> 날부터 60일 <u>안에</u> 조례의 제정 또는 <u>개정·폐지</u>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u>넘겨야</u> 하며, 그 결과를 청구한 사람의 대표자에게 <u>알려야</u> 한다.</p> <p>⑧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20세 이상의 전체 주민 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u>따라</u> 조사한 <u>작년</u>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p> <p>⑨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u>있어서</u>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13條의4</b>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5.1.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搜查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li> <li>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li> <li>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 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lt;신설 2005.1.27&gt;</p> <p>③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監査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監査請求된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監査結果를 請求人の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p>	<p><b>제13조의4</b>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u>그 밖의</u>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u>범위 안에서</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u>주민 수</u>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u>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u>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사항은 <u>감사청구사항이 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li> <li>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li> <li>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u>그러나</u>,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빠진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li> <li>4. <u>같은</u>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u>진행중이거나</u> 그 판결이 <u>끝난</u>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u>해당</u>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u>끝난</u> 날부터 2년을 넘으면 제기할 수 없다.</p> <p>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u>만</u> <u>쳐야</u>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에게 書面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監査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請求人의 代表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지하고 公表하여야 한다.</p> <p>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lt;신설 2005.1.27&gt;</p> <p>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lt;신설 2005.1.27&gt;</p> <p>⑥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監査結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措置結果를 地方議會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1.27&gt;</p> <p>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lt;신설 2005.1.27&gt;</p> <p>⑧20歲 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서면으로 <u>알리고</u>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u>그러나, 감사기간 안에</u> 감사를 <u>마치기 어려운 이유</u>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u>청구한 사람</u>의 대표자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리고</u> 公表하여야 한다.</p> <p>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u>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린다</u>는 사실을 청구인의 <u>대표자와 해당 기관</u>에게 알려야 한다.</p> <p>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u>처리하는 경우</u>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u>주어야</u> 한다.</p> <p>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規定에 <u>다른</u>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規定에 <u>다른</u> 조치요구내용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u>청구한 사람</u>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u>알리고</u>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p> <p>⑧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u>있어서</u>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⑨第13條의3第2項 내지 제6항의 規定은 20歲 이상의 住民의 監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監査”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본다. &lt;개정 2005.1.27&gt; [본조신설 1999.8.31]</p> <p><b>제13조의5</b>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급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li> <li>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⑨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u>있어서</u>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p> <p><b>제13조의5</b>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공급의 <u>사용</u>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u>해당</u>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u>매매·임차·도급</u> 기타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u>사항이나</u>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급의 부과·징수를 <u>개을리</u> 한 사항에 <u>있어서</u>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감사를</u> 청구한 사항과 <u>관련이 있는</u> <u>범을</u> 위반한 행위나 <u>범의</u> 집행을 <u>개을리</u> 한 사실에 대하여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u>해당</u>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u>맡기</u>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u>말함</u>.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u>하여</u>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u>받아들인</u>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u>늘어나는</u> 경우에는 <u>늘어나는</u> 기간을 <u>마치는</u> 날을 <u>말함</u>)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u>마치지</u> 아니한 경우</li> <li>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u>따른</u> 감사결과 또는 <u>같은</u> 조 제6항의 규정에 <u>따른</u> 조치요구에 <u>따르지 않는</u> 경우</li> <li>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li> <li>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li> <li>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li> <li>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 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li> </ol> <p>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li> </ol>	<p>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u>따르지 않는</u>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u>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해당</u>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li> <li>2. 행정처분인 <u>해당</u>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u>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u> 확인을 구하는 소송</li> <li>3. <u>해당</u> 법의 집행을 게을리 한 사실이 <u>법을 위반하는지의</u> 확인을 구하는 소송</li> <li>4.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u>해당</u>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u>청구하도록</u> 요구하는 소송. <u>그러나,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u>따라</u>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u>해당</u> 변상명령을 <u>하도록</u>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li> </ol> <p>③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u>해당</u>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u>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u> 기타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u>안에</u>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1호의 경우 : <u>해당</u> 60일이 <u>끝나게 되는</u>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u>늘어나는</u> 경우에는 <u>늘어나는</u> 기간이 <u>끝나게 된</u> 날을 말한다)</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2. 제1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p> <p>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p>⑥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受繼)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p> <p>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p> <p>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p>	<p>2. 제1항제2호의 경우 : <u>해당</u>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 <u>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u> 지정한 처리기간이 <u> 끝나게 되는 날</u></p> <p>4. 제1항제4호의 경우 : <u>해당</u>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u>계속 진행되고 있는 때</u>에는 다른 주민은 <u>같은</u> 사항에 대하여 <u>다른</u>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p>⑥<u>계속 진행되는</u>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u>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u></p> <p>⑦감사청구에 <u>연서한</u>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u>따른</u>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u>안에</u> 소송절차를 <u>이어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이어 받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해당</u> 소송절차는 <u>마치게 된다.</u></p> <p>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u>따라</u>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를 <u>이어받을 방법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쓰여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u>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p> <p>⑨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소송은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리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리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u>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p> <p>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 <p>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p> <p>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⑮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p>	<p>⑩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u>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도록</u>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u>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신청은 해당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u> 청구로 본다.</p> <p>⑫제11항의 규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u>안에</u>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u>일시압류, 일시처분을</u>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 <p>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u>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진행되는</u>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p> <p>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u>소송의</u>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u>포기를</u>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u>알려야</u> 하며, <u>알린 때부터 1월 안에</u>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u>알리는</u> 일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⑮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은 <u>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재산권이 아닌 권리를</u>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lt;16&gt;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lt;17&gt;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7]</p> <p><b>제13조의6</b>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5.1.27]</p>	<p>&lt;16&gt;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u>소송에서 이기는 (소송에서 일부 이기는 것을 포함)</u> 경우 <u>해당</u>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u>든 비용 기타 실제로 든 비용의</u>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u>해당</u>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u>주어</u>야 한다.</p> <p>&lt;17&gt;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소송에 관하여 <u>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u>은 행정소송법에 <u>따른다</u>.</p> <p><b>제13조의6</b>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 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u>따른</u>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u>해당</u>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u>안</u>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u>판결에 따라</u>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u>그러나,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u></p>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불청구를 받은 <u>사람이 같은 조항</u>의 기한 <u>안</u>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u>내지</u>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u>해당</u> 지방의회 의장이 <u>해당</u>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b>제13조의7</b> (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27]</p> <p><b>第14條</b> (住民의 義務)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條例와 規則</p> <p><b>第15條</b>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p> <p><b>第16條</b> (規則)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범위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p> <p><b>第17條</b> (條例와 規則의 立法限界) 市·郡 및 自治區의 條例나 規則은 市·道의 條例나 規則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p> <p><b>第18條</b> (地方自治團體의 新設, 格의 變更時의 條例·規則의 施行) 地方自治</p>	<p><b>제13조의7</b> (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u>따른</u>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u>해당</u>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u>안</u>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u>따라</u> 결정된 금액을 변상하도록 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의 <u>기한 안</u>에 변상금을 <u>내지</u>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u>강제로</u> 거둘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u>사람이</u> 이에 <u>따르지 않는</u>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u>그러나</u>, 행정심판법에 <u>따른</u>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p> <p><b>제14조</b>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u>나누어질</u> 의무를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조례와 규칙</p> <p><b>제15조</b>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u>범위 안에서</u>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u>그러나</u>, <u>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u></p> <p><b>제16조</b>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u>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b>제17조</b>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u>조례와 규칙은 시·도의 조례와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u></p> <p><b>제18조</b>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團體가 分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格이 變更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條例 또는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래 그 地域에 施行되던 條例 또는 規則을 계속 施行할 수 있다.</p> <p><b>第19條</b> (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등) ① 條例案이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때에는 議長은 議決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이를 移送하여야 한다.</p> <p>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20日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lt;改正 1994. 3.16.&gt;</p> <p>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移送받은 條例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期間내에 이유를 붙여 地方議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條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p> <p>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는 再議에 붙여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p> <p>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條例案은 條例로서  확정된다.</p> <p>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條例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條例가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條例가 地方自治團體의 長</p>	<p>단체가 <u>분리되거나 통합하여</u>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u>바뀐</u>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b>제19조</b>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u>안에</u>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u>보내야</u>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u>넘겨받은</u> 때에는 20일 안에 이를 <u>널리 알려야</u>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넘겨받은</u> 조례안에 대하여 <u>이의가</u>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 <u>안에</u>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u>돌려보내</u> 그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u>고쳐서</u> 다시 <u>의결하도록</u> 요구할 수 없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u>다시 의결하도록</u>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u>다시 의결에 붙여</u> 재적의원 <u>반수 이상의</u>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이전의 의결과</u>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u>기간 안에</u> 공포나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u>따라</u> 확정된 조례를 <u>즉시 널리 알려야</u> 한다. 제5항에 <u>따라</u>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u>따라</u>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에게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의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p> <p>⑦條例와 規則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p> <p>⑧條例와 規則의 公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第20條</b> (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①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徵收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全文改正 1994·3·16]</p> <p><b>第21條</b> (보고) 條例나 規則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경우 條例에 있어서는 地方議會에서 移送된 날로부터 5日 이내에, 規則에 있어서는 公布豫定 15日전에 市·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에게 그 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p>	<p>진 후 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p> <p>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이 <u>지난 후</u>에 효력을 발생한다.</p> <p>⑧조례와 규칙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0조</b>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u>조례를 위반한 행위에</u>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 <u>안의</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u>사람은</u>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u>안에</u>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즉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u>알려야</u> 하며, <u>그</u> 사실을 <u>통보</u>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u>따라</u>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u>안에</u>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u>따라</u> 이를 <u>강제로</u> 거둔다.</p> <p><b>제21조</b>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u>보낸</u> 날로부터 5일 <u>안에</u>,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u>전문</u>을 <u>붙여</u>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行政自治部長官은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8.31, 2005.1.27&gt;</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選 舉</p> <p><b>第22條</b> 削 除 &lt;1994·3·16&gt;  <b>第23條</b> 削 除 &lt;1994·3·16&gt;  <b>第24條</b> 削 除 &lt;1994·3·16&gt;  <b>第25條</b> (地方選舉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選舉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地方議會</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節 組 織</p> <p><b>第26條</b> (議會의 設置)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b>第26條의2</b> (地方議會議員의 選舉)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本條新設 1994·3·16]  <b>第27條</b> 削 除 &lt;1989·12·30&gt;  <b>第28條</b> 削 除 &lt;1989·12·30&gt;  <b>第29條</b> 削 除 &lt;1989·12·30&gt;  <b>第30條</b> 削 除 &lt;1989·12·30&gt;</p>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節 地方議會議員</p> <p><b>第31條</b> (議員의 任期) ①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削 除 &lt;1994·12·20&gt;          ③削 除 &lt;1994·12·20&gt;          ④削 除 &lt;1994·12·20&gt;  <b>第32條</b> (議員의 議政活動費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號의 費用을 지급한다.&lt;개정1999.8.31,2003.7.18&gt;</p>	<p>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알려야</u>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선 거</p> <p><b>제22조</b> 삭 제 &lt;1994·3·16&gt;  <b>제23조</b> 삭 제 &lt;1994·3·16&gt;  <b>제24조</b> 삭 제 &lt;1994·3·16&gt;  <b>제25조</b>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지방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조 직</p> <p><b>제26조</b>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b>제26조의2</b>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p> <p><b>제27조</b> 삭 제  <b>제28조</b> 삭 제  <b>제29조</b> 삭 제  <b>제30조</b> 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지방의회의원</p> <p><b>제31조</b>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삭 제 &lt;1994·12·20&gt;          ③삭 제 &lt;1994·12·20&gt;          ④삭 제 &lt;1994·12·20&gt;</p> <p><b>제32조</b>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1.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p> <p>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p> <p>3. 會期중의 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會期手當</p> <p>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4·3·16]</p> <p><b>第32條의2</b> (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4·3·16]</p> <p><b>第33條</b> (兼職등 금지) ①地方議會議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lt;改正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國會議員, 다른 地方議會의 議員</li> <li>2.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li> <li>3.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li> </ol>	<p>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드는 비용을 매꾸기 위하여 매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p> <p>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p> <p>3. 회의기간 동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p> <p>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32조의2</b>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의기간 동안의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열린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33조</b> (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책을 함께 수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li> <li>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li> <li>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p> <p>5.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p> <p>6.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p> <p>7.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p> <p>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産의 讓受人 또는 管理人이 될 수 없다.</p> <p>[90헌마28, 1991.3.11(1991.5.23 法 4367)]</p> <p><b>第34條</b> (議員의 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 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34條의2</b> (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lt;개정 1999.8.31&gt;)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lt;改正 1994·3·16&gt;</p> <p>②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p>	<p>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의 <u>임원·직원</u></p> <p>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u>임원·직원</u></p> <p>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u>정식 임원·직원</u>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p> <p>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p> <p>②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u>영업상의 이익</u>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을 <u>물려받는 사람</u> 또는 <u>관리하는 사람</u>이 될 수 없다.</p> <p><b>제34조</b>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지방의회의원은 <u>청렴의 의무</u>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u>지켜야</u> 한다.</p> <p>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u>남용</u>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34조의2</b>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보) ①체포되거나 <u>구금된</u>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u>관계 수사기관</u>의 장은 즉시 <u>의장</u>에게 영장의 사본을 <u>붙여 그 사실을 알려야</u> 한다.</p> <p>②형사사건으로 검사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u>소송</u>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각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lt;신설 1999. 8.31&gt; [本條新設 1991·12·31]</p> <p>第3節 權限</p> <p><b>第35條</b>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lt;改正 1994·3·16, 1999.8.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條例의 制定 및 改廢</li> <li>2. 豫算의 審議·확정</li> <li>3. 決算의 승인</li> <li>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li> <li>5. 基金의 設置·運用</li> <li>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li> <li>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li> <li>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li> <li>9. 請願의 受理와 처리</li> <li>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li> <li>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li> </ol> <p>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사항외에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議會에서 議決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b>第35條의2</b> (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와 직접 관련된 書類의 제출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을 경유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1·12·31]</p> <p><b>第36條</b>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①地方議會는 매년 1회 당해 地方自治團體</p>	<p>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u>즉시 해당 의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u> 한다.</p> <p>제3절 권한</p> <p><b>제35조</b>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의 <u>제정·개정 및 폐지</u></li> <li>2. 예산의 <u>심의·확정</u></li> <li>3. 결산의 승인</li> <li>4. 법령에 <u>규정되지 않은</u>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li> <li>5. 기금의 설치·운용</li> <li>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li> <li>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li> <li>8. 법령과 조례에서 <u>규정하지 않는</u>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u>포기</u></li> <li>9. <u>청원의 수리와 처리</u></li> <li>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11. 기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u>이외에</u>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b>제35조의2</b>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u>서류제출을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요구할 수 있다</u>.</p> <p>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u>거쳐야</u> 한다.</p> <p><b>제36조</b>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u>해당</u> 지방자치단체</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의 事務에 대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調査를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在籍議員 3分の 1 이상의 連署가 있어야 한다.</p> <p>③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の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 事務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 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僞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으며, 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證人이 正當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p> <p>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p> <p>⑦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政監査및 調査에 관한 法律에  準하여 大統領</p>	<p>의 事務에 대하여 市·도에 있어서는 10일, 市·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지방의회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서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lt;개정 1994·12·20&gt;</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p> <p>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습으로 정하고, 第4項 및 第5項의 宣誓·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4·3·16]</p> <p><b>第37條</b> (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 ③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p> <p><b>第37條의2</b> (議會規則) 地方議會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7&gt; [본조신설 1994.3.16]</p> <p style="text-align: center;">第4節 召集과 會期</p> <p><b>第38條</b>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회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p> <p><b>第39條</b> (臨時會) ①總選舉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 이내 召集한다.&lt;改正 1994·3·16&gt;</p>	<p>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宣誓·證言·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u>국회에서</u>의 證言·감정등에 관한 <u>법률</u>에 따라 大統領령으로 정한다.</p> <p><b>제37조</b>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長 또는 關係 公務員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말하고 질문에 <u>답변</u>할 수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長 또는 關係 公務員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長은 <u>關係 公務員</u>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u>關係 公務員</u>은 조례로 정한다.</p> <p><b>제37조의2</b>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u>정하고 있지</u> 않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소집과 회기</p> <p><b>제38조</b> (정기회의)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u>정기회의</u>를 개최한다. ②<u>정기회의가</u> 열리는 날 기타 <u>정기회의</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u>따라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39조</b> (임시회) ①총선거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長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5일 안에 소집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の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p> <p>③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40條</b> (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중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41條</b>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p> <p>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p> <p>②삭 제 &lt;2005.1.27&gt;</p> <p>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gt;</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節 議長과 副議長</p> <p><b>第42條</b> (議長·副議長の 選舉와 任期)</p> <p>①地方議會는 議員중에서 市·道の 경우 議長 1인과 副議長 2인을,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各 1인을 無記名投票로 選舉하여야 한다.</p> <p>②議長과 副議長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p> <p><b>第43條</b> (議長の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會의 事務를 監督한다.</p> <p><b>第44條</b> (議長の 委員會 출석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p>	<p>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u>안에</u> <u>임시회의</u>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u>임시회의</u>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u>7일 전에</u>,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u>그러나</u>, 긴급을 요할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40조</b> (<u>회의할</u> 案건의 公告)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u>다들</u> 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u>알려야</u> 한다. <u>그러나</u>, <u>회의동안</u>  긴급한 案건을 <u>회의에</u> 붙일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41조</b>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p> <p>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p> <p>②삭 제</p> <p>③<u>일년동안</u> 전체의 회의일수는 <u>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u>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u>넘을 수 없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의장과 부의장</p> <p><b>제42조</b>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p> <p>①지방의회는 의원 <u>가운데</u>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p> <p>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b>제43조</b>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p> <p><b>제44조</b>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45條</b>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p> <p><b>第46條</b> (臨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p> <p><b>第47條</b> (補闕選舉)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한다. ②補闕選舉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p> <p><b>第48條</b> (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第42條第1項·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를 실시하는 경우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중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b>第49條</b> (議長不信任의 議決)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議決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 ②第1項의 不信任議決은 在籍議員 4분의 1 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한다.&lt;改正 1994·3·16&gt; ③第2項의 不信任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lt;改正 1994·3·16&gt;</p> <p>第6節 委員會</p> <p><b>第50條</b> (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b>제45조</b>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회의의 부의장은 의장이 <u>입원하거나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u>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b>제46조</b> (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입원·출장으로 인하여 <u>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신 행하게 한다.</p> <p><b>제47조</b> (임기중 후임자 선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u>사망한 때에는</u> 임기 중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한다. ②<u>임기중 후임자선거에 따라</u>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이전 의장 또는 부의장의 <u>남은 임기로</u> 한다.</p> <p><b>제48조</b>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u>사람이</u>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 가운데 <u>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u>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p> <p><b>제49조</b> (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u>신임하지 않음을</u>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u>신임하지 않음</u>의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u>제안과</u> 재적의원 <u>반수 이상</u>의 찬성으로 행한다.</p> <p>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lt;개정 1994·3·16&gt;</p> <p>제6절 위원회</p> <p><b>제50조</b>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u>따라</u>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査·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特정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査·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1·12·31&gt;</p> <p>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lt;改正 1991·12·31&gt;</p> <p><b>第51條</b>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特정한 案件을 審査한다.</p> <p><b>第52條</b>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委員會에서 當해 地方會議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p> <p><b>第53條</b>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中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分の 1 이상의 要求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の 1 이상의 要求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求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lt;改正 1991·12·31&gt;</p> <p><b>第54條</b>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7節 會議</p> <p><b>第55條</b> (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の 1 이상의 出席으로 開議한다. ②會議중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p>	<p>②위원회는 <u>위원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u>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p> <p><b>제51조</b>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u>그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u></p> <p><b>제52조</b>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 <u>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u>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방청하는 사람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u></p> <p><b>제53조</b> (위원회의 시작)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u>회의를 시작한다.</u> 그러나, 회의가 끝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u>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u></p> <p><b>제54조</b>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u>이 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회의</p> <p><b>제55조</b>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한다.</u>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56條</b> (議決定足數) ①議事は 이 법에 특별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p> <p><b>第57條</b>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은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  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第58條</b> (議案의 發議) ①地方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분의 1  이상  또는 議員 10人  이상의 連署로 發議한다.&lt;改正 1989·12·30&gt;</p> <p>②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lt;신설 1999.8.31&gt;</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議案은  그 案을  갖추어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b>第59條</b> (會期繼續의 原則) 地方議會에  제출된 議案은 會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議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60條</b> (一事不再議의 原則) 地方議會에서 否決된 議案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할  수  없다.</p> <p><b>第61條</b> (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할  수  없다.  다만,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  중의 期間을  제외한 7日  이내에 議長  또는  在籍議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p>	<p><b>제56조</b>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재적의원 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반수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한다.</p> <p>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u>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때에는</u>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b>제57조</b> (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u>그러나, 의원 3인 이상의 제안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u>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58조</b>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p> <p>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lt;신설 1999.8.31&gt;</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59조</b>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u>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b>제60조</b>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u>의결되지 못한</u>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p> <p><b>제61조</b>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불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u>불일 수 없다.</u>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 但書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p> <p><b>第62條</b> (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議員은 本人·配偶者·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와 직접利害關係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는 그 議事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議會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議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lt;개정 1999.8.31&gt;</p> <p><b>第63條</b> (會議規則) 地方議會는 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p> <p><b>第64條</b> (會議錄) ①地方議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會議의 進行內容 및 결과와 出席議員의 姓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會議錄에는 議長과 議會에서 選出한 議員 2인 이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會議錄의 寫本을 첨부하여 會議의 결과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秘密을 요한다고 議長이 인정하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한 사항은 公開하지 아니한다.</p> <p>第8節 請願</p> <p><b>第65條</b> (請願書의 제출) ①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p> <p><b>第66條</b> (請願의 不受理) 裁判에 간섭하거나 法令에 違背되는 내용의 請願은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다.</p>	<p>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p> <p><b>제62조</b>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u>의견을 진술</u>할 수 있다.</p> <p><b>제63조</b>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b>제64조</b> (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려야</u>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나, 비밀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8절 청원</p> <p><b>제65조</b>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u>청원하는 사람의 성명</u> (법인인 경우에는 그 <u>이름</u>과 대표자의 <u>이름</u>) 및 주소를 <u>적고</u>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b>제66조</b>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u>수리</u>하지 아니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67條</b> (請願의 審査·處理) ①地方議會의 議長은 請願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p> <p>②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취지를 說明하여야 한다.</p> <p>③委員會가 請願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處理結果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b>第68條</b> (請願의 移送과 처리보고) ①地方議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67조</b> (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넘겨 심사를 하게 한다.</p> <p>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한 뜻을 설명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불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b>제68조</b>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9節 議員의 辭職·退職과 資格審査</p>	<p>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p>
<p><b>第69條</b> (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議決로 소속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b>제69조</b>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b>第70條</b> (議員의 退職) 地方議會의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li> <li>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li> <li>3. 懲戒에 의하여 除名된 때</li> </ol>	<p><b>제70조</b>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원이 같이 수행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li> <li>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꾸거나 설치·폐지·분리·통합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때를 포함)</li> <li>3.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li> </ol>
<p><b>第71條</b> (議員의 資格審査)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在籍議員 4분의1</p>	<p><b>제71조</b> (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1</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이상의 連署로 議長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被審議員은 자기의 資格審査에 관한 會議에 出席하여 辨明은 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b>第72條</b> (資格喪失議決) ①第71條第1項의 被審議員에 대한 資格喪失議決은 在籍 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被審議員은 第1項에 의하여 資格喪失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職을 喪失하지 아니한다.</p> <p><b>第73條</b> (闕員の 통지) 地方議會의 議員이 闕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管轄選舉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p> <p>第10節 秩序</p> <p><b>第74條</b> (會議의 질서유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행위를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그 議員에 대하여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을  금지시키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會議을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p> <p><b>第75條</b> (侮辱등 發言의 금지) ①地方議會의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他人을 侮辱하거나 他人의 私生活에</p>	<p>이상의 <u>연서로</u>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u>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원</u>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b>제72조</b> (자격상실의결) ①제71조제1항의 <u>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원</u>에 대한 <u>자격상실의결</u>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u>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원</u>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잃지 않는다.</p> <p><b>제73조</b> (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u>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u>이 생긴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제10절 질서</p> <p><b>제74조</b> (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u>위반되는 발언</u>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u>그 날의 회의</u>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u>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u>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b>제75조</b> (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u>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u></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대한發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侮辱을 당한 議員은 侮辱을 加한 議員에 대하여 地方議會에 그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p> <p><b>第76條</b> (發言妨害등의 금지) 地方議會議員은 會議중에 暴力을 행사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으며,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77條</b> (傍聽人에 대한 團束) ①傍聽人은 議案에 대하여 可否를 表明하거나 騷亂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p> <p>③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p> <p>④傍聽人에 대한 團束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p> <p>第11節 懲戒</p> <p><b>第78條</b> (懲戒의 사유) 地方議會는 議員이 이 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p> <p><b>第79條</b> (懲戒의 요구) ①地方議會議長은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對象 議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p> <p>②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요구할 때에는 懲戒事由를 기재한 요구서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인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本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76조</b> (발언방해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77조</b> (방청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 ①방청하는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하는 사람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넘길 수 있다.</p> <p>③방청하는 곳이 소란스러울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p> <p>④방청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절 징계</p> <p><b>제78조</b>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p> <p><b>제79조</b> (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로 넘긴다.</p> <p>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第2項의 懲戒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소관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회부한다.</p> <p><b>第80條</b> (懲戒의 종류 및 議決) ①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li> <li>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li> <li>3. 30日 이내의 출석정지</li> <li>4. 除名</li> </ol> <p>②除名에는 在籍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p> <p><b>第81條</b> (懲戒에 관한 會議規則) 懲戒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p> <p>第12節 事務機構와 職員</p> <p><b>第82條</b> (事務處등의 設置) ①市·道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處를 둘 수 있으며, 事務處에는 事務處長과 職員을 둔다.&lt;改正 1991·12·31&gt;</p> <p>②市·郡 및 自治區議會에는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둘 수 있으며 事務局·事務課에는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과 職員을 둘 수 있다.&lt;改正 1991·12·31&gt;</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및 職員(이하 이 節에서 “事務職員”이라 한다)은 地方公務員으로 補한다.&lt;改正 1991·12·31&gt;</p> <p><b>第83條</b> (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의 定數는 條例로 정한다.</p> <p>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lt;改正 1994·3·16&gt;</p> <p><b>第84條</b> (事務職員의 職務와 身分保障 등) ①事務處長·事務局長 또는 事務</p>	<p>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u>본회의</u>로 넘긴다.</p> <p><b>제80조</b> (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li> <li>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li> <li>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li> <li>4. 제명</li> </ol> <p>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b>제81조</b>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p> <p><b>제82조</b> (사무처등의 설치) ①시·도의 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을 <u>임명</u>한다.</p> <p><b>제83조</b>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p> <p><b>제84조</b>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課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議會의 事務를 처리한다.&lt;改正 1991·12·31&gt;</p> <p>②事務職員의 任用·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適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執行機關</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地方自治團體의 長</p> <p>第1款 地位</p> <p><b>第85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 特別市에 特別市長, 廣域市에 廣域市長, 道에 道知事를 두고, 市에 市長, 郡에 郡守, 自治區에 區廳長을 둔다.&lt;改正 1994·12·20&gt;</p> <p><b>第86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lt;改正 1989·12·30, 1994·3·16&gt;</p> <p>②削 除 &lt;1994·3·16&gt;</p> <p><b>第87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계속 在任은 3期에  한한다.&lt;改正 1994·12·20&gt;</p> <p>②削 除 &lt;1994·12·20&gt;</p> <p><b>第88條</b> (兼任등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임할 수  없다.&lt;改正 1994·3·16, 1994·12·20, 1999.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大統領, 國會議員,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地方議會議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li> <li>2.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li> <li>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li> </ol>	<p>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집행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p> <p>제1관 지 위</p> <p><b>제85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p> <p><b>제86조</b>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p> <p>②삭 제</p> <p><b>제87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p> <p>②삭 제</p> <p><b>제88조</b> (겸직 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u>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u>,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li> <li>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li> <li>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p> <p>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醫療保險組合·葉煙草生産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任·職員</p> <p>6. 敎員</p> <p>7.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任·職員</p> <p>8. 기타 다른 法律이 兼임할 수 없도록 定하는 職</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在任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關係있는 營利事業에  종사할 수 없다.</p> <p><b>第89條</b>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에 따라 새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舉될 때까지 市·道知事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が 각각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同格의 地方自治團體를 統·廢合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lt;개정 1999.8.31&gt; [全文改正 1994·12·20]</p> <p><b>第90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辭任)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辭任日을 기재한 書面(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辭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에 辭任된다. 다만, 辭</p>	<p>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의 임원·직원</p> <p>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의 임원·직원</p> <p>6. 교원</p> <p>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직원</p> <p>8. 기타 다른 법률이 둘 이상의 직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b>제89조</b>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리·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리·통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신 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2 이상의 같은 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경우에는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운데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신 행할 자를 지정한다.</p> <p><b>제90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그만두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어 넣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함)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하는 날에 사임된다. 그러나,</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任通知書에 기재된 辭任日까지 地方議會的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議會的 議長에게 辭任의 통지가 된 날에 辭任된다.&lt;신설 1999.8.31&gt;</p> <p><b>第90條의2</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lt;개정 1999.8.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li> <li>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分合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으로 住民登錄을 移轉한 때를 포함한다)</li> <li>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li> </ol> <p>[本條新設 1994·3·16]</p> <p><b>第91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令狀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市·郡 및 自治區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 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刑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즉시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市·郡 및 自治區가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거쳐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8.31]</p>	<p>사임통지서에 기재된 <u>사임하는 날까지</u>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u>사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u>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u>사임을 알린 날에</u> 사임된다.</p> <p><b>제90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u>각호에</u>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함께 할 수 없는 직에</u> 취임한 때</li> <li>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u>폐지·분리통합</u>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u>구역 밖으로</u>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li> <li>3.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u>잃게 된 때</u></li> </ol> <p><b>제91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알림)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의 장은 <u>즉시</u> 영장의 사본을 붙여 <u>해당</u>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u>알려야</u>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u>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u>에는 각급 법원장은 <u>즉시</u> <u>해당</u>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u>알려야</u>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第2款 權限</p> <p><b>第92條</b> (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p> <p><b>第93條</b> (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行한다.</p> <p><b>第94條</b> (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p> <p><b>第95條</b>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 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業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p> <p>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t;改正 1994·12·20&gt;</p>	<p>제2관 권한</p> <p><b>제92조</b>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u>통합</u>하고 관리한다.</p> <p><b>제93조</b> (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맡겨서 행한다.</p> <p><b>제94조</b>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p> <p><b>제95조</b> (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에 맡기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96條</b> (職員에 대한 任免權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教育訓練·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b>第97條</b> (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p> <p>第3款 地方議會와의 관계</p> <p><b>第98條</b> (地方議會的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的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를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lt;新設 1994·3·16&gt;</p> <p><b>第99條</b> (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的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②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p>	<p><b>제96조</b> (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b>제97조</b> (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그가 관리하던 모든 사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야 한다.</p> <p>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p> <p><b>제98조</b>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권한을 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의결한 결과 재적의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99조</b>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②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깎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p> <p>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p> <p>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00條</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lt;改正 1994·3·16&gt;</p> <p>③地方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lt;新設 1994·3·16&gt;</p> <p>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lt;新設 1994·3·16&gt;</p>	<p>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u>의무적으로</u> <u>저야 할 비용</u></p> <p>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00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u>따른</u> 의결정족수에 <u>달하지 않게</u> 된 때를 말함)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u>가운데</u>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u>즉시</u>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u>즉시</u> 공고하여야 한다.</p>
<p>第2節 補助機關</p>	<p>제2절 보조기관</p>
<p><b>第101條</b> (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廣域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며, 그 定數는 다음 各號와 같다.&lt;改正 1994.12.20, 2000.1.12&gt;</p> <p>1. 特別市の 副市長의 定數: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2. 廣域市の 副市長 및 道の 副知事の 定數:2人(人口 800萬 이상의 廣域市</p>	<p><b>제101조</b>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3인을 <u>넘지</u>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및 道는 3人)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3. 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및 自治區의 副區廳長의 定數:1人으로 한다.</p> <p>②特別市와 廣域市の 副市長, 道の 副知事は 政務職 또는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와 廣域市の 副市長, 道の 副知事を 2人 또는 3人 두는 경우에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lt;改正 1994.12.20, 2000.1.12&gt;</p> <p>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は 市·道知事の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 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lt;改正 1994·3·16, 1999.8.31&gt;</p> <p>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當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lt;新設 1994·3·16&gt;</p> <p>⑤市·道の 副市長과 副知事, 市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補佐하여 事務를 總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p> <p>⑥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の 副市長과 副知事を 2人 또는 3人을 두는 경우에 그 事務分掌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副市長·副知事を 3人 두는 市·도에 있어서는 그중 1人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의 事務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lt;신설 2000.1.12&gt;</p>	<p>및 도는 3인)을 <u>넘지</u> 아니하는 <u>별위 안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1인으로 한다.</p> <p>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u>정무직</u>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u>담당하게</u> 하며, 그 <u>직책과 급수</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그러나</u>,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u>따라</u>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u>담당하게 하되</u>, 그 자격기준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u>임명하는</u>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u>사람에게 법적으로 흠이 없는 한 30일 안에</u> 그 임명절차를 <u>마</u>쳐야 한다.</p> <p>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u>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되</u>, 그 <u>직책과 급수</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u>해당</u>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u>도와주며</u> 모든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u>따라</u>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u>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u>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b>第101條의2</b>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代行使)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lt;개정 2002.3.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궐위된 경우</li> <li>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li> <li>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li> </ol>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에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候補者登錄을 한 날부터 選舉日까지 副團體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을 대행한다.</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副團體長이 그 職務를 대리한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副知事 또는 副市長이 2人 이상인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에 의하여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p> <p>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할 副團體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에 정하여진 職制順에 의한 公務員이 그 權限을 대행하거나 職務를 대리한다.</p> <p>[본조신설 1999.8.31]</p> <p><b>第102條</b> (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p>	<p><b>제101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u>각호에</u>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함)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망하거나 퇴직하여 자리가 빈 경우</u></li> <li>2. <u>소송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u></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li> <li>4. 의료법에 <u>따른</u>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u>직책을</u> 가지고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u>대신</u> 행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u>대신</u> 행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인 이상인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에 따라 그 권한을 <u>대신</u>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u>직제 순에 따라</u> 공무원이 그 권한을 <u>대신</u>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b>제102조</b>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u>나누어</u>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1994.3.16, 1994.12.20, 2005.3.24&gt;</p> <p>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第103條</b>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 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lt;改正 1994·3·16&gt;</p> <p>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 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 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lt;改正 1995·1·5&gt;</p> <p>第3節 소속行政機關</p> <p><b>第104條</b> (直屬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消防機關·教育訓練機關·保健診療機關·試驗研究機關 및 中小企業</p>	<p>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103조</b>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p> <p>제3절 소속행정기관</p> <p><b>제104조</b> (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指導機關등을 直屬機關으로 設置할 수 있다.&lt;改正 1994·12·20&gt;                  ②削除 &lt;1994·12·20&gt;</p> <p><b>第105條</b>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b>第106條</b> (出張所) 地方自治團體는 遠隔地 住民의 편의와 特定地域의 開發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出張所를 設置할 수 있다.</p> <p><b>第107條</b> (合議制行政機關)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일부를 獨立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法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議制行政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p> <p>第4節 下部行政機關</p> <p><b>第108條</b> (下部行政機關의 長)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 邑에 邑長, 面に 面長, 洞에 洞長을 둔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p> <p><b>第109條</b>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 ①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p>	<p><u>도기관</u> 등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p> <p>②삭제</p> <p><b>제105조</b>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u>따라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하는 곳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u>정원범위 안에서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u>사업하는</u> 곳을 둘 수 있다.</p> <p><b>제106조</b>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u>멀리 떨어져 있는</u>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u>따라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p> <p><b>제107조</b> (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u>그가 관리하는 사무의</u>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u>따라</u>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절 하부행정기관</p> <p><b>제108조</b>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u>규정에 따른</u> 행정동을 말한다.</p> <p><b>제109조</b>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u>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u> <u>담당하게 하되</u> 시장이 임명한다.</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② 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lt;改正 1994·3·16&gt;</p> <p>③ 削除 &lt;1994·3·16&gt;</p> <p><b>第110條</b> (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 洞長은 市長(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의 指揮·監督을 받아 소관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lt;改正 1994·3·16&gt;</p> <p><b>第111條</b> (下部行政機構)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에 소관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그 設置에 관하여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節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p> <p><b>第112條</b>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 ①地方自治團體의 教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機關을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財務</p> <p style="text-align: center;">第1節 財政運營의 基本原則</p> <p><b>第113條</b> (健全財政의 運營)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健全하게 運營하여야 한다.</p>	<p>② 읍장·면장·동장은 <u>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담당하게 하되</u>,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③ 삭 제</p> <p><b>제110조</b>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u>그에 속하는</u>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b>제111조</b> (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u>따른</u> 행정동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p> <p><b>제112조</b>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u>나누어 관리하게</u> 하기 위하여 <u>따로</u>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p> <p><b>제113조</b> (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u>수입과 지출의 균형</u>의 원칙에 따라 健全하게 운영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國家는 地方財政의 自主성과 健全한  운영을 助長하여야 하며 國家의  부담을 地方自治團體에 轉嫁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114條</b> (國家施策의 具現) ①地方自治團體는 國家施策의 具現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施策具現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에  대한  國庫補助率과  地方費負擔率은 法令으로  정한다.</p> <p><b>第115條</b> (地方債務 및 債權管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非常災害  復舊등의  需要가  있는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債發行計劃을  수립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歲入·歲出豫算외의   부담이  될  債務負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保證債務負擔行爲를  할  수  있다.</p> <p>④地方自治團體는  條例 또는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債務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p> <p>⑤地方自治團體는  法令 또는  條例의  規定에  의하거나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지  아니하고는  債權에  관하여  債務를  免除하거나  그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節 豫算 및 決算</p> <p><b>第116條</b>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月  31일에  종료한다.</p>	<p>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健全한  운영을 <u>도와야</u>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u>떠 넘겨서는</u>  아니된다.</p> <p><b>제114조</b> (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u>국고보조율</u>과 지방비 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p> <p><b>제115조</b>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u>비상재해복구</u>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u>범위 안에서</u>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u>따라</u>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u>따르지</u>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u>늦출</u> 수 없다.</p> <p>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u>바꿀</u>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예산 및 결산</p> <p><b>제116조</b>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u>마친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117條</b>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b>第118條</b>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lt;改正 1991·12·31, 1994·3·16&gt;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lt;改正 1991·12·31&gt;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b>第119條</b> (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總額과 年度別 金額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b>第120條</b> (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相當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第121條</b> (追加更正豫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b>제117조</b>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둘 수 있다.</p> <p><b>제118조</b>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시작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시작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시작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둘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u>고치고자</u>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b>제119조</b>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b>제120조</b> (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相當하기 위하여 歲入·歲出예산에 예비비를 <u>포함시켜야</u>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121조</b> (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u>바꿀</u>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lt;新設 1994·3·16&gt;</p> <p><b>第122條</b> (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地方議會에서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法令이나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li> <li>2. 法令 또는 條例上 支出義務의 이행</li> <li>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li> </ol> <p><b>第123條</b>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制定등) 地方議會가 새로운 財政負擔을 隨伴하는 條例나 案件을 議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第124條</b> (豫算의 移送·告示등) ①地方議會的 議長은 豫算案이 議決된 때에는 3日 이내에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의 移送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99.8.31&gt;</p> <p><b>第125條</b> (決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 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査委員의 檢査意見書を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的 승인을 얻어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122조</b>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u>비용은 작년도예산에</u> 준하여 쓸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li> <li>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li> <li>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li> </ol> <p><b>제123조</b>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u>지우는</u>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124조</b> (예산의 이송·고시등) ①지방议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u>안에</u> 이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려야</u>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u>즉시</u>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u>알려야</u> 한다. <u>그러나</u>, 제99조의 규정에 <u>따라</u>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b>제125조</b>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출납마감 후 80일 안에</u>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u>붙여</u> 다음 <u>해</u> 지방议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8.31&gt;</p> <p>③第1項의 檢査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3節 收入 및 支出</p> <p><b>第126條</b> (地方稅)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b>第127條</b>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p> <p><b>第128條</b>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第129條</b> (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産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p> <p><b>第130條</b>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u>알려야</u> 한다.</p> <p>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절 수입 및 지출</p> <p><b>제126조</b>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u>강제로 거둘 수 있다.</u></p> <p><b>제127조</b>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u>강제로 거둘 수 있다.</u></p> <p><b>제128조</b> (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u>강제로 거둘 수 있다.</u>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u>강제로 거둘 수 있다.</u> ③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수수료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u>그러나</u>,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129조</b> (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u>사람으로부터</u> 그 이익의 <u>범위 안에서</u> 분담금을 <u>강제로 거둘 수 있다.</u></p> <p><b>제130조</b>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 배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定할 수 있다.</p> <p>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b>第131條</b>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p> <p>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p> <p>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p> <p>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이를 決定·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⑤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行政訴訟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90日 이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lt;신설 1999.8.31&gt;</p> <p>⑦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73條 및 第75條 내지 第7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lt;개정 1999.8.31&gt;</p> <p>[97헌가15, 1998.6.25(1988.4.6. 法 4004)]</p>	<p>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수수료 또는 分擔金を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 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31조</b>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제로 거두어야 한다.</p> <p>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p> <p>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 안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u>지난날</u>부터 90일 이내에 <u>소송</u>을 제기할 수 있다.</p> <p>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u>절차</u>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현행 조문	순화 조문안
<p><b>第132條</b>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p> <p>第4節 財産 및 公共施設</p> <p><b>第133條</b>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lt;改正 1994·3·16&gt;</p> <p>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定한다.&lt;改正 1994·3·16&gt;</p> <p>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의 모든 財産의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p> <p><b>第134條</b>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b>第135條</b>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定한다.</p> <p>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p> <p>第5節 補則</p> <p><b>第136條</b>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定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p>	<p><b>제132조</b>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p> <p><b>제133조</b>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가지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이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p> <p><b>제134조</b>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b>제135조</b>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둘 수 있다.</p> <p>제5절 보칙</p> <p><b>제136조</b>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u>않는</u>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137條</b>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p> <p><b>第138條</b>  削除 &lt;1994·3·16&gt;</p> <p>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관계</p> <p>第1節  地方自治團體間의  協力和  紛爭  調整</p> <p><b>第139條</b>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協力)  地方自治團體는  다른  地方自治團體로  부터  事務의  共同處理에   관한   요청이  나  事務處理에   관한  協議·調整·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p> <p><b>第140條</b>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爭  調整) 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상호간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紛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紛爭이  公益을  현저히  害하여  조속한  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이  없는  때에도  職權으로  이를  調整할  수  있다.&lt;개정  1999.8.31&gt;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紛爭을  調整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t;改正  1994·3·16,  1999.8.31&gt; ③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p>	<p><b>제137조</b>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b>제138조</b>  삭제</p> <p>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p> <p>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p> <p><b>제139조</b>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140조</b>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하 “분쟁”이라 함)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lt;신설 1999.8.31&gt;</p> <p>④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調整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書面으로 지체없이  관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이행하여야 한다.&lt;新設 1994·3·16, 1999.8.31&gt;</p> <p>⑤第4項의 調整決定事項중 豫算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는 이에  필요한 豫算을 우선적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年次的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年度別 推進計劃을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新設 1994·3·16, 1999.8.31&gt;</p> <p>⑥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調整決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 또는 役務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그 施設費 또는 運營費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lt;新設 1994·3·16, 1999.8.31&gt;</p> <p>⑦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決定事項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第15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lt;新設 1994·3·16, 1999.8.31&gt;</p> <p><b>第140條의2</b>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등의 設置 및 구성등) ①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整과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行政自治部에 地方自治團體中央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p>	<p>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p>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즉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공무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⑦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p><b>제140조의2</b>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등) ①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와 市·道에 地方自治團體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 “地方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p>②中央紛爭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紛爭을 審議·議決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市·道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li>2.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li>3.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li>4. 市·道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li>5. 市·道를  달리하는 市·郡 및 自治區와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li>6. 市·道를  달리하는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li> </ol> <p>③地方紛爭調整委員會는 第2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그 長간의 紛爭을 審議·議決한다.</p> <p>④中央紛爭調整委員會 및 地方紛爭調整委員會(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는 각각 委員長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p> <p>⑤中央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중 5인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 行政自治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하고, 大統領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 소속公務員은 當연직委員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大學에서 副教授 이상으로 3年 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li> <li>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6年 이상 在職중이거나 在職한 者</li> <li>3. 기타 地方自治事務에 관한 學識과  경험이 풍부한 者</li> </ol> <p>⑥地方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 및 委員중 5인은 第5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市·道知事가 任命 또는 위촉하고, 條例로  정하는 當해 地方自治團體 소속公務員은 當연직委員이 된다.</p>	<p>분쟁조정위원회”라 함)와 시·도에 <u>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u>(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p> <p>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li>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li>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li>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li>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li>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li> </ol> <p>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u>장 사이의</u>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p>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u>가운데</u> 5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u>가운데</u>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u>당연직 위원</u>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li> <li>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사람</li> <li>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u>가운데</u> 5인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u>사람</u>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u>당연직 위원</u>이 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⑦公務員이 아닌 委員長 및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8.31]</p> <p><b>第140條의3</b> (紛爭調整委員會의 운영등) ①紛爭調整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 7人 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 2 이상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紛爭調整委員會의 委員長은 紛爭의 調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公務員, 地方自治團體組合 職員 또는  관계專門家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紛爭의 當事者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이  정한  사항외에 紛爭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p> <p><b>第141條</b> (事務의 委託)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은  소관事務의  일부를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에게 委託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委託의 當事者가 市·道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 ②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委託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와의 協議에  따라 規約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事務委託에  관한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事務를 委託하는 地方自治團體 및 事務를 委託받는 地方自治團體</p>	<p>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계속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의 사망·퇴직 등으로 위원이 된 사람의 임기는 이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b>제140조의3</b>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조합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u>의견제출 등을</u>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이 정한 사항 <u>의외에</u>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1조</b> (사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u>자기가 맡고 있는 사무의</u>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u>맡겨서</u>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u>보고</u>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맡기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u>규약을 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u> ③제2항의 <u>사무위탁에</u>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2. 委託事務의 내용과 범위                      3. 委託事務의 管理와 처리방법                      4. 委託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소요되는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5. 기타 事務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事務委託을 變更 또는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과의 協議를 거쳐 이를 告示하고, 第1項의 예에 따라 行政自治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                      ⑤事務가 委託된 경우 委託된 事務의 管理 및 처리에 관한 條例 또는 規則은 規約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事務를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도 適用된다.</p> <p>第2節 行政協議會</p> <p><b>第142條</b> (行政協議會의 구성) ①地方自治團體는 2個 이상의 地方自治團體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間의 行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市·道가 그 構成員인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市·郡 또는 自治區가 構成員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                      ②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協議會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間의 協議에 따라 規約를 정하여 關係地方議會의 議決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協議會의 구성을 勸告할 수 있다.&lt;개정 1999.8.31&gt;</p> <p><b>第143條</b> (協議會의 組織) ①協議會는 會長과 委員으로 구성한다..</p>	<p>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u>비용</u>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u>바꾸거나</u>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 <u>지방자치단체</u> 또는 그 장과의 協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및 關係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무가 <u>맡겨진</u> 경우 <u>맡겨진</u>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規約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p> <p>제 2 절 행정협의회</p> <p><b>제142조</b> (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事務의 일부를 共同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지방자치단체 <u>사이</u>에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關係 <u>중앙행정기관</u>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 <u>지방자치단체 사이</u>의 협의에 따라 規約를 정하여 關係지방협의회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公益상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p> <p><b>제143조</b> (협의회회의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會長과 委員은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地方自治團體의 職員중에서 選任한다.</p> <p>③會長은 協議會를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協議會의 事務를 總括한다</p> <p><b>第144條</b> (協議會의 規約) 協議會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協議會의 名稱</li> <li>2. 協議會를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li> <li>3. 協議會가  처리하는 事務</li> <li>4. 協議會의 組織과 會長 및 委員의 選任方法</li> <li>5. 協議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li> <li>6.  기타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第145條</b> (協議會의 資料提出要求等) 協議會는 그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開陳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구할  수  있다.</p> <p><b>第146條</b> (協議事項의 調整) ①協議會에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整要請이  있는  때에는  市·道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市·道知事가  이를  調整할  수  있다.  다만,  關係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lt;개정 1999.8.31&gt;</p> <p>②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整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調整하여야  한다.&lt;개정 1999.8.31&gt;</p>	<p>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지방자치단체의 직원 <u>가운데서</u>  선출한다.</p> <p>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u>모든</u> 사무를 관리한다.</p> <p><b>제144조</b> (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의 <u>이름</u></li> <li>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li> <li>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li> <li>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li> <li>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u>비용</u>의 부담 및 지출방법</li> <li>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145조</b>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b>제146조</b> (협지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關係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 사이의 협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지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u>그러나</u>, 關係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第147條</b> (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한 關係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lt;改正 1994·3·16&gt;</p> <p>②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lt;新設 1994·3·16, 1999.8.31&gt;</p> <p>③協議會가 關係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의 名義로 행한 事務의 처리는 關係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b>第148條</b> (協議會의 規約變更 및 廢止) 地方自治團體가 協議會의 規約를 變更하거나 協議會를 廢止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節 地方自治團體組合</p> <p><b>第149條</b>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設立) ① 2個 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事務를 共同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規約를 정하여 當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거쳐 市·道는 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地方自治團體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t;改正 1989·12·30, 1999.8.31&gt;</p> <p>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p> <p><b>第150條</b> (組合의 組織) ①組合에는 組合會議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을 둔다.</p> <p>②組合會議의 委員과 組合長 및 事務職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任한다.</p>	<p><b>제147조</b>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u>이름으로</u>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p> <p><b>제148조</b>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u>바꾸거나</u>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지방자치단체조합</p> <p><b>제149조</b>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u>둘</u>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u>해당</u>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u>둘</u>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u>둘</u>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b>제150조</b> (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p> <p>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③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3條第1項 및 第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組合會議의 委員 또는 組合長을 겸할 수 있다.</p> <p><b>第151條</b> (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①組合會議는 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의 重要事務를 審議·議決한다.                      ②組合會議는 組合이 제공하는 役務등에 대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을 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lt;新設 1994·3·16&gt;                      ③組合長은 組合을 代表하며 組合의 事務를 統轄한다.</p> <p><b>第152條</b> (組合의 規約) 組合의 規約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組合의 名稱                      2. 組合을 구성하는 地方自治團體                      3. 事務所의 位置                      4. 組合의 事務                      5. 組合會議의 組織 및 委員의 選任方法                      6. 執行機關의 組織 및 選任方法                      7. 組合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의 부담 및 支出方法                      8. 기타 組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b>第153條</b> (組合의 指導·監督) ①市·道가 構成員인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가 構成員인 組合은 1次로 市·道知事, 2次로 行政自治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다만, 組合의 構成員인 市·郡 및 自治區가 2個 이상의 市·道에 걸치는 組合은 行政自治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lt;개정 1999.8.31&gt;                      ②行政自治部長官은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組合의 設立·解散 또는 規約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lt;개정 1999.8.31&gt;</p>	<p>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u>규정에도</u>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의 <u>업무를</u> 동시에 할 수 있다.</p> <p><b>제151조</b>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조합회의는 조합이 주는 <u>공무</u>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0조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u>관리하고 운영한다</u>.</p> <p><b>제152조</b> (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이름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u>비용의 부담</u>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b>제153조</b> (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u>그러나</u>,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b>第154條</b> (組合의 規約變更 및 解散) ① 組合의 規約을 變更하거나 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49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組合을 解散한 경우에 그 財産의 處分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協議에 의한다.</p> <p>第4節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의 協議體 &lt;신설 1999.8.31&gt;</p> <p><b>第154條의2</b>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의 協議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地方議會의 議長은 상호간의 交流와 協力を 增進하고, 公同의  문제를 協議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各々 全國的 協議體를 設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市·道知事</li> <li>2. 市·道議會의 議長</li> <li>3.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li> <li>4. 市·郡·自治區議會의 議長</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를 設立한 때에는 當해 協議體의 代表者는 이를 지체없이 行政自治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는 地方自治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는 法令등에  關於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을   거쳐 政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體의  設立申告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1999.8.31]</p> <p>第9章 國家의 指導·監督</p>	<p><b>제154조</b>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p>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p> <p><b>제154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지사</li> <li>2. 시·도의회 의장</li> <li>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li> <li>4. 시·군·자치구회의 의장</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둔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에  關於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p>
<p><b>第155條</b>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한 指導 및 지원) ①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關於하여  助言 또는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155조</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關於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國家 또는 市·道는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財政支援 또는 技術支援을 할 수 있다.</p> <p><b>第156條</b> (國家事務 또는 市·道 事務處理의 指導·監督) ①地方自治團體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에 관하여는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의,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1次로 市·道知事の, 2次로 主務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②市·郡 및 自治區 또는 그 長이 委任받아 처리하는 市·道の 事務에 관하여는 市·道知事の 指導·監督을 받는다.</p> <p><b>第156條의2</b> (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協議調整) ①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協議調整機構를 둘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調整機構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1999.8.31]</p> <p><b>第157條</b> (違法·부당한 命令·處分の 是正)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그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取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에 있어서는 法令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p>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治事務에 관한 命令이나 處分の 取消 또는 정지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그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p>	<p>②국가 또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 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156조</b>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u>맡아서</u>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b>제156조의2</b>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밑에</u>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u>운영</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57조</b>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u>안에</u>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b>第157條의2</b>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또는 市·道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 명백히 解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한다.</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履行命令書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履行命令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p> <p>[本條新設 1994·3·16]</p> <p><b>第158條</b>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査)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 會計를 監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監査는 法令違反事項에 한하여 실시한다. &lt;改正 1994·3·16, 1999.8.31&gt;</p> <p><b>第159條</b> (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地方議會의 議決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부장관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再議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再議의 요구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p>	<p>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u>안에</u> 대법원에 <u>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p> <p><b>제157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u>따라</u>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u>깨우리</u>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 <u>안에</u>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u>대신 집행</u>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b>제158조</b>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p> <p><b>제159조</b>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하게 할 수 있고,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8.31, 2005. 1.27&gt;</p> <p>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lt;개정 1994.3.16&gt;</p> <p>④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は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lt;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gt;</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 &lt;신설 1994.3.16&gt;</p> <p>⑥주무부장관 또는 市·道知事は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lt;신설 1994.3.16, 1999.8.31, 2005.1.27&gt;</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p>	<p>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u>넘겨받은</u> 날부터 20일 <u>안에</u>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u>다시 의결한</u> 결과 재적의원 <u>반수 이상</u>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이전</u>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u>따라 다시 의결된</u>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u>다시 의결된</u> 날부터 20일 <u>안에</u>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다시 의결된</u>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소송을</u>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소송을 제기하도록</u> 지시하거나 직접 <u>소송을 제기</u>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u>소송제기</u>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u>안에</u> 하고,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소송제기</u>의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u>안에</u> <u>소송을 제기</u>하여야 한다.</p> <p>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u>지난날</u>부터 7일 <u>안에</u> <u>직접</u> <u>소송을 제기</u>할 수 있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u>다시 의결하도록</u> 지시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다시 의결하도록</u>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u>다시</u></p>

현행 조문	순화조문안
<p>받기 전에 당해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신설 2005.1.27&gt;</p> <p>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신설 2005.1.27&gt;</p> <p>第10章 서울特別市등 大都市行政の特例</p> <p><b>第160條</b> (自治區의 財源) ①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은 市稅收入중의 一定額을  확보하여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의  自治區   상호간의  財源을  調整하여야  한다.&lt;改正 1994·12·20&gt;</p> <p>②削 除 &lt;1994·12·20&gt;</p> <p><b>第161條</b> (特例의 인정) 서울特別市の 地位·組織 및  운영에  있어서는  首都로서  의  特수성을   고려하여  法律이  定하는  巴에  依하여  特例를  둘  수  있다.</p> <p><b>제161조의2</b>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p> <p><b>第162條</b>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u>의결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기 이전에 해당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u>지난날부터 7일 안에</u>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⑧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u>따라 다시 의결된</u> 사항이 2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u>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시 의결하거나 소송제기를 지시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u> 신청할 수 있다.</p> <p>제10장 서울특별시등 대도시행정의 특례</p> <p><b>제160조</b>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관리·운영하는 안의</u>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②삭 제</p> <p><b>제161조</b> (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p> <p><b>제161조의2</b>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u>아닌</u>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u>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u> 특례를 둘 수 있다.</p> <p><b>제162조</b>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부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b>제1조</b>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p> <p><b>제3조</b>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구역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4조</b> (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p> <p><b>제5조</b> (폐치·분합으로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①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소멸한 날로써 마감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b>제1조</b>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관계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p> <p><b>제3조</b>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이전)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구역변경 및 그 설치·폐지·분리·통합에 따른 사무의 이전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4조</b> (설치·폐지·분리·통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폐지·분리·통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즉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p> <p><b>제5조</b> (설치·폐지·분리·통합으로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①설치·폐지·분리·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소멸한 날로써 마감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제1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 6 조</b>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lt;개정 1994.7.6, 1995.7.1&gt;</p> <p><b>제 7 조</b> (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1991.4.1, 1995.10.19,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li> <li>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li> <li>3. 1인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li> </ol> <p>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신설 1995.10.19, 1999. 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li> <li>2.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math display="block">[(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div 일반회계예산] \times 100</math> </li> </ol> <p>③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1994.7.6, 1999.12.31&gt;</p>	<p>②제1항의 결산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 6 조</b>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u>사무소가 있는 곳은</u>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u>함</u>)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p> <p><b>제 7 조</b> (시·읍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시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u>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u>지역 안에</u>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li> <li>2. <u>해당</u>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li> <li>3. 1인 당 지방세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li> </ol> <p>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u>따라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로</u>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u>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li> <li>2. 다음의 식에 <u>따라</u> 계산한 <u>해당</u>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math display="block">[(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div 일반회계예산] \times 100</math> </li> </ol> <p>③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u>따라</u> 읍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p> <p>2.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p> <p><b>제 8 조</b>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lt;%생략: 별표 1%&gt;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 9 조</b>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lt;%생략: 별표 2%&gt;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5.7.1&gt;</p> <p><b>제10조</b>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lt;%생략: 별표 3%&gt;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10조의2</b> (연서 주민수) ①법 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별표 4와&lt;%생략: 별표 4%&gt;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1. <u>해당</u>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u>지역 안에</u>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p> <p>2. <u>해당</u>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p> <p><b>제 8 조</b>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u>그러나</u>,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 9 조</b> (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u>그러나</u>,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10조</b>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 <u>이상의 시</u>”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인구 50만 <u>이상의 시</u>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u>그러나</u>,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10조의2</b> (연서하는 주민수) ①법 제13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u>따라</u> 조례의 <u>제정·개정 및 폐지</u>의 청구에 있어서 <u>연서</u>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 이상의 <u>전체 주민 수</u>와 조례의 <u>제정·개정 및 폐지</u>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제10조의3</b>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4</b> (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예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②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예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p>	<p><b>제10조의3</b>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u>청구하는 사람의 대표자</u>(이하 “대표자”라 함)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u>적은</u> 조례의 제정이나 <u>개정·폐지청구서</u>(이하 “청구서”라 함)를 덧붙여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뜻을 공표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4</b> (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u>청구하는 사람의 명부</u>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p> <p>②대표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u>위임받은 사람의 이름</u> 및 위임한 연월일을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받은 사람은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u>청구하는 사람의 명부</u>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u>안</u>,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u>안에</u>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u>그러나</u>,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5</b> (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p> <p>③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6</b>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p>	<p>어서 <u>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u>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u>계산에 넣지 아니한다</u>.</p> <p>⑤누구든지 <u>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u>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u>선거기간</u> 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p> <p><b>제10조의5</b> (서명 및 청구인의 명부의 작성) ①<u>청구하는 사람의 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하는 사람의 명부에 이를·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한 날짜를</u>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서명을 <u>한 1인</u>의 해당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대표자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청구하는 사람의 명부를</u>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u>청구하는 사람의 명부에서 해당 서명</u>을 삭제하여야 한다.</p> <p>③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6</b>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u>안에</u>,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u>안에</u>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u>이름·주소, 청구의 뜻</u> 및 이유, 연서한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7</b>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8</b> (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7</b>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u>두어</u>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②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u>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함)</u>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u>바르게 고친 후</u>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u>알려야</u>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u>따라</u>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u>따라</u>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주민 수</u>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u>안에</u>,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u>안에</u> 이를 <u>보충</u>하게 할 수 있다.</p> <p><b>제10조의8</b> (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u>따라</u>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제10조의9</b>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9</b>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회로 보낼 수 있다.</p>
<p><b>제10조의10</b> (주무부장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일괄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0</b> (주무부장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내용이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u>분명하지 않는 때에는</u>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부처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사청구를 <u>한꺼번에</u>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b>제10조의11</b> (주민의 감사청구절차) ①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2항, 제10조의7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11</b> (주민의 감사청구절차) ①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2항, 제10조의7제2항에서 <u>제4항까지</u> 및 제10조의8의 규정은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u>교부하여야</u>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4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④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당해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0조의7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2</b> (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10조의4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u>안에</u>,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u>안에</u>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u>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u></p> <p>④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u>주민수</u> 이상이 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u>안에</u>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u>안에</u>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주무부장관은 <u>해당</u>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u>해당</u>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u>비치해</u>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10조의7제3항 및 <u>같은 조</u>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u>따라</u>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u>주민 수에 달하지 않는 경우</u>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u>안에</u> 이를 <u>보정</u>하게 할 수 있다.</p> <p><b>제10조의12</b> (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u>따라야</u> 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10조의13</b> (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3</b> (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감사가 <u>끝난</u> 때에는 <u>즉시</u> 감사실시의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14</b> (부처간 협조)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4</b> (부처<u>사이의</u> 협조)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따라야</u> 한다.</p>
<p><b>제10조의15</b> (공표방법 등)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5</b> (공표방법 등)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u>따른</u>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p><b>제10조의16</b> (보고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한 때와 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6</b> (보고 등)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15의 규정에 <u>따라</u> 공표를 한 때와 법 제13조의4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u>알리거나</u>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0조의17</b> (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p>	<p><b>제10조의17</b> (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u>밑에 있는</u>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 <u>밑에 두는</u>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장 <u>밑에 두는</u>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10조의18</b> (청구서 등의 서식)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 제1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및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0조의18</b> (청구서 등의 서식) 제10조의3의 규정에 <u>따른</u>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0조의4의 규정에 <u>따른</u>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0조의5의 규정에 <u>따른</u> 청구인명부, 제10조의7의 규정에 <u>따른</u> 이의신청서 및 제10조의11의 규정에 <u>따른</u>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제2장 조례와 규칙</p>	<p>제2장 조례와 규칙</p>
<p><b>제10조의19</b> (조례·규칙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li> <li>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li> <li>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li> <li>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li> <li>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li> </ol>	<p><b>제10조의19</b> (조례·규칙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u>밑에</u>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u>함</u>)를 둔다.</p> <p>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li> <li>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li> <li>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u>개정·폐지의 청구에</u>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li> <li>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제정·개정·폐지</u>하고자 하는 규칙안</li> <li>5. 예산안·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u>가운데</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li> </ol>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③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p> <p>④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1조</b>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p> <p><b>제12조</b>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lt;개정 1995.7.1&gt;</p> <p>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p>	<p>③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p> <p>④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u>반수 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이 영에 <u>규정되어 있지 않는</u>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b>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분명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u>적어 넣어야 한다</u>.</p> <p>③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u>따라</u> 공포한다는 뜻을 <u>적어 넣고</u>,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명확히 적어 넣어야 한다.</p> <p><b>제12조</b>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u>그러나</u>,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u>게시판에</u> 게시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에 <u>있어서는</u>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24조제2항의</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1995.7.1&gt;</p> <p><b>제13조</b>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p> <p><b>제1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지방의회</p> <p><b>제15조</b>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lt;%생략: 별표 5%&gt;,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lt;%생략: 별표 6%&gt;,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lt;%생략: 별표 7%&gt; &lt;%생략: 별표 8%&gt;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1995.12.30, 1999.12.3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lt;개정 1999.12.31&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p>	<p>규정에 의한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3조</b> (공포일) 제12조의 규정에 <u>따</u>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p> <p><b>제1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u>규정하지 않은 것은</u>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지방의회</p> <p><b>제15조</b>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u>따</u>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u>범위 안에서 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u>고려하여</u> 조례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u>라 의정활동비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u>보수</u>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1일의 액수를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 1일에 대하여 <u>1일의 액수를 빼고</u> 지급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u>어려운</u>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u>관한</u>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u>섬지역</u>(연육지역은 제외함)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lt;신설 1995.12.30, 2003.12.18&gt; [전문개정 1995.7.1]</p> <p><b>제15조의2</b>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1995·7·1,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li> <li>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li> <li>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p>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b>제15조의2</b>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li> <li>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li> <li>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그러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p>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함)를 둔다.</p> <p>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p> <p>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p> <p>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1994.7.6]</p> <p><b>제15조의3</b>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lt;개정 2002.11.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2.11.29&gt;</p> <p>③삭제 &lt;2002.11.29&gt;</p> <p>④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u>해당</u> 지방의회의원 1인                  2. <u>해당</u>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u>사람</u> 1인</p> <p>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u>사람</u>의 신청에 따라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p> <p>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그러나</u>, <u>해당</u>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⑥이 영에 <u>규정하지 않은</u>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u>등</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15조의3</b>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③삭제</p> <p>④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라 함은 법 제135조의 규정에 <u>따라</u>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u>이전하는</u> 경우를 말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⑤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⑥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5조의4</b>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15조의5</b> (서류제출요구 방법등) ①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2.15]</p> <p><b>제16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lt;개정 1994.7.6, 1999.12.31, 2000.7.1&gt;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p>	<p>⑤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⑥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u>따른</u>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u>가운데</u>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u>있어서</u>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b>제15조의4</b> (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p> <p><b>제15조의5</b> (서류제출요구 방법등) ①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u>따라야</u> 한다.</p> <p><b>제16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u>따라</u>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u>회기 안에</u> 실시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u>따라</u>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u>가운데</u> 특정사안에 <u>관해</u> 조사를 제안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p> <p>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1991.4.1]</p> <p><b>제17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94.7.6&gt; [전문개정 1992.2.15]</p> <p><b>제17조의2</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li> <li>2. 감사 또는 조사일정</li> <li>3. 감사 또는 조사요령</li> <li>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li> <li>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p>	<p>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u>제안이</u>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u>다시 회의를 개최하도록</u>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p> <p>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p><b>제17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b>제17조의2</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제17조의 규정에 <u>따른</u>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u>함</u>)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li> <li>2. 감사 또는 조사일정</li> <li>3. 감사 또는 조사요령</li> <li>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li> <li>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려야</u> 한다.</p> <p>④제17조의 규정에 <u>따라</u>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1994.7.6&gt; [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3</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1994.7.6, 2003.12.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지방자치단체</li> <li>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li> <li>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li> <li>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li> <li>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li> </ol> <p>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p>	<p>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u>즉시</u> 이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려야</u> 한다.</p> <p><b>제17조의3</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해당</u> 지방자치단체</li> <li>2. 법 제104조에서 <u>제107조까지</u>의 규정에 <u>다른 해당</u> 지방자치단체 <u>밑에 있는</u>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li> <li>3. 법 제112조의 규정에 <u>따라</u>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u>그러나</u>,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에 보고로 <u>대신하되</u>,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li> <li>4. <u>해당</u>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u>따른</u> 지방공기업</li> <li>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u>그러나</u>,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u>따라</u>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u>그러나</u>,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li> </ol> <p>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4</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7.6&gt;</p> <p>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1994.7.6&gt;</p> <p>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1995.7.1&gt;</p> <p>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lt;신설 1994.7.6&gt;</p> <p>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신설 1994.7.6&gt;</p> <p>[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5</b>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p>	<p>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u>관계 지방자치단체</u>의 지방의회와 <u>상호</u> 협약하여야 한다.</p> <p><b>제17조의4</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u>사람</u>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u>들의</u>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u>따라</u>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u>따를</u>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u>따른</u> 과태료는 <u>해당</u>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u>들</u>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1995.7.1&gt;</p> <p>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u>뜻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는</u>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7조의5</b>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4.7.6]</p> <p><b>제17조의6</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7</b> (제척과 회피) ①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분회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p> <p>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lt;개정 1994.7.6&gt; [본조신설 1991.4.1]</p>	<p>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b>제17조의6</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p> <p><b>제17조의7</b> (제척과 회피) ①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분회이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p> <p>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b>제17조의8</b>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9</b> (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1994.7.6&gt; [본조신설 1991.4.1]</p> <p><b>제17조의10</b>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9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6]</p> <p><b>제18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4.1]</p> <p><b>제19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p>	<p><b>제17조의8</b>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u>외부에 알려지지</u>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u>외부에 알려서는</u> 아니된다.</p> <p><b>제17조의9</b> (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u>그러나</u>,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17조의10</b>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u>있어서는</u> 제16조 내지 제17조의9 및 <u>제18조에서 제19조의2까지의</u>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u>따라야</u> 한다.</p> <p><b>제18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u>즉시</u>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b>제19조</b>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4.1]</p> <p><b>제19조의2</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4.1]</p> <p><b>제19조의3</b>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6]</p> <p><b>제19조의4</b>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lt;개정 2000.7.1&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lt;개정 2000.7.1&gt;</p> <p>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회의부의안건</p>	<p>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u>해당</u>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u>해당</u>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u>넘겨주어야</u>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u>넘겨받은</u> 사항을 <u>즉시</u>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19조의2</b> (운영규정) 법 및 이 <u>영에서</u>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19조의3</b>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u>따라</u>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u>회의시작 전까지</u>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u>알려야</u> 한다.</p> <p><b>제19조의4</b>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u>정례회의</u> 중 제1차 <u>정례회의</u>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u>정례회의</u>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u>그러나</u>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회의회의부의안건</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에의부의안건</p> <p>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20조</b> (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7.6, 1999.12.31&gt;</p> <p><b>제20조의2</b>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는 의원정수가 13인이상인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lt;%생략:별표 9%&gt; 같다. &lt;개정 1994.7.6, 1995.7.1, 1999.12.31&gt; [본조신설 1992.2.15]</p> <p><b>제20조의3</b>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p>	<p>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의에의 부의안건</p> <p>③법 및 이 영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20조</b> (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20조의2</b>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의 의회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p><b>제20조의3</b>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마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21조</b>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4.7.6, 1999.12.31&gt;</p> <p>③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2조</b>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b>제23조</b>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제2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lt;개정 1994.7.6&gt;</p> <p><b>제25조</b>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b>제26조</b> (의원의 자격심사)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p>	<p><b>제21조</b>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u>안에</u> 행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5일 <u>안에</u> 회의록 사본을 <u>붙여</u>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법 및 이 영에서 <u>규정하지 않는</u>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2조</b>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u>붙여야 한다</u>.</p> <p><b>제23조</b>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제2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u>규정하지 않은</u>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5조</b>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9조의 규정에 <u>따른</u>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p> <p><b>제26조</b> (의원의 자격심사)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u>따른</u>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u>심의받을 의원에게 보내고</u>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u>심의받을 의원</u>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u>기간 안에</u>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p> <p>③피심위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b>제27조</b> 삭제 &lt;2003.12.18&gt;</p> <p><b>제28조</b> (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2.2.15&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집행기관</p> <p><b>제28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조신설 1995.7.1]</p> <p><b>제29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 [전문개정 1995.7.1]</p> <p><b>제30조</b> (사무인계)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p>	<p>②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u>심의받을</u> 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p> <p>③<u>심의받을</u>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b>제27조</b> 삭제</p> <p><b>제28조</b> (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82조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u>함께</u>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집행기관</p> <p><b>제28조의2</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할 <u>때에</u>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p> <p><b>제29조</b>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하고자 하는 날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u>그러나</u>, 부득이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사임을 알린</u>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0조</b> (사무인계)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u>따른</u>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자치단</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7.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7.1&gt;</p> <p>[전문개정 1995.7.1]</p> <p><b>제31조</b> (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류 및 장부의 목록</li> <li>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li> <li>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 증명</li> <li>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li> <li>5. 기타 주요사항</li> </ol> <p><b>제32조</b> (사무인계에의 입회) ①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p>	<p>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u>그에 속하는 사무의</u>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u>대신 행하거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에게 이전</u>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직무를 <u>대신 행하거나 권한을 대신 행하는</u> 자가 사무를 <u>넘겨받은</u>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u>맡게 된 때에 즉시</u> 이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이전</u>하여야 한다.</p> <p><b>제31조</b> (사무인계서) 제30조의 규정에 <u>따른</u> 사무인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류 및 장부의 목록</li> <li>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li> <li>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 및 잔고 증명</li> <li>4. 기획중 또는 시행중인 중요사업</li> <li>5. 기타 주요사항</li> </ol> <p><b>제32조</b> (사무인계에의 입회) ①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u>흠이 있는지 여부를</u>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p> <p>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u>그러나</u>, 결원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직무를 <u>대신 행하거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u> 인계를 받는 경우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u>대신 행하는 사람이</u>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입회한다. &lt;개정 1991.4.1, 1994.7.6, 2000.7.1&gt;</p> <p><b>제33조</b>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1조 각호의 사항중 인계 당시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의하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34조</b> (사무인계의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인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35조</b> (사무인계 거부등) ①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②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인계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36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 한 것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p>	<p>에게 사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자가 입회한다.</p> <p><b>제33조</b>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31조 각호의 사항중 인계 당시 비치되어 있는 목록 또는 대장에 따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써넣어야 한다.</p> <p><b>제34조</b> (사무인계의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7일 안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5조</b> (사무인계 거부등) ①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사람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p> <p>②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인계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6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 하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7조</b>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19조·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③삭 제 &lt;1995.7.1&gt;</p> <p><b>제38조</b> (선결처분)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li> <li>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li> <li>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li> <li>4.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7.6, 1999.12.31&gt;</p> <p><b>제39조</b> (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 &lt;개정 2000.2.14&gt;</p>	<p>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37조</b>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19조·법 제98조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은 이를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③삭 제</p> <p><b>제38조</b> (선결처분)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li> <li>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li> <li>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li> <li>4.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li> </ol>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39조</b> (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인,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으로 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1995.12.30, 1998.8.31, 2000.2.14&gt;</p> <p>⑤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lt;%생략:별표10%&gt; 정하는 바에 의한다. &lt;신설 2000.2.14&gt;</p> <p>⑥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lt;신설 1998.7.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수 15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li> <li>2. 인구수 50만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li> <li>3. 인구수 50만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li> </ol> <p>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 년도말 인구수가 당</p>	<p>②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함)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③법 제10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담당하게 한다.</p> <p>④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모두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도와주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p> <p>⑤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인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⑥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수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서기관</li> <li>2. 인구수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수 15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li> <li>3.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li> </ol> <p>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 년도 말 인구수가 당</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 &lt;신설 1998.7.1, 2000.2.14&gt; [전문개정 1995.7.1]</p> <p><b>제39조의2</b>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p>	<p>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수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u>넘거나</u>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 연도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신설이 있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수에 의한다.</p> <p><b>제39조의2</b>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u>같은 조</u>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u>대신 행하는</u>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u>함</u>)은 법령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나 규칙의 규정</u>에 <u>따라</u>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1조의2제3항의 규정에 <u>따</u>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의 <u>규정에 따</u>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u>그러나</u>,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01조의2제1항 및 <u>같은 조</u>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u>대신 행</u>을 하게 되거나 <u>권한을 대신 행</u>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u>알리고</u>,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계,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부지사 3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 2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lt;개정 2000.2.14&gt; [전문개정 1999.12.31]</p> <p><b>제39조의3</b> (직속기관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직속기관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속기관(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li> <li>2. 광역시·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li> </ol>	<p>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u>따라</u> 부시장·부지사 3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u>대신</u>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 2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u>대신</u>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b>제39조의3</b> (직속기관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4조의 규정에 <u>따라</u> 조례로 직속기관을 <u>두고자</u>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직속기관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12.3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정원의 범위 <u>안</u>에서 직속기관(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u>그러나</u>,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는 4급 또는 4급상당 <u>이하</u>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li> <li>2. 광역시·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급 또는 5급상당 <u>이하</u>의 지방공무원을</li> </ol>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7.1]</p> <p><b>제39조의4</b>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중 대학 및 전문대학설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능력이 있을 것</li> <li>2. 지역내의 산업인력 수요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력공급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li> <li>3.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li>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li> <li>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1999.12.31]</li> </ol> <p><b>제40조</b> (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li> <li>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li> </ol> <p>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법 제10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1, 1999.12.31&gt;</p>	<p>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p> <p><b>제39조의4</b>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직속기관중 대학 및 전문대학설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능력이 있을 것</li> <li>2. 지역 <u>안의</u> 산업인력 수요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력공급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li> <li>3. 지역 <u>사이의</u>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li>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li> <li>5. 대학 및 전문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li> </ol> <p><b>제40조</b> (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u>따라</u> 사업소를 두고 <u>있는</u>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u>그러나, 일정기간 후에</u>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u>등으로</u> 보아 <u>다른 기관</u>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li> <li>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li> </ol> <p>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u>따라</u> 조례로 <u>사업하는 곳</u>(법 제105조 단서의 규정에 <u>따라</u> 설치하는 사업소를 제외함)을 <u>두고자</u>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5.7.1,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li> <li>2. 광역시·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li> </ol> <p>④삭제 &lt;2000.7.1&gt;</p> <p><b>제40조의2</b> (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li> <li>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li> <li>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한다)의 경우</li> <li>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li> </ol> <p>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출장소”로 본다.</p> <p>[본조신설 1995.7.1]</p> <p><b>제41조</b>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u>그러나</u>,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에 있어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li> <li>2. 광역시·도 및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에 있어서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lt;2000.7.1&gt;</li> </ol> <p><b>제40조의2</b> (출장소의 설치)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출장소를 <u>둘 수 있는</u>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li> <li>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li> <li>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를 제외함</u>)의 경우</li> <li>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u>따라</u> 둔 행정동의 경우</li> </ol> <p>③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설치승인에 <u>있어서는</u>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는 “출장소”로 본다.</p> <p><b>제41조</b>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u>따라</u>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는 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의제행정기관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1, 1999.12.31&gt;</p> <p><b>제42조</b>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5.7.1, 1999.12.31&gt;</p> <p><b>제43조</b> 삭 제 &lt;1994.7.6&gt;</p> <p><b>제44조</b>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7.6&gt;</p>	<p>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의제행정기관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2조</b>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43조</b> 삭 제</p> <p><b>제44조</b> (이장의 임명)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재 무</p> <p><b>제45조</b> (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1991.4.1, 1999.12.31&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재 무</p> <p><b>제45조</b> (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4·1, 1999·12·31&gt;</p> <p>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4.1, 1999.12.31&gt;</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46조</b> (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46조의2</b> (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1994.7.6&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1994·7·6, 1999·12·31&gt;</p> <p>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발행계획에 <u>덧붙여</u>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b>제46조</b> (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u>따른</u>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u>안에</u>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b>제46조의2</b> (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u>따른</u>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u>3인 이상 5인 이하로</u>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검사위원은 <u>해당</u>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u>사람 가운데에서</u>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u>넘을 수 없다</u>.</p> <p>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47조</b> (결산검사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의 결산</li> <li>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li> <li>3. 채권 및 채무의 결산</li> <li>4. 재산 및 기금의 결산</li> <li>5. 금고의 결산</li> </ol> <p>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p> <p><b>제47조의2</b> (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①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 당사자의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p>	<p><b>제47조</b> (결산검사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입·세출의 결산</li> <li>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li> <li>3. 채권 및 채무의 결산</li> <li>4. 재산 및 기금의 결산</li> <li>5. 금고의 결산</li> </ol> <p>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안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p> <p><b>제47조의2</b> (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①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회부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③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3</b> (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4</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5</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p>	<p>③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u>안에</u>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u>즉시</u> 그 의결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u>알려야</u> 한다.</p> <p><b>제47조의3</b> (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u>따라</u>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u>안에</u>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u>의 나</u>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47조의4</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u>합</u>)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u>관리하고 운영한다</u>.</p> <p>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u>대신 행한다</u>.</p> <p><b>제47조의5</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6</b> (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7</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8</b>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12.31]</p>	<p>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p> <p><b>제47조의6</b> (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p><b>제47조의7</b>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47조의8</b>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47조의9</b> (수당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1999.12.31&gt; [본조신설 1994.7.6]</p>	<p><b>제47조의9</b> (수당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그러나</u>, 공무원인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u>담당하는 업무와</u>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47조의10</b>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t;개정 1999.12.31&gt; [본조신설 1994.7.6]</p>	<p><b>제47조의10</b>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47조의11</b>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47조의4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47조의11</b>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47조의4 및 제47조의9의 규정은 <u>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u>(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u>함</u>)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서 <u>규정하지 않은</u>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48조</b> (행정협의회의의 구성기준) ①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p>	<p><b>제48조</b> (행정협의회의의 구성기준) ①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u>함</u>)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u>등</u>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 <u>사이에</u>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u>가운데</u>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u>고려하여</u>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p>
<p><b>제49조</b> (협의회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p>	<p><b>제49조</b> (협의회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u>함</u>)에 둔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50조</b> (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명칭</li> <li>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li> <li>3. 구성목적</li> <li>4. 구성일자</li> <li>5. 협의회규약 사본</li> </ol> <p><b>제51조</b> (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회장은 1인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52조</b> (회의) ①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p> <p>②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1999.12.31&gt;</p> <p>④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 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p> <p>⑤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50조</b> (협의회 구성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10일 <u>안에</u>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명 <u>이름</u></li> <li>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u>이름</u></li> <li>3. 구성목적</li> <li>4. <u>구성날자</u></li> <li>5. 협의회규약 사본</li> </ol> <p><b>제51조</b> (회장)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회장은 <u>한 사람으로</u>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협의회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신 행할 사람</u>을 선임한다.</p> <p><b>제52조</b> (회의) ①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p> <p>②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③행정자치부장관<u>이나</u>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 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p> <p>⑤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회장은 협의회 개최 <u>후</u> 14일 <u>안에</u>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b>제53조</b>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lt;개정 1995. 7.1&gt;</p> <p><b>제5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 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54조의2</b>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취지</li> <li>2. 협의체의 명칭</li> <li>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4. 창립총회의 회의록</li> <li>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3조</b>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u>따르게</u>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p> <p><b>제54조</b>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서 <u>규정하지 않은</u>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p><b>제54조의2</b>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의 <u>뜻</u></li> <li>2. 협의체의 <u>이름</u></li> <li>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4. 창립총회의 회의록</li> <li>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p>
<p>제 7 장 국가의 지도·감독</p>	<p>제 7 장 국가의 지도·감독</p>
<p><b>제54조의3</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청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p>	<p><b>제54조의3</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청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u>따라</u>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p> <p><b>제54조의4</b>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4인 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p> <p><b>제54조의5</b>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p>	<p>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u>등에서</u>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b>제54조의4</b>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1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아래에</u>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u>사이의</u>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u>함</u>)를 둔다. 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u>사람</u>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u>사람</u> 3.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u>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인 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u>간</u> <u>운데서</u>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그러나</u>, 보궐위원의 임기는 <u>이전위원의 남은</u> 기간으로 한다.</p> <p><b>제54조의5</b>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u>따라</u> 당사자 <u>사</u></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간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u>이</u>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협의·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u>따른</u> 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u>즉시</u>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알려야 한다</u>.</p> <p>④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u>즉시</u> 이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u>한다</u>.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해당</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b>제54조의6</b> (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4조의6</b> (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u>반수 이상</u>의 출석으로 <u>회의</u>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54조의7</b> (실무위원회)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54조의7</b> (실무위원회)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u>함</u>)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u>함</u>)를 둔다.</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p> <p>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4조의8</b> (간사)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차관보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2급 내지 3급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4조의9</b>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4조의10</b> (준용) 제47조의4 및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lt;개정 2003.12.18&gt;</p> <p>[본조신설 1999.12.31]</p> <p><b>제55조</b> (명령·처분의 취소·정지등의 보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자치</p>	<p>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p> <p>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54조의8</b> (간사)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차관보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 2급 내지 3급공무원 가운데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p> <p><b>제54조의9</b>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54조의10</b> (준용) 제47조의4 및 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의 규정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p><b>제55조</b> (명령·처분의 취소·정지등의 보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p>

현행조문	순화조문안
<p>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한 때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li> <li>2.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 [전문개정 1995.7.1]</li> </ol> <p><b>제55조의2</b> (직무이행명령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때</li> <li>2. 법 제1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때</li> <li>3. 법 제1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li> <li>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때 [본조신설 1994.7.6]</li> </ol> <p><b>제55조의3</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절차등) 주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56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p>	<p>게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을 한 때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li> <li>2.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li> </ol> <p><b>제55조의2</b> (직무이행명령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57조의2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제1호 및 제2호에 <u>한함</u>)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이를 <u>알리거나</u>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때</li> <li>2. 법 제1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u>대신 집행하거나</u>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때</li> <li>3. 법 제1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li> <li>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때</li> </ol> <p><b>제55조의3</b>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절차등) 주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56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p>



현 행 조 문	순 화 조 문 안
<p>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 [본조신설 1995.7.1]</p> <p><b>제56조</b>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li> <li>2. 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li> <li>3.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li> <li>4.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li> </ol> <p>[전문개정 1994.7.6]</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p> <p><b>제57조</b> (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7.1]</p>	<p>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b>제56조</b>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3항,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다시</u> 의결하도록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li> <li>2. 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u>다시</u> 의결하도록 요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li> <li>3. 법 제98조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다시</u>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u>소송을</u>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li> <li>4.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u>따라</u>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때와 <u>직접</u>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p> <p><b>제57조</b> (자치구의 재원조정)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u>해당</u> 시세 <u>가운데</u>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 참고문헌

- 박갑수, 개정민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 과제,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법제연구원, 2003.4.30)
- 강현철, 개정민사소송법 순화작업의 실무추진경과와 그 내용, 개정 민사소송법의 법률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법제연구원, 2003.4.30).
- 법제처·법제연구원, 법률용어 순화정비의 체계화·민주화를 위한 법제연구, (2004. 6.11).
- 한국법제연구원, 상사법상의 법률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6.24)

환경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해 룡  
(한국외대 법대 교수)

목 차

I. 作業方針 .....	203
II. 檢討對象 法律 .....	203
III. 改善이 요구되는 사항과 관점 .....	203
【부록】 환경정책기본법 순화대비표 .....	212
【부록】 대기환경보전법 .....	225
【부록】 수질환경보전법 .....	252
【부록】 자연환경보전법 .....	280

## I. 作業方針

법률 조항의 문구와 용어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음. 법률조항의 내용적 타당성이나 조항의 편제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였음.

## II. 檢討對象 法律

환경관련 법률로서 중요한 것들의 순서로 작업하였음.

- 환경정책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 III. 改善이 요구되는 사항과 관점

1. 각 法律의 目的에 관한 조항 내지 基本理念에 관한 조항의 문구정비가 요망되고, 특히 용어의 중복사용,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임.

【예】

### 環境政策基本法

第2條 (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均衡의 유지는 國民의 健康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

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개정 1999.12.31>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에 관한 조항으로써 문장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중복되고, 복잡함. 이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거나 보충할 필요 있음.]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 및 국토의 보전과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보나 나은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환경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상 위해의 예방과 방지에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이 미래세대에 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앞호한 수질환경이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각 법률에서 用語의 定義에 관련된 조항들의 문구 정비 요망

【예】

환경정책기본법

第3條 (定義)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해양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지상, 지하 및 이들 공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騒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騒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騒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 환경의 질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유지되어야할 환경의 질적 수준으로서, 그 환경상태가 인간의 환경오염행위나 훼손을 감수하거나 스스로 그 오염 내지 훼손을 정화,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말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 3. 법률 조항의 文章의 倒置와 補充 요망

【예】

#### 환경정책기본법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절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9.12.31>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①국가는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환경상태를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내지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업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第8條의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告示함에 있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 등으로 보아 인접한 地域으로부터 발생된 大氣汚染物質의 流入이 環境基準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大氣汚染物質이 발생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의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조항 문구정비))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告示함에 있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 등으로 보아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の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한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후 缺陷是正計劃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여 結합시정명령을 생략받은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的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7.12.13>

<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新設 1992.12.8, 1995.12.29, 1997.12.13>>

4. 환경보전 업무 主體 내지 행정기관의 名稱의 개선

【예】

환경정책기본법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①정부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環境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環境여건의 變化에 따라 그 기준도 적절히 變化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第8條의2

②市·道知事 및 地方環境官署의 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排出施設 등 大氣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 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

5. 문장표현의 순화 및平易하게 고칠 필요성(과도한 文章 어투의 표현 개선)

【예】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當事者에 의하여 受諾된 때에는 調停調書を 작성하고 當事者와 함께 記名·捺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當事者間에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②調停委員會는 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調停調書を 작성하고 當事者와 함께 記名·捺印하여야 하며, 當事者間에는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 7 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학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학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시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판매하는 자 또는 그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6. 애매모호한 文句의 수정

【예】

환경분쟁조정법 제34조

②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主文內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주장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록】 환경정책기본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b>第1條</b> (目的) 이 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毀損을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第2條</b> (基本理念) 環境의 質의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均衡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향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lt;개정 1999.12.31&gt;</p> <p><b>第3條</b>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9.12.31, 2002.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li> <li>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해양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b>제1조</b>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2조</b> (기본이념)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 및 국토의 보전과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보다 나은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고, 환경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상 위해의 예방과 방지에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이 미래세대에 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gt;</p> <p><b>제3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9.12.31, 2002.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li> <li>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지상, 지하 및 이들 공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gt;</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騒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p> <p>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騒音·振動,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4의2. “環境毀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秩序의 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p> <p>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環境의 질을 유지하고 環境오염 또는 環境훼손에 대하여 環境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p>	<p>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p> <p>4. “환경오염”이라 함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 환경의 질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p> <p>5. “환경보전”이라 함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유지되어야 할 환경의 질적 수준으로서, 그 환경상태가 인간의 환경오염행위나 훼손을 감수하거나 스스로 그 오염 내지 훼손을 정화,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말한다.</p>
<p><b>第 4 條</b>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p> <p>①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당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lt;개정 1999.12.31&gt;</p> <p>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p>	<p><b>제 4 조</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국가는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환경상태를 적절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 내지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업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 5 條</b> (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lt;개정 1999.12.31&gt;</p> <p><b>제 6 조</b>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p> <p><b>第 7 條</b> (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 環境을  회복·復元할 責任을 지며,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第 7 條의2</b>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lt;개정 2002.12.30&gt;)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인 감소를 통한 事前豫防의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 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 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 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程을 개선하며,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の 촉진 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의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p>	<p><b>제 5 조</b>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lt;개정 1999.12.31&gt;</p> <p><b>제 6 조</b>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gt;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거나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p> <p><b>제 7 조</b>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신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하는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이미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시킬 책임을 지며,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b>제 7 조의2</b>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lt;개정 2002.12.30&gt;)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과 환경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하며, &lt;사업자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gt;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등 모든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p>

현행조문	순화조문
<p><u>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lt;개정 2002.12.30&gt;</p> <p>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u>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lt;신설 2002.12.30&gt; [본조신설 1999.12.31]</p> <p><b>제 7 조의3</b>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u>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본조신설 2002.12.30]</p> <p><b>제 7 조의4</b>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u>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u>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b>第 8 條</b> (보고) ①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環境汚染·環境毀損의  현황</li> <li>2. 國內·外 環境動向</li> <li>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li> <li>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li> </ol> <p>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개정 1997.12.13&gt;</p>	<p><u>여 환경에 미칠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lt;개정 2002.12.30&gt;</p> <p>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u>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lt;신설 2002.12.30&gt; [본조신설 1999.12.31]</p> <p><b>제 7 조의3</b>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산업간·지역간·사업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u>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본조신설 2002.12.30]</p> <p><b>제 7 조의4</b>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u>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u>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 8 조</b> (보고) ①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오염·환경훼손의 현재의 상황</li> <li>2. 국내·외 환경동향</li> <li>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li> <li>4.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li> </ol>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개정 1997.12.13&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 등</p> <p>第1節 環境基準</p> <p><b>第10條</b> (環境基準의 設定) ①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u>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③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보다 확대·強化된 別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lt;개정 1999.12.31&gt;</p> <p>④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u>지체없이</u>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신설 1999.12.31&gt;</p> <p><b>第11條</b> (環境基準의 유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 할 경우에는 <u>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環境惡化의 豫防 및 <u>그 要因</u>의 제거</p> <p>第2節 基本的 施策</p> <p><b>제12조</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u>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u>(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u>국무회의의 심의를</u> 거쳐 확정한다.</p>	<p>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 등</p> <p>제1절 환경기준</p> <p><b>제10조</b>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u>그 기준도 적절히 변화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lt;개정 1999.12.31&gt;</p> <p>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u>바로</u>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신설 1999.12.31&gt;</p> <p><b>제11조</b> (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u>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환경악화의 예방 및 <u>그 원인</u> 제거</p> <p>제2절 기본적 시책</p> <p><b>제12조</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u>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u>(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u>국무회의의 심의를</u> 거쳐 확정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u>변경하고자 하는</u>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p> <p><b>第13條</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lt;개정 2002.12.30&gt;)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改正 1999.12.31, 2002.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li> <li>2. 環境오염원·環境오염도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으로 인한 環境質의 變化展望</li> <li>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li> <li>4. 環境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u>자연環境의 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li> <li>다. <u>해양環境의 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라. <u>국토環境의 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마. <u>대기環境의 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바. <u>수질環境의 보전에</u> 관한 사항</li> <li>사. <u>상·하수도의 보급에</u> 관한 사항</li> <li>아. <u>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u> 관한 사항</li> <li>자. <u>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u> 관한 사항</li> <li>차. <u>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環境의 관리에</u> 관한 사항</li> </ol> </li> <li>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li> <li>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li> </ol> <p><b>第14條</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lt;개정 2002.12.30&gt;) ①環境部長官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u>지체없이</u>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lt;改正 1997.12.13, 2002.12.30&gt;</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u>바꾸고자 하는</u>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p> <p><b>제13조</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lt;개정 2002.12.30&gt;)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1999.12.31, 2002.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li> <li>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li> <li>3. 자연환경의 현재상황 및 전망</li> <li>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u>자연環境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li> <li>다. <u>해양環境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라. <u>국토環境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마. <u>대기環境보전에</u> 관한 사항</li> <li>바. <u>수질環境보전에</u> 관한 사항</li> <li>사. <u>상·하수도보급에</u> 관한 사항</li> <li>아. <u>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에</u> 관한 사항</li> <li>자. <u>유해화학물질관리에</u> 관한 사항</li> <li>차. <u>방사능오염물질관리 그밖의 環境관리에</u> 관한 사항</li> </ol> </li> <li>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li> <li>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부대되는 사항</li> </ol> <p><b>제14조</b>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lt;개정 2002.12.30&gt;)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u>바로</u>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보고</u> <u>해야</u> 한다. &lt;개정 1997.12.13, 2002.12.30&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b>第14條의2</b>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綜合的·體系的  추진을 위하여 5年마다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 “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장과의 協의를 거쳐 確定한다. 確定된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2.12.30&gt;</p> <p>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 또는  변경된 中期計劃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通報를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b>第14條의3</b> (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 등) ①市·道知事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당해 市·道의  環境보전계획(이하 “市·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②市·도知事는  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市·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環境부장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市·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2.12.30&gt;</p> <p><b>제14조의4</b>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環境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市·도  環境계획에   따라  管轄구역의  地域적  特性을   고려하여  당해  市·군·구의  環境</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b>제14조의2</b>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된  國家環境종합계획의  綜合적·체계적  推進을  爲하여  5年마다  環境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中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의를   거쳐  確定한다.  確定된  中기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2.12.30&gt;</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   또는   변경된  中기계획을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도知事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도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b>제14조의3</b> (시·도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知事는  國家環境종합계획  및  中기계획에   따라  管轄구역의  地域적  特性을   고려하여  당해  市·도의  環境보전계획(이하 “시·도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lt;개정 2002.12.30&gt;</p> <p>②시·도知事는  第1항의  規定에  依하여  市·도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바로  이를  環境부장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市·도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2.12.30&gt;</p> <p><b>제14조의4</b>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國家  環境종합계획과  中기계획  및  市·도  環境계획에   따라  管轄구역의  地域적  特性을   고려하여  당해  市·군·구의  環境</p>

현행조문	순화조문
<p>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u>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u>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u>지방환경관서의 장</u>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14조의5</b>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토지의 이용</u>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u>토지의 이용</u>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第16條</b>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 環境保全에 對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參與하고 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第16條의2</b> (민간환경단체 등의 環境保全活動 촉진&lt;개정 2002.12.30&gt;) ①</p>	<p>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환경계획”이라 한다)을 <u>수립·시행</u>해야 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u>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u>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군·구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u>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u>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14조의5</b> (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토지이용</u>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u>토지이용</u>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16조</b>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이 환경보전에 대해 <u>깊이 이해하게 하고</u> 아울러 국민 스스로 <u>환경보전에 참여</u>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p> <p><b>제16조의2</b>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lt;개정 2002.12.30&gt;) ①</p>

현행조문	순화조문
<p>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 등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의 제공 등 필요한 施策을 <u>강구하여야 한다.</u></p> <p><b>第17條</b> (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력을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汚染, 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u>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 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 [전문개정 1999.12.31]</p> <p><b>第19條</b> (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u>환경오염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騒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物·植物 및 生態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u> &lt;改正 1999.12.31, 2002.12.30&gt;</p> <p><b>第20條</b> (環境保全을 위한 規制 &lt;개정 1999.12.31&gt;)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騒音, 振動, 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 自然環境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20조의2</b>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u>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u> [본조신설 2002.12.30]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lt;2002.12.30&gt;</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u>마련하여야 한다.</u></p> <p><b>제17조</b>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u>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u>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 31]</p> <p><b>제19조</b>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물·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부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u>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 2002.12.30&gt;</p> <p><b>제20조</b>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lt;개정 1999.12.31&gt;) <u>국가는</u>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31&gt;</p> <p><b>제20조의2</b>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u>바꾸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u> [본조신설 2002.12.30] [중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lt;2002.12.30&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20條의3</b> (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原因을  惹起한  者 스스로  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lt;2002.12.30&gt;</p>	<p><b>제20조의3</b> (경제적 유인수단) 국가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오염의  原因을  끌어들인  사람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0조의2에서 이동 &lt;2002.12.30&gt;</p>
<p><b>第21條의2</b>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b>제21조의2</b>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국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環境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21조의3</b>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政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21조의3</b>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第22條</b>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  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毀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97.12.13, 1999.12.31&gt;</p>	<p><b>제22조</b> (특별종합대책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市·도지사  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市·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97.12.13, 1999.12.31&gt;</p>
<p><b>제25조</b> (사전환경성검토협약)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p>	<p><b>제25조</b> (사전환경성검토협약)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또는 <u>지방환경관서의 장</u>(이하 “협 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협 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 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u>통보</u>하여야 한다.</p> <p><b>제26조</b>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 리·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 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u>통보</u>받은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u>통보</u>하여야 한다.</p> <p><b>제27조</b>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 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 는 <u>아니</u>된다.</p> <p>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 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응</u>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28조</b> (환경영향평가) 국가는 <u>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u>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또는 <u>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u>(이하 “협 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 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협 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 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 을 <u>보고</u>하여야 한다.</p> <p><b>제26조</b>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 리·감독 등) ①제2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 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u>보고</u>받은 관 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b>제27조</b>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 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 는 <u>안</u>된다.</p> <p>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 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따라</u>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p><b>제28조</b> (환경영향평가) 국가는 <u>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u>에 대한 계획 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 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 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p>

현행조문	순화조문
<p>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p> <p><b>第29條</b> (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毀損으로 인한 紛爭 <u>기타</u> 環境關聯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p>第3章 法制 및 財政上の 措置</p> <p><b>第33條</b>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등&lt;개정 1999.12.31&gt;)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u>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b>第34條</b> (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lt;개정 1999.12.31&gt;)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的 措置 <u>기타</u>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u>自發的 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u>&lt;신설 1999.12.31&gt;</p>	<p>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p> <p><b>제29조</b> (분쟁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u>그밖에</u>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lt;개정 1999.12.31&gt;</p> <p>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p> <p><b>제33조</b>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lt;개정 1999.12.31&gt;)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u>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b>제34조</b>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lt;개정 1999.12.31&gt;)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u>그밖에</u>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환경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lt;신설 1999.12.31&gt;</p>
<p>第4章 環境保全諮問委員會</p> <p><b>第37條</b>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u>소속하에</u>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u>소속하에</u>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u>소속하에</u>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1997.12.13, 2002.12.30&gt;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p>	<p>제4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p> <p><b>제37조</b>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u>소속밑에</u>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u>소속밑에</u>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u>소속밑에</u>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1997.12.13, 2002.12.30&g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 환경</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02. 12.30&gt;</p> <p><b>第38條</b> (環境保全協會)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u>소요되는 經費</u>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 充當하며, 國家는 所 費의 一部를 豫算의 범 圍안에서 支援할 數 있다.</p> <p>⑤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에  위반되거나 <u>기타 定款</u>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 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數 있다.&lt;개정 1997.12.13&gt;</p> <p>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  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補 則</p> <p><b>第41條</b>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  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其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數 있다. &lt;개정 1997. 12.13&gt;</p>	<p>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02. 12.30&gt;</p> <p><b>제38조</b> (환경보전협회) ④제1항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u>필요한  경비</u>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充當하며,  국가는  所  費의  一部를  예산의  범  圍안에서  支援할  數 있다.</p> <p>⑤환경부장관은 協會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u>그밖에</u>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  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數 있다.&lt;개정 1997.12.13&gt;</p> <p>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  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規定이  準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b>제41조</b> (권한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環境부장官의   권한은  大統령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其  一部를  市·도  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長에게   위  임할  數 있다. &lt;개정 1997.12.13&gt;</p>

【부록】 대기환경보전법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b>第2條</b>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u>大氣汚染物質</u>”이라 함은 大氣汚染의 原因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의2. “<u>氣候·生態系變化 誘發物質</u>”이라 함은 氣候溫暖化 등으로 生態系의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氣體狀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u>가스</u>”라 함은 物質의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거나 物理的 性質에 의하여 발생하는 氣體狀物質을 말한다.</p> <p>3. “<u>粒子狀物質</u>”이라 함은 物質의 破碎·選別·堆積·移積 기타 機械的 處理 또는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는 固體狀 또는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을 말한다.</p> <p>4. “<u>먼지</u>”라 함은 大氣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p> <p>5. “<u>煤煙</u>”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p> <p>6. “<u>검댕</u>”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가 凝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p> <p>8. “<u>特定大氣有害物質</u>”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大氣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의2. “<u>휘발성유기화합물</u>”이라 함은  탄화수소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b>제2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대기오염물질</u>”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의2. “<u>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u>”이란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u>가스</u>”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p> <p>3. “<u>입자상물질</u>”이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p> <p>4. “<u>먼지</u>”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5. “<u>매연</u>”이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6. “<u>검댕</u>”이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8. “<u>특정대기유해물질</u>”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의2. “<u>휘발성유기화합물</u>”이란 탄화수소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p>

현행조문	순화조문
<p>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9. “<u>대기汚染物質排出施設</u>”이라 함은 대기汚染物質을 大氣에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 “<u>대기汚染防止施設</u>”이라 함은 대기汚染物質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대기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1. “<u>自動車</u>”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2. “<u>添加劑</u>”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の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の 性能을 향상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b>第 3 條</b>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대기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lt;改正 1995. 12.29&gt;</p> <p><b>第 4 條</b>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 등&lt;개정 1999.4.15&gt;)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區域 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lt;改正 1995. 12.29&gt;</p> <p>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9. “<u>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u>”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 “<u>대기오염방지시설</u>”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1. “<u>자동차</u>”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2. “<u>첨가제</u>”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 3 조</b> (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lt;개정 1995. 12.29&gt;</p> <p><b>제 4 조</b>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lt;개정 1999.4.15&gt;)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lt;개정 1995. 12.29&gt;</p> <p>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 7 條의2</b> (大氣汚染警報) ①市·道知事は 大氣汚染도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에 대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地域에 대하여 大氣汚染警報를 發令할 수 있다. 또한, 大氣汚染警報의 發令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市·道知事は 즉시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lt;개정 1999. 4.15&gt;</p> <p>②市·道知事は 大氣汚染警報가 發令된 地域의 大氣汚染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地域안에서 自動車의 運行制限, 事業場의 操業短縮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lt;改正 1997.8.28, 1999.4.15&gt;</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制限·事業場의 操業短縮 등을 命令 받은 者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第 7 條의3</b>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 排出抑制) 政府는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를 줄이기 위하여 國家間의 環境情報와  技術을   교류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氣候·生態系 變化誘發物質의  排出를   줄이기   위한  調査·研究,  回收·再使用   및  代替物質의   개발   등의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p> <p><b>제 7 조의4</b>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 7 조의2</b> (대기오염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lt;개정 1999.4.15&gt;</p> <p>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개정 1997.8.28, 1999.4.15&gt;</p> <p>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 7 조의3</b>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국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技術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p> <p><b>제 7 조의4</b>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 8 條</b> (排出許容基準) ④市·道知事は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lt;新設 1995.12.29&gt;</p> <p><b>第 8 條의2</b> (大氣汚染物質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 ②市·道知事 및 地方環境 官署의 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排出施設 등 大氣 汚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을 調査 하여야 한다.</p> <p>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 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 染物質의 排出源 및 排出量 調査를 위 하여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 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第 8 條의3</b>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氣環境規制地域을 지정·告示함에 있 어서 地形 및 氣象條件 등으로 보아 인접한 地域으로부터 발생된 大氣汚染 物質의 流入이 環境基準의 초과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大氣汚染物質이 발생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の 의견을 들어 그 地域을 大氣環境規制地域의 범 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③大氣環境規制地域을 관할하는 市· 道知事は 당해 地域이 大氣環境規制地 域으로 지정·告示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地域의 環境基準을 달성·유지하 기 위한 計劃(이하 “實踐計劃”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踐計劃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lt;개정 1999. 4.15&gt;</p>	<p><b>제 8 조</b> (배출허용기준)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바로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t;신설 1995.12.29&gt;</p> <p><b>제 8 조의2</b>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 출량 조사)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 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 8 조의3</b>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② 環境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 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의 영 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인 접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 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 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 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 에서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달성·유지 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9.4.15&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⑥環境部長官은 大氣環境規制地域을 管轄하는 市·道知事が 實踐計劃을 수립·施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家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環境관련 國庫補助金の 削減 또는 지원중단 등의 措置를 취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lt;신설 1999.4.15&gt;</p> <p><b>第9條 (總量規制)</b>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 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 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5.12.29&gt;</p> <p><b>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b></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第26條第3項 但書 및 第27條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lt;新設 1997.8.28, 1999.4.15&gt;</p>	<p>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lt;신설 1999.4.15&gt;</p> <p><b>제9조 (총량규제)</b>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5.12.29&gt;</p> <p><b>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b></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lt;신설 1997.8.28, 1999.4.15&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10조의2</b>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u>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질환경보전법 <u>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li> <li>2. 소음·진동규제법 <u>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li> </ol> <p>②환경부장관은 <u>제1항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b>第11條</b> (防止施設의 設置 등) ①<u>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u>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大氣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아니하다.</u>&lt;改正 1995.12.29, 1997.8.28&gt;</p> <p>②<u>第1項 但書의 規定에</u> 의하여 防止施設을 <u>設置하지 아니하고</u>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lt;新設 1995.12.29, 1997.8.28&gt;</p>	<p><b>제10조의2</b>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u>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질환경보전법 <u>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li> <li>2. 소음·진동규제법 <u>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u>각호에</u>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u>각호에</u>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1조</b>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u>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u>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lt;개정 1995.12.29, 1997.8.28&gt;</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u>설치하지 않고</u>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lt;신설 1995.12.29, 1997.8.28&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lt;新設 1995.12.29, 1997.8.28&gt;</p> <p><b>第11條의2</b> (權利·義務의 承繼 등) ③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2條, 第24條 및 第49條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lt;개정 1999.4.15&gt;</p> <p><b>第12條</b>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은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 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環境部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改正 1995.12.29, 1997.8.28, 2000.2.3&gt;</p> <p><b>第13條</b> (共同防止施設의 設置 등) ①産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lt;改正 1995.12.29, 1997.8.28&gt;</p> <p>④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 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5.12.29&gt;</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lt;신설 1995.12.29, 1997.8.28&gt;</p> <p><b>제11조의2</b>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및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자로 본다.&lt;개정 1999.4.15&gt;</p> <p><b>제12조</b>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설계, 시공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gt;</p> <p><b>제13조</b>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 그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lt;개정 1995.12.29, 1997.8.28&gt;</p> <p>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때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15條</b>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lt;改正 1993.12.27, 1999.4.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排出施設 稼動시에 防止施設을 稼動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空氣를 섞어 排出하는 行위</li> <li>2. 防止施設을 거치지 <u>아니하고</u> 汚染物質을 排出할 수 있는 空氣調節裝置·가지排出管 등을 設置하는 行위. 다만, 火災·爆發 등 安全事故豫防을 위하여 다른 法令에서 정한 施設로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li> <li>5.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正當한 사유없이 正當의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u>초과한</u>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行위</li> </ol> <p><b>第15條의2</b> (測定器機의 附着 등) ①事業者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測定器機를 附着하는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當한 운영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器機를 附着한 事業者는 測定器機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排出施設 稼動시에 測定器機를 故意로 作動하지 <u>아니하거나</u> 正當의인 測定이 이루어지지 <u>아니하도록</u> 하는 行위</li> <li>2. 腐蝕·磨耗·故障 또는  훼손되어 正當의인 作動을 <u>하지 아니하는</u> 測定器機를 正當한 사유없이 放置하는 行위</li> </ol>	<p><b>제15조</b>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lt;개정 1993.12.27, 1999.4.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u>오염물질에</u>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行위</li> <li>2. 방지시설을 거치지 <u>않고</u>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行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li> <li>5. <u>그밖에</u>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正當한 사유없이 正當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u>넘은</u>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行위</li> </ol> <p><b>제15조의2</b>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正當한 운영에 必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故意로 작동하지 <u>않거나</u> 正當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u>않도록</u> 하는 行위</li> <li>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正當적인 작동을 <u>하지 않는</u> 측정기기를 正當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行위</li> </ol>
<p><b>第16條</b> (改善命令) 環境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p>	<p><b>제16조</b> (개선명령) 環境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u>改善命令</u>”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lt;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gt;</p> <p><b>第17條</b> (操業停止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 第8條 또는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p> <p>②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으로 인한 住民의 건강상의 危害와 環境上の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gt;</p> <p><b>第19條</b>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大氣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大氣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第10條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を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の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5.12.29, 1997.8.28&gt;</p>	<p>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 제4항의 規定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다<u>고</u>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u>개선명령</u>”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gt;</p> <p><b>제17조</b> (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規定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u>않거나</u>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 제4항의 規定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u>그밖에</u>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b>제19조</b>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規定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u>않거나</u>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u>않고</u>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5.12.29, 1997.8.28&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新設 1995.12.29, 1997.8.28&gt;</p> <p>5. 기타 大氣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關連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定하는 사항</p> <p>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lt;개정 1999.4.15&gt;</p> <p>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에 대한 排出賦課金の 減免은 당해 法律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金額 이내로 한다.&lt;신설 1999.4.15&gt;</p> <p>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lt;新設 1992.12.8, 1995.12.29&gt;</p> <p><b>第20條</b> (許可의 取消 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排出施設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lt;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gt;</p> <p>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p> <p>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p> <p>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p> <p><b>第20條의2</b>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各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lt;신설 1995.12.29, 1997.8.28&gt;</p> <p>5. <u>그밖에</u>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關連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定하는 사항</p> <p>③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定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lt;개정 1999.4.15&gt;</p> <p>④다음 各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規定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金額 이내로 한다.&lt;신설 1999.4.15&gt;</p> <p>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lt;신설 1992.12.8, 1995.12.29&gt;</p> <p><b>제20조</b> (허가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各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gt;</p> <p>1. 사위 <u>그밖에</u>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p> <p>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3. 제15조 제1항 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p> <p><b>제20조의2</b>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各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p>

현행조문	순화조문
<p>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地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lt;改正 1997.8.28, 1999.4.15&gt;</p> <p>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를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p> <p><b>第22條</b> (自家測定) ②測定의  대상·項目·방법  기타  測定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lt;改正 1995.12.29&gt;</p> <p><b>第24條</b> (환경기술인&lt;개정 2004.2.9&gt;) ②환경기술인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gt;</p> <p><b>第26條</b>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環境部長官은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종류별로  黃의  含有許容基準(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定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gt;</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地域  또는  使用施設에  燃料을  供給·販賣하거나  同  地域  또는  施設에서  燃料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을  供給·販賣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p>	<p>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規定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公益에   현저한  地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lt;개정 1997.8.28, 1999.4.15&gt;</p> <p>6. <u>그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環境부령으로  定한다.</p> <p><b>제22조</b> (자가측정)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u>그밖에</u>  측정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부령으로  定한다.&lt;개정 1995.12.29&gt;</p> <p><b>제24조</b> (환경기술인&lt;개정 2004.2.9&gt;)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環境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2.12.8, 1995.12.29, 2004.2.9&gt;</p> <p><b>제26조</b> (연료용  유류  및  그밖에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u>그밖에</u>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定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③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使用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 시설로서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lt;新設 1999.4.15, 2002.12.26&gt;</p> <p><b>第27條</b> (燃料의 製造·사용 등의 規制)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燃料의 사용으로 인한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당해 燃料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lt;改正 1995.12.29, 1997.8.28&gt;</p> <p><b>第28條</b> (飛散먼지의 規制)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의 發生抑制를  위한 施設의 設置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하지 <u>아니하거나</u> 그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 1997. 8.28&gt;</p> <p><b>第28條의2</b>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lt;개정 2002.12.26&gt;) ①特別對策地域 또는 第8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氣環境規制地域(第8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踐計劃이 告示된  경우  에  한하며,  이하 “大氣環境規制地域”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市·道知事の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申告</p>	<p>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lt;신설 1999.4.15, 2002.12.26&gt;</p> <p><b>제27조</b>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lt;개정 1995.12.29, 1997.8.28&gt;</p> <p><b>제28조</b> (비산먼지의 규제)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u>않거나</u>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 1997.8.28&gt;</p> <p><b>제28조의2</b>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lt;개정 2002.12.26&gt;)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p>

현행조문	순화조문
<p>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4.15, 2002.12.26, 2004.2.9&gt;</p> <p>第4章 自動車排出가스의 規制</p> <p><b>第31條</b> (製作車の 排出許容基準 등) ① 自動車を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당해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에 한한다. 이하 “排出가스”라 한다)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許容基準(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環境部令을 定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製作車の 排出가스의 排出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期間(이하 “排出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p> <p><b>第31條의2</b> (技術開發 등에 대한 지원 &lt;개정 1999.4.15&gt;) ①國家는 自動車로 인한 大氣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 등의 技術開發 또는 製作에  필요한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다.&lt;개정 1999.4.15&gt;</p> <p><b>第32條</b>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 製作者는 自動車を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당해 自動車の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가스  보증기간동안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gt;</p> <p>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p>	<p>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4.15, 2002.12.26, 2004.2.9&gt;</p> <p>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p> <p><b>제31조</b>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가 제작한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p> <p><b>제31조의2</b>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lt;개정 1999.4.15&gt;)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과 관련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1999.4.15&gt;</p> <p><b>제32조</b>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 제작자는 그가 제작하고자 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p>

현행조문	순화조문
<p>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lt;改正 1995.2.29&gt;</p> <p><b>第33條</b> (製作車排出許容基準檢査 등)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不合格된 自動車의 製作者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와 동일한 <u>조건하에서</u>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기간동안 生産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自動車의 販賣 또는 出庫停止를 명할 수 있다.&lt;신설 1999.4.15&gt;</p> <p><b>第34條</b> (缺陷確認檢査 및 缺陷是正) ① <u>自動車製作者는 排出가스 보증기간내의 運行중인 自動車의 排出가스의 排出이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의 檢査(이하 “缺陷確認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u> &lt;改正 1995.12.29&gt;</p> <p>②缺陷確認檢査의 대상 自動車의 선정 기준, 檢査方法·檢査節次·檢査基準, 判定방법, 檢査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5.12.29&gt;</p> <p>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u>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매년 同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缺陷確認檢査를 받아야 할 對象車種을 決定·告示하여야 한다.</u>&lt;新設 1995.12.29&gt;</p> <p>④環境部長官은 缺陷確認檢査의 결과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自動車製作者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缺陷事實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缺陷是正命令을 생략할 수 있다.&lt;新設 1995.2.29&gt;</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받거나 스스로 自動車의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自動車製作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自動車의</p>	<p>을 받아야 한다.&lt;改正 1995.12.29&gt;</p> <p><b>제33조</b>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 등)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u>조건에서</u>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lt;신설 1999.4.15&gt;</p> <p><b>제34조</b>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u>보증기간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u>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5.12.29&gt;</p> <p>②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5.12.29&gt;</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u>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u>&lt;신설 1995.2.29&gt;</p> <p>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어떤 차종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lt;신설 1995.2.29&gt;</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p>

현행조문	순화조문
<p>缺陷是正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新設 1995.12.29&gt;</p> <p>⑥環境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 또는 스스로 缺陷을 是正하고자 한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lt;改正 1995.12.29&gt;</p> <p>⑦排出가스保證期間내에 있는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運行者는 環境部長官이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排出가스관련부품이 正常의인 性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製作者에게 그 缺陷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lt;新設 1992.2.8, 1995.12.29, 1997.12.13&gt;</p> <p>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要求를 받은 自動車製作者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缺陷을 是正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製作者가 自身의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新設 1992.12.8, 1995.12.29&gt;</p> <p><b>第35條</b> (認證의 取消)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lt;改正 1992.11.28, 1995.12.29, 1997.8.28, 1999.4.15&gt;</p> <p>1.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p> <p><b>第36條</b> (運行車排出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排</p>	<p>결합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t;신설 1995.12.29&gt;</p>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결합시정계획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결합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합을 시정하고자 하여 결합시정명령을 생략 받은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합시정을 명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p> <p>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lt;신설 1992.12.8, 1995.12.29, 1997.2.13&gt;</p> <p>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합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바로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합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lt;신설 1992.12.8, 1995.12.29&gt;</p> <p><b>제35조</b>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lt;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gt;</p> <p>1. 사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b>제36조</b>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출가스許容基準(이하 “<u>運行車排出許容基準</u>”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u>運行하거나</u> <u>運行하게</u> 하여야 한다.&lt;改正 1992.12.8&gt;</p> <p><b>第36條의2</b> (無公害·低公害自動車の 運行 등)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公害·低公害自動車の 보급 및 排出가스低減裝置의 附着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u>1</u>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lt;개정2002.12.26&gt;</p> <p><b>第37條</b> (運行車の 隨時點檢)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運行車の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 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lt;改正 1993.12.27, 2002.12.26&gt;</p> <p>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u>不應하거나</u>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lt;改正 1995.12.29&gt;</p> <p><b>제37조의3</b>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lt;개정 2004.12.31&gt;</p> <p><b>제37조의5</b>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가스허용기준(이하 “<u>운행차배출허용기준</u>”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u>운행되도록</u> 하여야 한다.&lt;개정 1992.12.8&gt;</p> <p><b>제36조의2</b>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lt;개정2002.12.26&gt;</p> <p><b>제37조</b>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1993.12.27, 2002.12.26&gt;</p> <p>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u>따르지 않거나</u>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lt;개정 1995.12.29&gt;</p> <p><b>제37조의3</b>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u>그렇지 않다</u>. &lt;개정 2004.12.31&gt;</p> <p><b>제37조의5</b>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u>아니</u>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u>경과</u> 되지 아니한 자</p> <p>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u>경과</u>되지 아니한 자</p> <p>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u>경과</u>되지 아니한 자</p> <p>6. 임원중 <u>제1호 내지 제5호의 1</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b>제37조의6</b>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u>각호의 1</u>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b>第40條</b>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lt;개정 2002.12.26&gt;) ①<u>第38條第3項의 規定</u>에 의한 運行車의 改善結果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lt;改正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gt;</p>	<p>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u>않</u>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u>지나</u>지 아니한 자</p> <p>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u>지나</u>지 아니한 자</p> <p>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u>지나</u>지 아니한 자</p> <p>6. 임원중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b>제37조의6</b>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u>각호</u>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b>제40조</b>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lt;개정 2002.12.26&gt;) ①<u>제38조 제3항의 規定</u>에 의한 運行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lt;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gt;</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④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檢査手 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승으로 정한다. &lt;改正 1995.12.29, 2002.12.26&gt;</p> <p><b>제40조의2</b>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b>第40條의3</b> (登録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録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録을 取消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録한 경우</li> <li>4. 1년에 2회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li> </ol>	<p>④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檢査수수료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5.12.29, 2002.12.26&gt;</p> <p><b>제40조의2</b>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u>않기</u>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중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b>제40조의3</b>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u>6개월 이내</u>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u>6개월 이내</u>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사위 <u>그밖에</u>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li> <li>4. 1년에 <u>2번 이상</u>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6. 登録後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u>아니하거나</u> 계속하여 2年 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p> <p>7. <u>기타</u>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p> <p><b>第41條</b> (自動車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lt;改正 1995.12.29&gt;            ②누구든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의 製造기준에 <u>적합하지 아니하게</u> 製造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u>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環境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lt;신설 2002.12.26&gt;            ③環境部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 <u>현저하게 有害한 物質</u>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lt;改正 1995.12.29&gt;</p>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補則</p> <p><b>第48條</b> (환경기술인 등의 教育&lt;개정 2004.2.9&gt;) ①환경기술인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u> &lt;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gt;</p> <p><b>第49條</b> (보고 및 檢査 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p>	<p>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u>않거나</u>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p> <p>7. <u>그밖에</u>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b>제41조</b>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u>첨가제(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를 만들하고자 하는 자는 環境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②누구든지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의 製造기준에 <u>적합하지 않게</u> 製造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u>사용하여서는 안된다.</u>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環境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燃料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 &lt;신설 2002.12.26&gt;            ③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環境상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u>사람의 몸에 현저하게 해로운 물질</u>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lt;개정 1995.12.29&gt;</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b>제48조</b> (환경기술인 등의 教育&lt;개정 2004.2.9&gt;)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環境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그 해당 자에 대하여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u> &lt;개정 1992.12.8, 1995.12.29, 2000.2.3, 2004.2.9&gt;</p> <p><b>제49조</b> (보고 및 檢査 등) ①환경부장관은 環境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u>송하거나</u>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u>제13조제4항의</u>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u>제15조의2제7항에</u>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3號·第4號·第4號의2·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lt;改正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gt;</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新設 1992.12.8, 1995.12.29, 2002.12.26&gt;</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b>第50條</b>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p>	<p>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u>하</u>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u>제13조 제4항의</u>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u>제15조의2 제7항에</u>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gt;</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lt;신설 1992.12.8, 1995.12.29, 2002.12.26&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p> <p><b>제50조</b>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p>

현행조문	순화조문
<p>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は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이에 응하여야 한다.</u> &lt;改正 1995.12.29, 2002.12.26&gt;</p> <p>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u>자동차의 등록·검사·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u></p> <p>5. <u>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u></p> <p><b>第51條</b> (行政處分の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u>命令에 위반한 행위</u>에 대한 行政處分の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lt;改正 1995.12.29&gt;</p> <p><b>第52條</b>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u>各號의 1</u>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4.15, 2000.2.3, 2002.12.26&gt;</p> <p>1. <u>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u></p> <p>3. <u>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u></p> <p>5. <u>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u></p> <p><b>第54條</b>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環境部所屬 環境研究院의 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lt;改正 1995.12.29&gt;</p> <p><b>제54조의2</b>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u>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p>	<p>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u>이에 따라야 한다.</u> &lt;개정 1995.12.29, 2002.12.26&gt;</p> <p>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u>자동차등록·검사·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u></p> <p>5. <u>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b>제51조</b>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u>명령을 위반한 행위</u>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5.12.29&gt;</p> <p><b>제52조</b>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4.15, 2000.2.3, 2002.12.26&gt;</p> <p>1. 제11조 제3항·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의 <u>규정에</u>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p> <p>3. 제26조 제4항의 <u>규정에</u>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p> <p>5. 제34조 제4항 또는 제6항의 <u>규정에</u> 의한 결함시정명령</p> <p><b>제54조</b> (권한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gt;</p> <p><b>제54조의2</b>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3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u>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罰則</p> <p><b>第55條</b> (罰則)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lt;改正 1991. 5.31, 1992.12.8, 1993.12.27, 1995. 12.29, 1999.4.15, 2002.1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u>받지 아니하거나 詐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u></li> <li>1의2. 第15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li> <li>1의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하거나 <u>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u></li> <li>2.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u>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 製作한 者</u></li> <li>3.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을 <u>받지 아니하고</u> 自動車를 製作한 者</li> <li>4. 第41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規定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者</li> </ol> <p><b>第55條의2</b> (罰則)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lt;개정 1999.4.15, 2002.12.26, 2004.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u>하지 아니하거나</u> 허위로 申告를 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li> <li>4. 第1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li> <li>5.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器機의 附着 등의 措置를 <u>하지 아니한 者</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b>제55조</b> (벌칙)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1. 5.31, 1992.12.8, 1993.12.27, 1995. 12.29, 1999.4.15, 2002.1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u>받지 않거나</u>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li> <li>1의2.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li> <li>1의3. 제17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u>동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li> <li>2. 제31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u>적합하지 않게</u> 자동차를 제작한 자</li> <li>3. 제32조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인증을 <u>받지 않고</u> 자동차를 제작한 자</li> <li>4.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規定을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li> </ol> <p><b>제55조의2</b> (벌칙)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9. 4.15, 2002.12.26, 2004.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않거나</u>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li> <li>4.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li> <li>5. 제15조의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u>하지 않은</u> 자</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6. <u>第15條의2第3項第1號</u> 또는 <u>第3號</u>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p> <p>6의2. <u>제26조제4항</u>의 規定에 의한 연료 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者</p> <p>7. <u>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의 規定에 의한 施設改善 등의 措置命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8. <u>第34條第4項 本文</u> 또는 <u>第6項</u>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을 위반한 者</p> <p>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u>제37조의4제1항</u>의 規定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 검사업무를 한 者</p> <p>10. <u>제37조의8제1항</u>의 規定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u>지정받지 아니하고</u> 정비업무를 한 者</p> <p><b>第56條 (罰則)</b> 다음 <u>各號</u>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lt;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12.31&gt;</p> <p>1의2. <u>第14條</u>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u>하지 아니하고</u> 操業한 者</p> <p>1의3. <u>第15條의2第6項</u>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을 위반한 者</p> <p>2. <u>第32條第2項</u>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證을 <u>받지 아니하고</u> 自動車를 製作한 者</p> <p>3. <u>제37조의4제2항</u>의 規定을 위반하여 동항 <u>各호</u>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p> <p>3의2. <u>제37조의6</u>의 規定에 의한 업무 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者</p> <p>3의3. <u>제37조의8제3항제1호</u> 또는 <u>제2호</u>의 規定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者</p> <p>3의4. <u>제37조의9</u>의 規定에 의한 업무 정지명령을 위반한 者</p> <p>4. <u>제41조제2항</u> 본문의 規定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者</p>	<p>6. <u>제15조의2 제3항 제1호</u> 또는 <u>제3호</u>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p> <p>6의2. <u>제26조 제4항</u>의 規定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者</p> <p>7. <u>제28조의2 제7항(제28조의3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의 規定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8. <u>제34조 제4항</u> 본문 또는 <u>제6항</u>의 規定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者</p> <p>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u>제37조의4 제1항</u>의 規定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 검사업무를 한 者</p> <p>10. <u>제37조의8 제1항</u>의 規定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u>지정받지 않고</u> 정비업무를 한 者</p> <p><b>제56조 (벌칙)</b> 다음 <u>各호</u>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12.31&gt;</p> <p>1의2. <u>제14조</u>의 規定에 위반하여 신고를 <u>하지 않고</u> 조업한 者</p> <p>1의3. <u>제15조의2 제6항</u>의 規定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者</p> <p>2. <u>제32조 제2항</u>의 規定에 의한 변경 인증을 <u>받지 않고</u> 자동차를 제작한 者</p> <p>3. <u>제37조의4 제2항</u>의 規定을 위반하여 동항 <u>各호</u>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p> <p>3의2. <u>제37조의6</u>의 規定에 의한 업무 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者</p> <p>3의3. <u>제37조의8 제3항 제1호</u> 또는 <u>제2호</u>의 規定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者</p> <p>3의4. <u>제37조의9</u>의 規定에 의한 업무 정지명령을 위반한 者</p> <p>4. <u>제41조 제2항</u> 본문의 規定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者</p>



현행조문	순화조문
<p>5. 제41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規制에 위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 販賣한 者</p> <p><b>第57條 (罰則)</b>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lt;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2.9&gt;</p> <p>1의2. 第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正當한 사유없이 위반한 者</p> <p>1의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染物質을 測定하지 아니한 者 또는 測定結果를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보존한 者</p> <p>1의4. 第15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기술인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任命(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3.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燃料使用制限措置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p> <p>4.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 먼지 發生施設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p> <p>4의2.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u>신고</u>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者</p> <p>4의3. 제28조의2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者</p> <p>6의2. 제36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u>이행</u>하지 아니한 者</p> <p>7.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을 不應하거나 기피·방해한 者</p> <p>7의2. 제37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한 検査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8.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받고 이에 不應한 者</p>	<p>5. 제41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規制에 위반하여 燃料 또는 첨가제를 製造하거나 판매한 者</p> <p><b>제57조 (벌칙)</b>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2004.2.9&gt;</p> <p>1의2. 제7조의2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正當한 사유없이 위반한 者</p> <p>1의3. 제22조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染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者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者</p> <p>1의4. 제15조의2 제5항의 規定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者</p> <p>2. 제24조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者</p> <p>3. 제27조의 規定에 의한 燃料사용제한조치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p> <p>4. 제28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비산 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p> <p>4의2.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u>신고</u>를 하지 <u>않고</u>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者</p> <p>4의3. 제28조의2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者</p> <p>6의2. 제36조의2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u>이행</u>하지 않은 者</p> <p>7. 제37조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者</p> <p>7의2. 제37조의3 제3항의 規定에 의한 検査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者</p> <p>8. 제38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u>따르지</u> 않은 者</p>

현행조문	순화조문
<p>9. <u>第49條第1項</u>의 規定에 의한 關係 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b>第58條</b> (罰則) 다음 <u>各號</u>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4.2.9&gt;</p> <p>6. <u>第24條第4項</u>의 規定에 의한 環境 技術인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 技術인의  요청을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p> <p>6의2. <u>第28條第1項</u>의 規定에 의한 飛散 먼지發生抑制施設의 設置 및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다만, 시멘트·석탄·土砂 등 粉體狀 物質을 運送한 者를 제외한다.</p> <p>7. <u>第28條第2項</u>의 規定에 의한 飛散 먼지發生抑制施設設置 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p> <p><b>第59條</b> (過怠料) ① 다음 <u>各號</u>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lt;신설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2004.12.31&gt;</p> <p>2. <u>第15條第1項第3號</u> 또는 <u>同項第4號</u>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한 者</p> <p>3. <u>第15條第2項</u>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등의 運營狀況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記錄한 者</p> <p>3의2. <u>第15條의2第3項第2號</u>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者</p> <p>3의3. <u>第15條의2第4項</u>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p> <p>4. <u>第26條第3項</u>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黃舎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을 供給·販賣하거나 사용한 者</p> <p>5. <u>第28條第1項</u>의 規定에 의한 飛散 먼지의 發生抑制施設의 設置 및 필</p>	<p>9. <u>제49조 제1항</u>의 規定에 의한 關係 公務員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b>제58조</b> (벌칙)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999.4.15, 2004.2.9&gt;</p> <p>6. <u>제24조 제4항</u>의 規定에 의한 環境 技術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環境 技術인의  요청을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p> <p>6의2. <u>제28조 제1항</u>의 規定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必要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物質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p> <p>7. <u>제28조 제2항</u>의 規定에 의한 비산 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p> <p><b>제59조</b> (과태료) ①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신설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2004.12.31&gt;</p> <p>2. <u>제15조 제1항 제3호</u> 또는 동항 <u>제4호</u>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한 자</p> <p>3. <u>제15조 제2항</u>의 規定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運營상황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p> <p>3의2. <u>제15조의2 제3항 제2호</u>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자</p> <p>3의3. <u>제15조의2 제4항</u>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p> <p>4. <u>제26조 제3항</u>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p> <p>5. <u>제28조 제1항</u>의 規定에 의한 비산 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土砂等 粉體狀 物質을 運送한 者</p> <p>5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第3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 是正 結果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p> <p>7.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8. 제37조의8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2004.2.9&gt;</p> <p>1.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환경 기술인 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6.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p> <p>8. 第36條의 規定을  위반한  自動車의 所有者</p> <p>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p> <p>8의3.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9.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p> <p>10. 第4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환경 기술인  등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p> <p>11.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p>	<p>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p> <p>5의2. 제28조의2 제2항 또는 제2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p> <p>6.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 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p> <p>7. 제3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p> <p>8. 제37조의8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p>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2004.2.9&gt;</p> <p>1.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p> <p>4.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p> <p>6.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p> <p>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p> <p>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p> <p>8의3.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p> <p>9.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자</p> <p>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 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p> <p>11.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lt;개정 1993.12.27, 1995.12.29, 2002.12.26&gt;</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체없이</u>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lt;개정 1993.12.27, 1995.12.29, 2002.12.26&gt;</p> <p>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u>아니하고</u>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lt;개정 1993.12.27&gt;</p> <p><b>第60條</b>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u>기타</u>의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u>第55條 내지 第58條</u>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1993.12.27, 1995.12.29, 2002.12.26&gt;</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바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개정 1993.12.27, 1995.12.29, 2002.12.26&gt;</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u>않고</u>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lt;개정 1993.12.27&gt;</p> <p><b>제60조</b>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u>그 밖의</u>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55조부터 제58조까지</u>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부록】 수질환경보전법**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u>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점오염원</u>”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li> <li>2. “<u>비점오염원</u>”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li> <li>3. “<u>기타 수질오염원</u>”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u>아니하는</u>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u>폐수</u>”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li> <li>5. “<u>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u>”라 함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li> <li>6. “<u>불투수층(不透水層)</u>”이라 함은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u>양호한 수질환경이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점오염원</u>”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li> <li>2. “<u>비점오염원</u>”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li> <li>3. “<u>기타 수질오염원</u>”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u>이외에</u>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u>폐수</u>”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li> <li>5. “<u>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u>”란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li> <li>6. “<u>불투수층(不透水層)</u>”이란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7.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p> <p>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p> <p>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p> <p>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p> <p>14.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p>	<p>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p> <p>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p> <p>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p> <p>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호소(湖沼)”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p> <p>14.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15.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b>제 4 조</b>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p> <p><b>제 5 조</b>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b>제 6 조</b> (민간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15.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b>제 4 조</b>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대상·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p> <p><b>제 5 조</b>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 6 조</b> (민간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 7 조</b>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총 칙</p> <p><b>제 10 조</b>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측정항목·조사시기 및 횡수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 13 조</b> (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 14 조</b>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p>	<p><b>제 7 조</b>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사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시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판매하는 자 또는 그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총 칙</p> <p><b>제 10 조</b>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측정항목·조사시기 및 횡수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b>제 13 조</b> (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 14 조</b>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15조</b>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b>제16조</b>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17조</b>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p>	<p>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15조</b>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②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 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b>제16조</b>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행정기관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17조</b>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p>

현행조문	순화조문
<p>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p> <p>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②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수질유해물질</li> <li>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li> <li>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li> <li>6.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li> </ol> <p><b>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b>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u>즉시</u> 통지하여야 한다.</p>	<p>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p> <p>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p> <p>②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수질유해물질</li> <li>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li> <li>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li> <li>6. 「원자력법」 제2조 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li> <li>7.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li> </ol> <p><b>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b>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u>바로</u>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제 2 절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p> <p><b>제24조</b>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②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u>통보</u>하여야 한다.</p> <p><b>제27조</b> (환경부장관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u>수립하지 아니하는</u>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을 <u>수행하지 아니하는</u>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p>제 2 절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p> <p><b>제24조</b>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②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u>그밖에</u>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u>그밖에</u> 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6. <u>그밖에</u>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u>알려</u>야 한다.</p> <p><b>제27조</b> (환경부장관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u>수립하지 않는</u>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을 <u>수행하지 않는</u>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u>그밖에</u> 필요한 조치</p>
<p>제 3 절 호소의 수질보전</p> <p><b>제28조</b>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u>호소수의 이용상황</u>, 오염원의 분포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p>	<p>제 3 절 호소의 수질보전</p> <p><b>제28조</b>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u>호소물의 이용상황</u>, 오염원의 분포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p> <p><b>제29조</b>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30조</b>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31조</b>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점오염원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b>제34조</b>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p> <p><b>제29조</b>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30조</b>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해서는 안된다.</p> <p><b>제31조</b>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거두어 가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두어진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점오염원의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p> <p><b>제34조</b>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제3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u>아니하고</u>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35조</b>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u>아니하고</u>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그</u>러하지 <u>아니하다</u>.</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u>아니하고</u>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b>제36조</b>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u>배출하지 않고</u>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35조</b>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u>않고</u>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u>않고</u>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b>제36조</b>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u>그 밖에</u>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b>제37조</b>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u>제39조 내지 제41조의</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기간이 경과한</u>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p>	<p>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u>그밖에</u>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b>제37조</b>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u>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기간이 지난</u>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p>

현행조문	순화조문
<p><u>조제9항의</u>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b>제38조</b>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u>유입하지 아니하고</u>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u>유입하지 아니하고</u>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li> <li>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u>거치지 아니하고</u>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u>거치지 아니하고</u>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li> <li>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u>배출되지 아니하는</u>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그 밖에</u>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4. <u>그 밖에</u>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li> </ol> <p>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p><u>조 제9항의</u>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b>제38조</b>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u>유입하지 않고</u>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u>유입하지 않고</u>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li> <li>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u>거치지 않고</u>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u>거치지 않고</u>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li> <li>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u>배출되지 않는</u>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그밖에</u>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4. <u>그밖에</u>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li> </ol> <p>②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u>재이용하지 아니하고</u>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p> <p><b>제39조</b>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b>제40조</b>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u>이행하지 아니하거나</u>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b>제41조</b>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p>	<p>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안된다</u>.</p>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u>다시</u>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u>다시</u> 이용하지 <u>않고</u> 다른 배출시설에서 <u>다시</u> 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p> <p><b>제39조</b>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b>제40조</b>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u>이행하지 않거나</u>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b>제41조</b>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u>아니 하거나</u> 신고·변경신고를 <u>하지 아니하 고</u>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 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기본배출부과금</p> <p>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u>제12조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u>초과하는 경우</u></p> <p>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u>제12조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u>초과하는 경우</u></p> <p>2. 초과배출부과금</p> <p>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u>초과하여</u> 배출되는 경우</p> <p>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6. <u>그 밖에</u>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p> <p>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u>제12조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u>사업자를 제외한다</u>.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p>	<p>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u>않거나</u> 신고·변경신고를 <u>하지 않고</u>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기본배출부과금</p> <p>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u>제12조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u>넘는 경우</u></p> <p>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u>제12조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u>넘는 경우</u></p> <p>2. 초과배출부과금</p> <p>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u>넘어</u> 배출되는 경우</p> <p>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6. <u>그밖에</u>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p> <p>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u>제12조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u>사업자는 제외된다</u>.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p> <p><b>제42조</b> (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li> <li>2.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한 때</li> <li>3.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li> <li>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li> <li>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li> </ol> <p><b>제43조</b>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p> <p><b>제42조</b> (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li> <li>2.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한 때</li> <li>3.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li> <li>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li> <li>5.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li> </ol> <p><b>제43조</b>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li> </ol> <p>②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④제4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b>제44조</b>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u>하지 아니하고</u>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u>지체 없이</u>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u>지체 없이</u>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시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p>	<p>④제4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b>제44조</b>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u>하지 않고</u>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u>바로</u>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u>바로</u>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시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46조</b>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p> <p><b>제47조</b> (환경기술인)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6조</b>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p> <p><b>제47조</b> (환경기술인)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2 절 폐수종말처리시설</p>	<p>제 2 절 폐수종말처리시설</p>
<p><b>제48조</b>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u>그 밖에</u>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p>	<p><b>제48조</b>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u>그밖에</u>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9조</b>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b>제50조</b>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p>	<p>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9조</b>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b>제50조</b>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 <p>1.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p> <p>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u>적합하지 아니하게</u>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b>제52조</b>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u>」 및 「하수도법」에 의한다.</p> <p><b>제53조</b>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u>그 밖에</u>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u>그 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중 <u>제1항제1호에</u>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u>제1항제2호에</u>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u>제1항제2호의</u> 경우에 한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li> </ol>	<p>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p> <p>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u>적합하지 않게</u>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b>제52조</b>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u>」 및 「<u>하수도법</u>」에 의한다.</p> <p><b>제53조</b>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u>그밖에</u>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u>그밖에</u>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중 <u>제1항 제1호에</u>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u>제1항 제2호에</u>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u>제1항 제2호의</u> 경우에 한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을 <u>지키지 아니한</u>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b>제54조</b>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u>강우유출수로</u>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u>대하여는</u>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u>대하여는</u>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지정목적·해제 연월일·해제사유 <u>그 밖에</u>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56조</b>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u>제55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u>통보</u>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5. <u>그 밖에</u>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p>	<p>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을 <u>지키지 않은</u>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b>제54조</b>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u>강우유출물로</u>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u>대해서는</u>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u>대해서는</u>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지정목적·해제 연월일·해제사유 <u>그밖에</u>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56조</b>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u>제55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u>보고</u>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5. <u>그밖에</u>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58조</b> (농약잔류허용기준)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u>초과하거나 초과할</u>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응하여야 한다</u>.</p> <p>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p> <p><b>제60조</b>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u>확인</u>하여야 한다.</p> <p>②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u>적합하지 아니하다</u>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따라야 한다</u>.</p> <p><b>제58조</b> (농약잔류허용기준)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u>넘거나 넘을</u>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u>따라야 한다</u>.</p> <p>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p> <p><b>제60조</b> (그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그밖에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u>확인</u>해야 한다.</p> <p>②그밖에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u>적합하지 않다</u>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u>기타</u>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⑤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u>기타</u>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61조</b>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①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u>그밖에</u>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⑤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u>그밖에</u>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61조</b>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①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u>안된다</u>.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제 6 장 폐수처리업</p>	<p>제 6 장 폐수처리업</p>
<p><b>제63조</b>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u> 자</li> <li>3.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u>경과</u> 되지 <u>아니한</u> 자</li> <li>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del>아니</del>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u>경과되지 아니한</u> 자</li> <li>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b>제63조</b>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않은</u> 자</li> <li>3.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u>지나지 않은</u> 자</li> <li>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지역의 실행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u>받지 않기로</u> 확정된 후 2년이 <u>지나지 않은</u> 자</li> <li>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b>제64조</b>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u>6월 이내</u>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제64조</b>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u>6개월 이내</u>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1.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u>제63조제5호</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u>6월 이내</u>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2. 거짓 <u>그 밖의</u>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4. 1년에 <u>2회 이상</u>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6.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u>아니하거나</u>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7. <u>그 밖에</u>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b>제65조</b> (권리·의무의 승계) ①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u>제63조제1호 내지 제4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u>그 밖에</u>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b>제66조</b>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u>제62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u>그 밖의</u>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p>	<p>1.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u>제63조 제5호</u>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u>6개월 이내</u>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p>2. 거짓 <u>그밖에</u>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4. 1년에 <u>2번 이상</u>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6.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u>않거나</u>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p> <p>7. <u>그밖에</u>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b>제65조</b> (권리·의무의 승계) ①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u>제6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u>그밖에</u>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66조</b>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u>제62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u>그 밖의</u>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 7 장 보 칙</p>	<p>제 7 장 보 칙</p>
<p><b>제68조</b>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li> <li>2.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li> <li>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li> <li>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u>기타</u>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li> <li>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li> </ol>	<p><b>제68조</b>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li> <li>2.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li> <li>3.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li> <li>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u>그밖에</u>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li> <li>5.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6.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73조</b> (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li> <li>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li> <li>3.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li> <li>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li> </ol> <p><b>제74조</b>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b>제75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li> </ol>	<p>6.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b>제73조</b> (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li> <li>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li> <li>3.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li> <li>4.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li> </ol> <p><b>제74조</b>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b>제75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u>니</u>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2. <u>제33조제5항</u>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3. <u>제38조제2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b>제76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33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아니</u>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2. <u>제38조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5. <u>제50조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b>제77조</b> (벌칙) <u>제15조제1항제1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78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12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u>제15조제1항제1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p> <p>3. <u>제15조제1항제2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p> <p>4. <u>제15조제1항제4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p>	<p><u>않</u>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2. <u>제33조 제5항</u>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3. <u>제38조 제2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b>제76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33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않</u>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2. <u>제38조 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5. <u>제50조 제1항</u>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b>제77조</b> (벌칙) <u>제15조 제1항 제1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78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제12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u>제15조 제1항 제1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p> <p>3. <u>제15조 제1항 제2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p> <p>4. <u>제15조 제1항 제4호</u>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p>

현행조문	순화조문
<p>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p> <p>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 개시 신고를 하지 <u>아니하고</u> 조업한 자</p> <p>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u></p> <p>1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아니하고</u>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p> <p>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p>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u>하지 아니하고</u> 폐수처리업을 한 자</p> <p>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5.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p> <p>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p> <p>7.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 개시 신고를 <u>하지 않고</u> 조업한 자</p> <p>8.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9.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0.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않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u></p> <p>11.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12.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u>하지 않고</u>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p> <p>13. 제60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p>14.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u>하지 않고</u> 폐수처리업을 한 자</p> <p>15.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b>제79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2. 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p>	<p><b>제79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2. 제6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3.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80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u>아니한 자</u>(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li> <li>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li> </ol> <p><b>제81조</b>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u>그 밖에</u>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b>제82조</b>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u>아니한 자</u></li> <li>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u>아니하거나</u>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u>하지 아니한 자</u></li> <li>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li> </ol> <p>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li> <li>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u>아니하거나</u>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li> <li>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u>하지 아니한 자</u></li> </ol>	<p><b>제80조</b>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는 자는</u>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u>않은 자</u>(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li> <li>제4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li> </ol> <p><b>제81조</b>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u>그밖에</u>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u>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b>제82조</b>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는 자는</u>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li> <li>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u>않거나</u>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u>하지 않은 자</u></li> <li>제6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li> </ol> <p>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li> <li>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u>않거나</u>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li> <li>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u>하지 않은 자</u></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4.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u>그 밖에</u> 필요한 조치를 하지 <u>아니한</u> 자</p> <p>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li> <li>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li> <li>3.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한</u> 자</li> <li>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u>아니한</u> 자</li> <li>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u>아니한</u> 자</li> <li>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u>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u>아니하거나</u> 허위로 제출한 자</li> </ol>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u>지체 없이</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u>제기하지 아니하고</u> 과태료를 납부하지 <u>아니한</u>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4.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u>그밖에</u> 필요한 조치를 하지 <u>않은</u> 자</p> <p>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는</u>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li> <li>2.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li> <li>3.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u>않은</u> 자</li> <li>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u>않은</u> 자</li> <li>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u>않은</u> 자</li> <li>6.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u>않거나</u>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u>않거나</u> 허위로 제출한 자</li> </ol>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u>바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u>않고</u> 과태료를 <u>납부하지 않은</u>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부록】 자연환경보전법**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li> <li>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li> <li>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li> <li>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 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li> <li>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자연환경이 보존 관리됨으로서 현재의 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까지 이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li> <li>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형성된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등의 상태를 말한다.</li> <li>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들의 생존조건과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현상계 또는 그 기능계를 말한다.</li> <li>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 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 5 조</b> (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 5 조</b> (자연보호운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등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는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 7 조</b> (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 7 조</b> (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b>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u>제8조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u>지체없이</u>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u>통보</u> 하여야 한다.</p>	<p><b>제10조</b>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u>제8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u>바로</u>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u>알려야</u> 한다.</p>
<p><b>제13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u>지체없이</u>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13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u>바로</u>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15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된다</u>.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b>제15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u>해서는 않된다</u>.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5. <u>그 밖에</u>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b>제16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u>그 밖의</u>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p> <p>4. <u>그 밖에</u>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b>제17조</b>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u>제15조제1항의</u>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b>제22조</b> (자연유보지역)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u>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 <u>그밖에</u>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⑤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u>제2항 제3호의</u>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b>제16조</b>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해서는</u> <u>않된다</u>.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u>그렇지 않다</u>.</p> <p>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u>그밖에</u>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p> <p>4. <u>그밖에</u>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b>제17조</b> (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u>제15조 제1항의</u>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b>제22조</b> (자연유보지역)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u>제1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u>그렇지 않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24조</b>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 <u>그 밖에</u>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26조</b>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28조</b>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b>제24조</b>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 <u>그밖에</u>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26조</b>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28조</b>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현행조문	순화조문
<p>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p> <p>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29조</b>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p>	<p>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p> <p>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p> <p>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약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약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b>제29조</b>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u>지방환경관서의 장소</u> 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p> <p>제 3 장 생물다양성의 보전</p> <p><b>제31조</b>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u>지역중에서</u>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u>제1항 내지 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u>제1항 내지 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2조</b> (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와 <u>그 밖의</u>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42조</b> (생태마을의 지정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p>	<p>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u>지방환경행정기관의 장소</u>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p> <p>제 3 장 생물다양성의 보전</p> <p><b>제31조</b>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②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u>지역 중에서</u>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u>제1항부터 제3항까지</u>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2조</b> (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와 <u>그밖에</u>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b>제42조</b> (생태마을의 지정 등)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u>규정에 따라</u>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43조</b>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당해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43조</b>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향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의 사용 절감 내지 폐기물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적 기술을 개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녹지와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p>	<p><b>제45조</b> (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생태계보전협력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b>제51조</b> (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u>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u>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b>제53조</b> (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54조</b>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와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u>그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생태계보전협력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b>제51조</b> (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u>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u>일정한 징역내의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b>제53조</b> (손실보상) ①이미 실시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이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됨으로 인해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54조</b> (국고보조) 국가는 <u>다음의 사업</u>을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55조</b>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57조</b>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p> <p><b>제58조</b>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u>그</u>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1조</b>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u>지방환경청장</u>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b>제55조</b>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b>제57조</b>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p> <p><b>제58조</b>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u>그</u>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1조</b>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u>지방환경청장</u>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제 7 장 별 칙	제 7 장 별 칙
<p><b>제66조</b>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li> <li>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li> </ol>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u>지체없이</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b>제66조</b>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6조(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li> <li>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li> </ol>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u>바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 경찰관련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 계 경

(한국외대 법학과 대우교수)

## 목 차

I. 머리말 .....	293
II. 순화원칙 .....	294
1. 용어의 순화원칙 .....	294
(1) 한자어의 순화 .....	294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	294
(3) 법조문의 한글표기 .....	295
(4) 명료성과 간결성 .....	298
(5) 보편타당성 .....	299
2. 문장의 순화원칙 .....	299
(1) 비문법적인 문장의 순화 .....	299
(2) 문어체 및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순화 .....	301
III. 맺는말 .....	302
【부록】 경찰법 현행조문 및 순화안 대조표 .....	304
【부록】 경찰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순화대비표 .....	308
【부록】 청원경찰법 현행조문 및 순화안 대비표 .....	316
【부록】 경비업법 현행조문 및 순화안 대조표 .....	319

## I. 머리말

우리 실정법을 일반국민에게 가까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법령 한글화의 추진, 법령용어정비기준의 제정 및 정비추진 등을 통하여 법령정비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sup>1)</sup> 이후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주춤하였던 법령용어정비사업은 1983년부터 법제처에 의하여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 결과 1985년부터 2002년도까지 7집에 이르는 ‘법령용어순화편람’이 발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행해졌다. 그 성과의 핵심은 법령용어의 민주화 친 한글화, 표준화 및 명확화, 외래어의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3)</sup> 나아가 2002년부터는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법령용어의 정비·순화작업이 정비기반의 조성과 일부 법규정의 개정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 법령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난해함 또는 부적절성, 일반 국민 생활과의 내용상 괴리, 철학적 사유의 빈곤, 역사의식의 부재 등 각종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sup>5)</sup> 이 점은 경찰관련 법의 영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체계구성의 불합리성, 용어사용의 부적합·비현실성, 문장표현상의 오류·불명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 1978년까지 2790개 법령을 검토하여 그 중 154개 법령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2)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용어정비를 위한 기초이론-’, 한국법제연구원, 1995, 122면 이하 참조.

3) 아울러 그 추진과정에서 축적된 각종의 연구성과와 간행물 등도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성과의 상세에 관하여는 강현철,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31면 각주 67) 및 68) 참조.

4) 이 작업에는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5) 김문현, ‘헌법분야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면 이하; 이진기, ‘우리말과 법률’, 인권과 정의 제317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1, 138면; 정완·윤동호·김정태, ‘형사법령용어의 순화와 체계적 통일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11-12면 등.

널리 인정되고 있듯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경찰관련 법의 성립과정 이 고유의 독자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의 (간접적인)수용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경찰관련 법은 고유한 우리 경찰관련 법을 계승·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외국의 법을 이식·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과 국민들의 의식·생활이 서로 걸들게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법령의 내용 및 체계 자체에 많은 혼란과 불합리가 내재하게 된 것이다.

근대 법체계 내지 법문화의 성립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직까지 외국법의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수용의 방법·절차를 변경할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경찰관련 법령 중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민간경비업법을 대상으로 이들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추출·분석하고 그 순화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 II. 순화원칙

### 1. 용어의 순화원칙

#### (1) 한자어의 순화

조문상의 한자어를 모두 우리말로 바꾼다거나, 기준에 의하여 제시되는 특정 순화어로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글이나 순화어를 사용하면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뜻이 모호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련 법조문에서 사용빈도가 많은 한자어를 대상으로 순화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조문상에 나타나는 일본어투의 문체를 우리 어법에 맞게 순화하여야 한다. 현행 경찰관련 법에는 일본 조문을 번역한 문장들이 많이 있다. 이

미 법률가와 법학자들은 이러한 문체에 익숙해져 있고, 일반인들도 경찰 관련 법조문의 문체와 법률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문체를 모범으로 삼고 이에 따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어식 문체는 우리 문법과 맞지 않아 그 이해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련 법조문도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논리에 맞는 우리말의 어법에 맞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는 제3조(경찰임무)로,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제4조(권한남용 금지)로, 경찰법 제11조 제6항의 ‘…탄핵의 소추를’는 ‘…탄핵소추를’로 해야 할 것이다.

제11조 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순화안] 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3) 법조문의 한글표기

한자문화권에 사는 우리로서는 한자사용 자체를 근절할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한자의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대체할 만한 좋은 의미의 법률용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말로 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자어는 그 조어적인 성질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탄생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 한자어를 순수하게 우리 한글로 전환하면 그 용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간혹 법률문장에 사용되어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한자어가 가지는 기능상의 장점과 순수한 글로의 법률용어를 조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맞물려 여과 없이 한자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몇 개의 한자어가 조합이 되어 다시 복합명사의 형태를 가진 의미상 함축적인 법률용어들이 새롭게 조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한자어는 그 뜻이 명백하지 않아 늘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끊임없이 개념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근본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지를 ~부터~까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에 관한 조문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제7조 제4항 등이 있다.

第3條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순화안]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신설 1988.12.31>

- 2) 상당한을 정당한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상당하다는 ~에라는 성분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도가 대단하다 또는 어지간히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에 성분을 갖추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또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에 관한 조문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등이 있다.

第3條 (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舉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순화안] (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舉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者 또는 이미 행하여진 犯罪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

- 3) 지체없이를 바로로 순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을 늦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

서 지체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조문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등이 있다.

第4條 ④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被救護者의 家族·親知 기타의 緣故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하며, 緣故者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被救護者를 적당한 公衆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에 즉시 引繼하여야 한다.

[순환안] ④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바로 이를 被救護者의 家族·親知 기타의 緣故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하며, 緣故者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被救護者를 적당한 公衆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에 즉시 引繼하여야 한다.

4)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타인에서 그가 다른 명사와 합해져서 ‘다른’이라는 의무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타인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전달에는 어려움이 없고 한글표기에 대비해서도 다른 사람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조문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이 있다.

第4條 (保護措置等) 1. 精神錯亂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에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者와 自殺을 企圖하는 者

[순환안] 1. 精神錯亂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自己 또는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와 財産에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者와 自殺을 企圖하는 者

5) 기타를 그밖에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기타는 그것 밖의 또 다른 것 또는 그 밖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한자어로 법률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용어로는 경찰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등이 있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 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순화안] 이 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 및 職務範圍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4) 명료성과 간결성

법률용어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그 뜻이 분명하고 가능하면 체계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법조문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률용어 자체는 일상적인 용어의 경우에 비하여 함축적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법률용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법률문장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나 문장에 무리하게 인위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어색한 표현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고유한 의미가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개념의 이해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무리한 정도의 법령용어나 문장의 개선 및 순화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명료성과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 방향은 우선 법으로서의 논리성을 유지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쉬운 정도의 접근가능성에 균간을 두는 것이어야 하며, 더불어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명료성과 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찰법 제6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 또한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조문으로는 경찰법 제6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4조 제1항 등이 있다.

(5) 보편타당성

법률용어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해도 여전히 논리성이 유지되고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굳이 전문용어를 고집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일상용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신조어를 양산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도 또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용어는 전문용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자체적인 속성상 그리고 그것이 적절히 조합하여 조성되는 법률문장도 보편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률용어나 법률문장이 보편 타당하다는 것은 범규범으로서의 논리성과 함께 평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보편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내재적으로 지녀야 하는 논리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특수한 요소나 개별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평이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문장의 순화원칙

(1) 비문법적인 문장의 순화

1) 문장성분이 생략된 경우

법률문장의 간결성을 중시하는 법령의 성격 때문에 문장성분을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성분을 생략하더라도 법령의 의미와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앞에 나온 문장성분이라도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불분명해지는 문장에서는 문장성분을 생략할 수 없다.

2) 능동과 피동의 순화

능동과 피동의 표현은 법조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피동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

나라 남의 행동에 의해 되는 행위를 말하고, 능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문장에서는 피동과 능동이 잘 못 쓰이거나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추정하다’와 ‘추정되다’, ‘준용하다’와 ‘준용되다’, ‘완성하다’와 ‘완성되다’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경찰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정한’을 ‘~규정된’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밖의 예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등이 있다.

第5條 (警察委員會의 設置) ①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 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警察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순화안] (警察委員會의 設置) ①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 第1項 各號에 규정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警察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23>

### 3) 조사의 순화

조문 중 조사가 잘못 사용된 유형으로는 부정확한 조사를 쓰는 경우, 조사를 무리하게 생략한 경우 등이 있다. 즉, 법조문에서 주어는 그 조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분명히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주어임을 분명히 해주는 문장성분이 주격조사이다. 예컨대 ‘~을 경과하면’ 또는 ‘~이 경과하면’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일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日, 週間, 月, 年과 같이 날짜와 관련 있는 명사에는 자동사가 연결되므로 ‘이’, ‘가’의 조사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예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의 권리의 보호를 권리를 보호하고로 하여야 하며, 그밖에 동법 제3조 제2항 등이 있다.

第1條 (目的) ①이 法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보호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警察官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순화안] (目的) ①이 法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보호하고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警察官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4) 시제의 순화

시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시제의 오류 중 대표적인 유형은 ‘~한 때’처럼 과거시제를 써야 하는 표현을 현재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현재시제로 사용해야 하는 때에 과거나 완료시제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때’는 과거와 특수성의 의미가 강한 반면, ‘~하였을 때’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미래와 보편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한 때’는 ‘~하였을 때’로 ‘~아니한 때’는 ‘~아니하였을 때’로 ‘~된 때’는 ‘~되었을 때’로, ‘~받은 때’는 ‘~받았을 때’와 같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문어체 및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순화

과거의 문어체 및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체와 표현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거의 유사한 속도로 변천하는 현대의 언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못할 뿐 아니라 이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문어체 문장과 한문투 문체를 현대의 언어감각에 맞게 순화하여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고쳐 문장을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법조문은 하나의 문장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추상적으로 담기 위해서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문의 독특한 문체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체와 이질감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다.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성분이나 문장구조를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찰법 제5조 제1항의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을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로 순화하여야 할 것이다.

第3條 (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治安情報의 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순화안] (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을 보호하고 犯罪를 豫防·鎮壓 및 搜查를 하며, 또한 治安정보를 蒐集하고, 交通을 團束속하고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

### Ⅲ. 맺는말

일반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 법에 따라 각자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문은 국민들이 읽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되어야 한다. 법령문의 특색이 명확성·논리성·평이성·간결성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평이화·자주화·현대화 및 문장의 평이화·명확화·간결화·문법적합화·자주화라는 순화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경찰관련 법령문의 문제점과 순화방안을 검토하였다. 용어의 평이화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용어, 의미상 오류가 있는 용어들을 쉽고 친숙하며 올바른 용어로 바꾸도록 하였다. 용어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외국어투의 용어들 특히 일본법령의 영향을 받은 용어들을 최대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시대적 용어와 권위적 용어들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현대적 어휘들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사용이 입법준칙에 부합되기 위해서 띄어쓰기, 구두점사용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찰관련 법 문장의 순화방안으로는 낡은 한문투 문어체를 현대적 구어체로 바꾸도록 하고, 일본어투 문체로 된 표현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 즉, ‘~의’ 오·남용, 2중부정의 남용, 우리 어법상 어색한 일본어투(즉, 에 있어서, 에 대하여, ~있는, 으로 되는)에 대해서는 각각 용어의 대체 또는 생략, 긍정문으로 수정, 자연스러운 우리말로는 전환 등을 대

안으로 제시하였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순화내용으로는 누락된 문장성분(주어·목적어·부사어)의 보완, 부적절한 조사 사용의 합리화, 능동과 수동태 간 혼동의 시정, 어미 사용 및 지시어 사용과 문장성분 연결상의 오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법령문의 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적부문제 즉, 그 의미·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외국어의 번역어인 경우 번역을 통한 수용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정확성과 적절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 용어는 없는지, 대응하는 우리말이 있더라도 번역어가 더 적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각종 문헌에 의한 개념사적 연구를 통해 그 성립배경을 밝히는 작업과 현대어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말의 관습적 용어례에 대한 탐구와 함께 전통적인 한자어의 수집·연구 그리고 표준연령층의 언어사용실태 및 의식 조사 등이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법은 민족의식이 규범의 형태로 반영된 것이며 법률용어와 문장은 그 규범의식과 민족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행해진 일련의 연구성과<sup>6)</sup>는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6) 전자의 예로는 우리 고유의 법률용어들을 다수 발굴하여 분석한 정금식 외, '현행법률용어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25면, 각주 59).

**【부록】 경찰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第 1 條</b> (目的) 이 법은 警察의 民主的인 管理·운영과  효율적인 任務遂行을 위하여 警察의 基本組織 및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b>第 2 條</b> (警察의 組織) ①治安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警察廳을 둔다. &lt;개정 1996.8.8, 2004.12.23&gt;                  ②警察廳의 事務를 地域적으로 分擔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소속하에 地方警察廳을 두고, 地方警察廳長소속하에 警察署를 둔다. &lt;개정 1997.12.13&gt;                  ③삭 제 &lt;1996.8.8&gt;</p> <p><b>第 3 條</b> (警察의 任務)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 治安情報의 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p> <p><b>第 4 條</b> (權限濫用의  금지) 警察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憲法과 法律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존중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公正中立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경찰조직) ①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u>행정자치부장관소속밑에</u> 경찰청을 둔다. &lt;개정 1996. 8.8, 2004.12.23&gt;                  ②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소속 밑에</u> 지방경찰청을 두고, <u>지방경찰청장소속밑에</u> 경찰서를 둔다. &lt;개정 1997. 12.13&gt;                  ③삭 제 &lt;1996.8.8&gt;</p> <p><b>제 3 조</b> (경찰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u>치안정보 수집, 교통단속</u>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p> <p><b>제 4 조</b> (권한남용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u>공정하고 중립을</u>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경찰위원회</p> <p><b>第 5 條</b> (警察委員會의 設置) ①警察行政에 관하여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항을 審議·議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警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4.12.23&gt;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を 포함한 7인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경찰위원회</p> <p><b>제 5 조</b> (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04.12.23&gt;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p>

현행조문	순화조문
<p>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 및 5인의委員은 非常任, 1인의委員은 常任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lt;신설 2004.12.23&gt;</p> <p><b>第 6 條</b> (委員의 任命 및 缺格事由) ①委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lt;개정 2004.12.23&gt;</p>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委員을 提請함에 있어서 警察의 政治的 中立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12.23&gt;</p> <p>③委員중 2人是 法官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lt;개정 1999.1.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黨籍을 離脫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li> <li>2. 選舉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li> <li>3. 警察·檢察·國家情報院職員 또는 軍人의 職에서 退職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li> <li>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li> </ol> <p><b>第 7 條</b> (委員의 任期 및 身分保障) ①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p> <p>②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第6條第4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職에 就任 또는 任用되거나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히 退職된다.</p> <p><b>第 8 條</b> (國家公務員法의 準用) 委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60條 및 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위원은 비상임, 1인의위원은 상임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lt;신설 2004.12.23&gt;</p> <p><b>제 6 조</b>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lt;개정 2004.12.23&gt;</p>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하는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12.23&gt;</p> <p>③위원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lt;개정 1999.1.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li> </ol> <p><b>제 7 조</b>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p> <p><b>제 8 조</b> (국가공무원법 준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9條</b> (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①다음 각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4.12.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警察의 人事·豫算·裝備·通信등에 관한 主要政策 및 警察業務發展에 관한 사항</li> <li>2. 人權保護와 관련되는 警察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警察任務외의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의 業務協調要請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警察廳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委員會에 附議한 사항</li> </ol>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議決된 내용이 <u>不適正하다</u>고 판단될 때에는 <u>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u>. &lt;개정 2004.12.23&gt;</p> <p><b>第10條</b> (委員會의  운영등) ③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委員會의  운영 및 第9條第1項 各號에 정한 審議·議決事項의  구체적 범위, <u>再議要求등</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제9조</b>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4.12.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li> <li>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li> <li>4. <u>그밖에</u>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li> </ol> <p>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u>적정하지 않다</u>고 판단될 때에는 <u>다시 논의할 것을</u>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4.12.23&gt;</p> <p><b>제10조</b> (위원회의 운영등)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 제1항 각 사항에 정한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u>개의결의 요구등</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경찰청</p>	<p>제3장 경찰청</p>
<p><b>第11條</b> (警察廳長) ③警察廳長은 警察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廳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 및 各級 警察機關의 長을 指揮·監督한다.</p> <p>④삭 제 &lt;2003.12.31&gt;</p> <p>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중임할 수 없다</u>. &lt;신설 2003.12.31&gt;</p> <p>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u>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lt;신설 2003.12.31&gt;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p>	<p><b>제11조</b> (경찰청장) ③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모두 관할하고 <u>경찰청의 사무를 맡아서 주관하며</u>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p> <p>④삭 제 &lt;2003.12.31&gt;</p> <p>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거듭 임용할 수 없다</u>. &lt;신설 2003. 12.31&gt;</p> <p>⑥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u>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lt;신설 2003.12.31&gt; [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는 헌법에</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에 위반된다.] [99헌마135 1999.12.23]</p> <p><b>第12條</b> (次長) ①警察廳에 次長을 두되, 次長은 治安正監으로 補한다. ②次長은 警察廳長을 補佐하며, 警察廳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lt;개정 2004.12.23&gt;</p> <p><b>第13條</b> (下部組織) ②警察廳長·次長·局長 또는 部長 밑에 政策의 企劃이나 計劃의 立案 및 研究調査를 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p>	<p>위반된다.] [99헌마135 1999.12.23]</p> <p><b>제12조</b> (차장) ①경찰청에 차장을 두되,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u>임명한다.</u> ②차장은 경찰청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lt;개정 2004.12.23&gt;</p> <p><b>제13조</b> (하부조직)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u>도와주는</u> 담당관을 둘 수 있다.</p>
<p>제 4 장 지방경찰</p>	<p>제 4 장 지방경찰</p>
<p><b>第16條</b> (治安行政協議會) ①地方行政과 治安行政의 業務協調 기타 필요한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市·道知事소속하에 治安行政協議會를 둔다. ②治安行政協議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b>제16조</b> (치안행정협의회)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u>시·도지사소속밑에</u>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第17條</b> (警察署長) ①警察署에 警察署長을 두되, 警察署長은 總警 또는 警正으로 補한다. &lt;개정 2000.12.20&gt; ②警察署長은 地方警察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區域안의 所管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③警察署長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04.12.23&gt;</p>	<p><b>제17조</b> (경찰서장) ①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되,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lt;개정 2000.12.20&gt; ②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u>경찰서장소속밑에</u>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04.12.23&gt;</p>
<p><b>第18條</b> (職制)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의 名稱·位置·管轄區域·下部組織·公務員의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政府組織法 第2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용하여 大統領令 또는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lt;개정 1998.2.28&gt;</p>	<p><b>제18조</b> (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u>그밖에</u>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1998.2.28&gt;</p>

**【부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 1 條</b> (目的) ①이 법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u>보호</u>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u>위한</u> 警察官의 職務遂行에  필요한 事項을 <u>規定</u>함을 目的으로 한다.</p> <p>②이 법에 規定된 警察官의 職權은 그 職務遂行에  필요한 最小限度  내에서  行사되어야 하며 이를 <u>濫用</u>하여서는  아니된다.</p> <p><b>第 2 條</b>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犯罪의 豫防·鎮壓 및 搜查</li> <li>2. 警備·<u>要人警護</u> 및 <u>對間諜作戰</u>遂行</li> <li>3.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li> <li>4.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li> <li>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li> </ol> <p><b>第 3 條</b> (不審檢問) ①警察官은  수상한 舉動 기타  주위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러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진  犯罪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관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인정되는  者를  停止시켜  質問할  수  있다.</p> <p>②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u>부근의  警察署·지구대·派出所</u> 또는  出張所(이하 “<u>警察官署</u>”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포함한다)에  <u>同行</u>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거절할  수  있다. &lt;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gt;</p> <p>③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대하여  質問을  할  때에  <u>兇器</u>의  소지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p>	<p><b>제 1 조</b>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u>보호</u>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u>위하여</u>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하는</u>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u>직무상</u>의 <u>권한</u>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u>합부</u>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p> <p><b>제 2 조</b> (직무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li> <li>2. 경비·<u>중요인물경호</u> 및 <u>간첩에 대한 작전수행</u></li> <li>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li> <li>4. <u>교통단속과 위해방지</u></li> <li>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li> </ol> <p><b>제 3 조</b>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u>이상한 행동</u> 그밖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u>정당한</u>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u>멈추게</u> 하여 질문할 수 있다.</p> <p>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u>인정될 경우에는</u> 질문하기 위하여 <u>가까운</u>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u>같이 갈</u>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lt;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gt;</p> <p>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u>위험한 물건</u>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요구할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の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경우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lt;개정 1991.3.8&gt;</p> <p>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등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이유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즉시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를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lt;신설 1988.12.31&gt;</p> <p>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同行을 한 경우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초과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lt;신설 1988.12.31, 1991.3.8&gt;</p> <p>⑦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拘束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반하여 答辯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lt;신설 1988.12.31&gt;</p> <p><b>第 4 條 (保護措置등)</b> ①警察官은  수상한 舉動 기타 周圍의 事情을 합리적으로 判斷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함이 明白하며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者를 발견한 때에는 保健醫療機關 또는 公共救護機關에 緊急救護를 요청하거나 警察官署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措置를 할 수 있다. &lt;개정 1988.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精神錯亂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에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者와 自殺을 企圖하는 者</li> <li>2. 迷兒·病者·負傷者등으로서  적당한 保護者가 없으며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者. 다만, 當該人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ol>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하거나 같이 갈 것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같이 가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밝혀야 한다. &lt;개정 1991.3.8&gt;</p> <p>⑤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같이 가는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같이 가는  경찰관의  신분, 같이 가는  장소, 같이 가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lt;신설 1988.12.31&gt;</p> <p>⑥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같이 간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넘게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lt;신설 1988.12.31, 1991.3.8&gt;</p> <p>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lt;신설 1988.12.31&gt;</p> <p><b>제 4 조 (보호조치등)</b> ①경찰관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밖에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lt;개정 1988.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신이상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li> <li>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긴급한  도움과  보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第1項의 緊急救護要請을 받은 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은 正當한 이유없이 緊急救護를 拒絶할 수 없다.</p> <p>③第1項의 경우에 被救護者가 휴대하고 있는 武器·兇器등 危險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物件은 警察官署에 臨時領置할 수 있다.</p> <p>④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知체없이 이를 被救護者의 家族·親知기타의 緣故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하며, 緣故者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被救護者를 正當한 公衆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에 즉시 引繼하여야 한다.</p> <p>⑤警察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救護者를 公衆保健醫療機關 또는 公共救護機關에 引繼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1988.12.31, 1996.8.8&gt;</p> <p>⑥第5項의 報告를 받은 소속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被救護者를 引繼한 사실을 知체없이 당해 公衆保健醫療機關·公共救護機關의 長 및 그 監督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1988.12.31, 1996.8.8&gt;</p> <p>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官署에서의 보호는 24時間을, 第3項의 臨時領置는 10日을  초과할 수 없다. &lt;개정 1988.12.31&gt;</p> <p><b>第 5 條</b> (危險發生의 방지) ①警察官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天災, 事變, 工作物의 損壞, 交通事故, 危險物의 爆發, 狂犬·奔馬類등의 出現, 極端한 混雜 기타 危險한 事態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경우에 구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할 수 있다.</p> <p>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구호 받고 있는 사람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 받고 있는 사람을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넘겨야 한다.</p> <p>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료 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넘긴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1988.12.31, 1996.8.8&gt;</p> <p>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넘긴 사실을 즉시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1988.12.31, 1996.8.8&gt;</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보관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lt;개정 1988.12.31&gt;</p> <p><b>제 5 조</b>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미친개·빨리 달리는 말과 같은 종류 등의 출현, 극심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1. 그 場所에 集합한 者, 事物의 管理者 기타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는 것</p> <p>2. 특히 緊急을 요할 때에는 危害를 받을 우려가 있는 者를  필요한 限度 내에서 抑留하거나 避難시키는 것</p> <p>3. 그 場所에 있는 者, 事物의 管理者 기타 關係人에게 危害防止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措置를 하는 것</p> <p>②警察官署의 長은 對間諜作戰遂行 또는 騷擾事態의 鎮壓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對間諜作戰地域 또는 警察官署·武器庫등 國家重要施設에 대한 接近 또는 通行을 制限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③警察官이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所屬警察官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第 6 條 (범죄의 豫防과 制止)</b> ①警察官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行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고, 그 行爲로 인하여 人命·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중대한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어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를 制止할 수 있다.</p> <p>②삭 제 &lt;1988.12.31&gt;</p> <p><b>第 7 條 (危險防止를 위한 出入)</b> ①警察官은 第5條 第1項·第2項 및 第6條 第1項에 規定한 危險한 事態가 발생하여 人命·身體 또는 財産에 대한 危害가 切迫한 때에 그 危害를 방지하거나 被害者를 救助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 내에서 他人의 土地·建物 또는 船車 내에 出入할 수 있다.</p>	<p>1. 그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p> <p>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강제로  붙잡아 두거나  피난시키는 것</p> <p>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p> <p>②경찰관서의  장은  간첩에 대한  작전 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 <p>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 6 조 (범죄예방과  제지)</b>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p> <p>②삭 제 &lt;1988.12.31&gt;</p> <p><b>제 7 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b> ①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드나들 수 있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興行場·旅館·飲食店·驛 기타 <u>多數人</u>이 <u>出入하는 場所의 管理者</u> 또는 이에 <u>準하는 關係人</u>은 그 <u>營業</u> 또는 <u>公開時間</u> 내에 <u>警察官</u>이 <u>犯罪의 豫防</u> 또는 <u>人命·身體와 財産에 대한 危害 豫防을 目的으로</u> 그 <u>場所에 出入할 것을 要求한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u> 이를 <u>拒絶할 수 없다.</u></p> <p>③<u>警察官</u>은 <u>對間諜作戰遂行에 必要한 때에는 作戰地域안</u>에 있어서의 <u>第2項에 規定된 場所안</u>을 <u>檢索할 수 있다.</u></p> <p>④<u>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警察官</u>이 <u>必要한 場所에 出入할 때에는</u> 그 <u>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하며,</u> <u>함부로 關係人의 正當한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b>第 8 條 (事實의  확인등)</b> ①<u>警察官署의 長은 職務遂行에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國家機關 또는 公私團體등에  대하여 職務遂行에  관련된 事實을 照會할 수 있다. 다만,</u> <u>緊急을  요할 때에는 所屬警察官으로 하여금 現場에 出張하여 當該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協助를  얻어 그 事實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p> <p>②<u>警察官</u>은 <u>迷兒를 引受할 保護者의 與否,</u> <u>遺失物을 引受할 權利者의 與否</u> 또는 <u>事故로  인한 死傷者를  확인하기  위하여</u>나 <u>行政處分을  위한 交通事故 調査上의 事實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關係人에게  출석을  요하는 事由·日時 및 場所를  명확히 한 出席 要求書에  의하여 警察官署에  출석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u></p> <p><b>第 9 條 (留置場)</b> <u>警察署 및 地方海洋 警察官署에 法律이  정한 節次에  따라 逮捕·拘束되거나 身體의 自由를 制限하는 判決 또는 處分을  받은 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留置場을  둔다. &lt;개정 1996.8.8, 1999.5.24&gt;</u></p>	<p>②<u>홍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를 관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u>은 그 <u>영업 또는 공개시간</u> 내에 <u>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u> 그 <u>장소에 드나들  것</u>을 <u>요구한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u> 이를 <u>거절할 수 없다.</u></p> <p>③<u>경찰관</u>은 <u>간첩에 대한 작전수행에  必要한 때에는  작전지역안</u>에 있어서의 <u>제2항에  規定된  장소안</u>을 <u>검색할 수  있다.</u></p> <p>④<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依하여  경찰관이  必要한  장소에  드나들  때에는</u> 그 <u>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u> <u>함부로  관계인의  正當한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u></p> <p><b>제 8 조 (사실확인등)</b> ①<u>경찰관서</u>의 <u>장  은  직무수행에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正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事實을  알  아  불  수  있다.  다만,</u> <u>긴급한  경우에는  소속경찰관에게  현장  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도움을  얻어  그  事實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p> <p>②<u>경찰관</u>은 <u>미아를  데려갈  보호자의  여부,</u> <u>유실물을  넘겨받을  권리자의  여부</u> 또는 <u>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  기  위하여</u>나 <u>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  고조사상의  事實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  구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u></p> <p><b>제 9 조 (유치장)</b> <u>경찰서 및  지방해양경  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  포·구속되거나  신체</u>의 <u>자유를  제한하  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가두  어두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lt;개정  1996.8.8, 1999.5.24&gt;</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b>第10條</b> (警察裝備의 사용등) ①警察官은 職務遂行중 警察裝備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는 警察裝備에 대하여는  필요한 安全教育와 安全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第1項의 “警察裝備”라 함은 武器, 警察裝具, 催淚劑 및 그 發射裝置, 鑑識機具, 海岸監視機具, 通信器機, 車輛·船船·航空機등 警察의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裝置와 機具를 말한다.</p> <p>③警察裝備를 <u>임의로 改造하거나 임의의 裝備를 附着하여 통상의 用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u></p> <p>④第1項 但書의 警察裝備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安全教育·安全檢査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p> <p><b>第10條의2</b> (警察裝具의 사용&lt;개정 1999.5.24&gt;)①警察官은 現行犯人的 경우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犯人的 逮捕·逃走의 방지, 자기 또는 <u>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警察裝具를 사용할 수 있다.</u> &lt;개정 1991.3.8, 1999.5.24&gt;</p> <p>②第1項의 “警察裝具”라 함은 警察官이  휴대하여 犯人檢舉와 犯罪鎮壓등 職務遂行에 사용하는 手匣·捕繩·警察棒·防牌등을 말한다. &lt;신설 1999.5.24&gt;</p> <p><b>第10條의3</b> (噴射器등의 사용&lt;개정 1999.5.24&gt;)①警察官은 <u>犯人的 逮捕·逃走의 방지</u> 또는 不法集會·示威로 인하여</p>	<p><b>제10조</b>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p> <p>③경찰장비를 <u>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않된다.</u></p> <p>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p> <p><b>제10조의2</b> (경찰장구 사용&lt;개정 1999.5.24&gt;)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u>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u> &lt;개정 1991.3.8, 1999.5.24&gt;</p> <p>②제1항의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lt;신설 1999.5.24&gt;</p> <p><b>제10조의3</b> (분사기등 사용&lt;개정 1999.5.24&gt;)①경찰관은 <u>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불법</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자기 또는 <u>他人의 生命·身體</u>와 財産 및 公共施設安全에 대한 현저한 危害의 發生을 抑制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現場責任者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噴射器(銃砲·刀劍·火藥類 등 團束法의 規定에 의한 噴射器와 催淚 등의 作用劑) 또는 催淚彈을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1999.5. 24&gt;</p> <p>②삭 제 &lt;1999.5.24&gt; [본조신설 1989.6.16]</p> <p><b>第10條의4 (武器의 사용)</b> ①警察官은 犯人의 逮捕·<u>逃走의 방지</u>, 자기 또는 <u>他人의 生命·身體</u>에 대한 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상당한</u>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 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u>各號의 1에</u>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u>안 된다.</u>&lt;개정 1999.5.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死刑·無期 또는 長期 3년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거나 犯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者가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u>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u> 또는 第3者가 그를 <u>逃走시키려고</u> 警察官에게 <u>抗拒할 때</u> 이를 방지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u>아니하고는</u>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u>상당한</u> 이유가 있을 때</li> <li>2. 逮捕·拘束令狀과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할 때에 本人이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u>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u> 또는 第3者가 그를 <u>逃走시키려고</u> 警察官에게 <u>抗拒할 때</u> 이를 방지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u>아니하고는</u> 다른 手段</li> </ol>	<p>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u>다른 사람의 生命·신체</u>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危害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1999.5.24&gt;</p> <p>②삭 제 &lt;1999.5.24&gt; [본조신설 1989.6.16]</p> <p><b>제10조의4 (무기사용)</b>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u>도주방지</u>, 자기 또는 <u>다른 사람의 生命·신체</u>에 대한  防護,  公務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정당한</u>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한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u>각 사항에</u>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u>안 된다.</u>&lt;개정 1999.5.2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u>대항하거나 도망하려고 할 때</u> 또는 제3자가 그를 <u>도망시키려고</u> 경찰관에게 <u>대항할 때</u>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u>않고는</u>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u>정당한</u> 이유가 있을 때</li> <li>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u>대항하거나 도망하려고 할 때</u> 또는 제3자가 그를 <u>도망시키려고</u> 경찰관에게 <u>대항할 때</u>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u>않고는</u> 다른 수단이</li> </ol>

현행조문	순화조문
<p>이 없다고 인정되는 <u>상당한</u> 이유가 있을 때</p> <p>3. 犯人 또는 騷擾行爲者が 武器·兇器 등 위험한 물건을 所持하고 警察官으로부터 3회 이상의 投棄命令 또는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면서 계속 抗拒하여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u>상당한</u> 이유가 있을 때</p> <p>4. 對間諜作戰遂行에 있어 武裝間諜이 警察官의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는 경우</p> <p>②第1項의 “武器”라 함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도록 製作된 拳銃·小銃·刀劍등을 말한다. &lt;신설 1999. 5.24&gt;</p> <p>③對間諜·對테러作戰 등 國家安全에 關連되는 作戰을 수행할 때에는 個人火器외에 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lt;신설 1999.5.24&gt;</p> <p><b>第12條 (罰則)</b> 이 법에 規定된 警察官의 義務에 위반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p> <p><b>第13條 (施行令)</b> 이 법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없다고 인정되는 <u>정당한</u> 이유가 있을 때</p> <p>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 또는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항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u>정당한</u> 이유가 있을 때</p> <p>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p> <p>②제1항의 “무기”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lt;신설 1999. 5.24&gt;</p> <p>③대간첩·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된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lt;신설 1999.5.24&gt;</p> <p><b>제12조 (벌칙)</b>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p> <p><b>제13조 (시행령)</b>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부록】 청원경찰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1 조</b>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u>그밖</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u>施設·事業場</u>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u>施設 또는 事業場</u>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lt;개정 1980.1.4, 1999.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u>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u></li> <li>2. 국내주재 외국기관</li> <li>3. <u>기타 行政自治部</u>승으로 정하는 <u>重要施設·事業場 또는 場所</u></li> </ol>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lt;개정 1980.1.4, 1999.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u>관리 밑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u></li> <li>2. 국내주재 외국기관</li> <li>3. <u>그밖에</u>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u>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u></li> </ol>
<p><b>제 3 조</b>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u>施設 또는 事業場</u>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u>경비구역안</u>에 한하여 경비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lt;개정 1980.1.4, 2001.4.7&gt;</p>	<p><b>제 3 조</b>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u>경비구역 내</u>에서만 경비목적에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lt;개정 1980.1.4, 2001.4.7&gt;</p>
<p><b>제 4 조</b> (청원경찰의 배치) ②地方警察廳長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u>지체없이</u>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u>통지하여야 한다</u>.&lt;개정 1991.5.31&gt;</p>	<p><b>제 4 조</b> (청원경찰의 배치)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u>즉시</u>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u>알려야 한다</u>.&lt;개정 1991.5.31&gt;</p>
<p><b>제 5 조</b> (청원경찰의 임용 등&lt;개정 2001.4.7&gt;)①請願警察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願警察의 配置決定을 받은 者(이하 “請願主”라 한다)가 任用하되, 그 任用에 있어서는 미리 地方警</p>	<p><b>제 5 조</b> (청원경찰의 임용 등&lt;개정 2001.4.7&gt;) ①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p>

현행조문	순화조문
<p>察廳長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80.1.4, 1991.5.31&gt;</p> <p>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lt;개정 2001.4.7&gt;</p> <p><b>제 6 조</b> (청원경찰경비) ①請願主는 다음 각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u>제수당</u></li> <li>2. 청원경찰의 피복비</li> <li>3. 청원경찰의 교육비</li> <li>4.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및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li> </ol> <p>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警察廳長이 정하여 <u>고시한다</u>. &lt;개정 1991.5.31&gt;</p> <p><b>제 7 조</b> (보상금) 請願主는 청원경찰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li> <li>2.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li> </ol> <p><b>第7條의2</b> (退職金) 請願主는 請願警察이 退職한 때에는 勤勞基準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請願警察의 退職金에 관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p> <p><b>제 8 조</b>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①청원경찰은 근무중 <u>제복</u>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地方警察廳長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願主의 신청에 의하여 <u>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u>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p>	<p>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80.1.4, 1991.5.31&gt;</p> <p>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lt;개정 2001.4.7&gt;</p> <p><b>제 6 조</b> (청원경찰경비) ①청원주는 다음 각 사항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및 <u>모든 수당</u></li> <li>2. 청원경찰의 피복비</li> <li>3. 청원경찰의 교육비</li> <li>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li> </ol> <p>②제1항 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u>알린다</u>. &lt;개정 1991. 5.31&gt;</p> <p><b>제 7 조</b> (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u>각호에</u>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lt;개정 1980.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li> <li>2. 직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li> </ol> <p><b>제 7 조의2</b>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u>지급해야</u>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p> <p><b>제 8 조</b> (근무복착용과 무기휴대) ①청원경찰은 근무중 <u>근무복</u>을 입어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u>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u>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p>

현행조문	순화조문
<p>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80.1.4, 1991.5.31&gt; ③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第 9 條의3</b> (監督) ①請願主는 恒時 소속請願警察의 勤務遂行狀況을 監督하고 필요한 敎養을 實施하여야 한다.</p> <p><b>제10조</b> (직권남용 금지등) ②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b>第10條의2</b> (請願警察의 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請願警察(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請願警察을 제외한다)의 職務上 不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p> <p><b>第10條의3</b> (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lt;개정 1991.5.31, 1999.3.31, 2001.4.7&gt; [본조신설 1981.2.14]</p> <p><b>제10조의6</b>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p> <p><b>第12條</b>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lt;개정 1991.5.31, 2001.4.7&gt;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u>지체없이</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신설 2001.4.7&gt;</p>	<p>할 수 있다. &lt;개정 1980.1.4, 1991.5.31&gt; ③청원경찰의 복장에 관한 규정과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 9 조의3</b> (감독) ①청원주는 언제나 소속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10조</b> (직권남용 금지등) ②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u>그밖에</u>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b>제10조의2</b>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p> <p><b>제10조의3</b> (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1991.5.31, 1999.3.31, 2001.4.7&gt; [본조신설 1981.2.14]</p> <p><b>제10조의6</b> (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p> <p><b>제12조</b> (과태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1991.5.31, 2001.4.7&gt;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u>즉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lt;신설 2001.4.7&gt;</p>

【부록】 경비업법 순화대비표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li> <li>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li> <li>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li> </ul> </li> <li>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li> </ol> <p><b>제 3 조</b>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경비업의 허가 등</p> <p><b>제 4 조</b> (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 5 조</b>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b>제 2 조</b>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li> <li>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li> <li>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li> </ul> </li> <li>4. “무기”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li> </ol> <p><b>제 3 조</b>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경비업의 허가 등</p> <p><b>제 4 조</b> (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b>제 5 조</b>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경영하는</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b>제 7 조</b> (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p> <p>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④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다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u>안 된다</u>.</p>	<p>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b>제 7 조</b> (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p> <p>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④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다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u>안 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기계경비업무</p> <p><b>제 9 조</b> (오경보의 방지 등)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제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기계경비업무</p> <p><b>제 9 조</b> (오경보의 방지 등)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제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잘못 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p> <p><b>제 10조</b>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②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b>제 11조</b>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u>그 밖에</u>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 12조</b>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 13조</b> (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교육</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p> <p><b>제10조</b>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②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u>안 된다</u>.</p> <p><b>제11조</b>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u>각호</u>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u>그 밖에</u>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b> (경비지도사선임 등)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13조</b> (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u>해야 한다</u>.                  ②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교육</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14조</b>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②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p> <p>④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p> <p>⑤시설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⑥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p> <p><b>제14조</b>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p> <p>②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p> <p>④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p> <p>⑤시설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해야 한다.</p> <p>⑥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p>

현행조문	순화조문
<p>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u>비치·기록하여야 한다.</u></p> <p>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u>지급·회수하여야 한다.</u></p> <p>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u>아니된다.</u></p> <p>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u>투기 또는 투항을</u>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p> <p>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u>투항을</u>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p> <p><b>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b>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u>복종하여야 한다.</u></p> <p>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u>아니된다.</u></p> <p>③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u>그 밖에</u>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u>다음 각호의 1에</u>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p> <p>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p>	<p>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u>비치·기록해야 한다.</u></p> <p>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u>지급·회수해야 한다.</u></p> <p>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다음 각호에</u>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u>안 된다.</u></p> <p>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u>무기를 버리라는 명령 또는 항복을</u>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p> <p>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u>항복을</u>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p> <p><b>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b>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u>복종해야 한다.</u></p> <p>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u>안 된다.</u></p> <p>③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u>그밖에</u>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u>안 된다.</u></p> <p>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u>다음 각호에</u>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p> <p>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u>경고해야 한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다만, 다음 <u>각목의 1</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u>타인</u>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p> <p>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p> <p>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u>다중</u>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u>안 된다</u>.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u>타인</u>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u>발사하여</u>서는 <u>안 된다</u>.</p> <p><b>제17조</b>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u>제10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행정처분 등</p> <p><b>제19조</b>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u>제1호 내지 제6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p>	<p>다만, 다음 <u>각목에</u>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u>다른 사람의</u>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p> <p>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p> <p>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u>많은 사람</u>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u>안 된다</u>.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u>다른 사람</u>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u>발사해서</u>는 <u>안 된다</u>.</p> <p><b>제17조</b>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u>제10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행정처분 등</p> <p><b>제19조</b>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u>제1호 내지 제6호에</u>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p>

현행조문	순화조문
<p>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18&gt;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u>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b>제20조</b>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u>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li> <li>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li> <li>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li> </ol> <p>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li> </ol> <p><b>제21조</b>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u>실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경비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보 칙</p> <p><b>제26조</b> (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u>배상하여야 한다</u>.</p>	<p>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18&gt;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u>해야 한다</u>.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u>그렇지 않다</u>.</p> <p><b>제20조</b>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u>취소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0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li> <li>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li> <li>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li> </ol> <p>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li> </ol> <p><b>제21조</b>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u>실시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경비협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보 칙</p> <p><b>제26조</b> (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u>배상해야 한다</u>.</p>

현행조문	순화조문
<p>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u>배상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별 칙</p> <p><b>제28조</b> (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허가</u>를 받지 <u>아니하고</u> 경비업을 영위한 자</p> <p>④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31조</b> (과태료) ①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u>지체없이</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u>배상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별 칙</p> <p><b>제28조</b> (벌칙)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허가</u>를 받지 <u>않고</u> 경비업을 영위한 자</p> <p>④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31조</b> (과태료) ①다음 <u>각호에</u>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u>즉시</u>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